

발간등록번호 | 11-1210000-000519-01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발 · 연구 · 소통 · 협력



Philippines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필리핀편 (3rd edition)

2016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Philippines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필리핀편(3rd edition)



2016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본 안내서는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필리핀법 등을 2016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참고자료일 뿐,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필리핀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조문 등을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세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

국세청은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해외세정 연구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팀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최근 동향 및 세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필리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영국에 대한 연구보고서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록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좀 더 유익한 연구보고서 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보고서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 12월

국제조세관리관



I. 총 론	3
1. 필리핀 개황	4
2. 조세체계	20
3. 최근 세제개혁	26
II. 조세제도	33
1. 개인·법인 소득세	34
2. 부가가치세	52
3. 국제조세	58
4. 기타의 세금	77
5. 세법개정안	79
III. 국세행정 및 절차	87
1. 개요	88
2. 세금신고 및 납부	91
3.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95
4. 세무조사 프로그램	105
5. 조세 불복	108
IV. 필리핀 세무 이슈	111
1.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Anti-Dummy Law	112
2. 부가가치세 탈세 방지 프로그램 시행 및 환급 지연	114
3. 이전가격 관련자료 문서화 수준 제고	116
4. 필리핀 자회사의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상쇄 현상	118
5. 무형자산 관련 이전가격 이슈화 가능성 증대	120
6. 정부조달개혁법	124



V. 필리핀 투자	129
1. 필리핀 투자 환경	130
2. 필리핀 투자지원제도	134
3. 재생에너지법	143
4. 조세인센티브 투명화법안(TIMTA)	145
5. 법인 설립 및 해산·청산 절차	147
6. 필리핀 현지기업의 법·제도적 애로사항	156
7. 최근 필리핀 진출 호황 요인	158
V. 부록	173
1. 2016년 필리핀 투자환경 및 동향	174
2. 한국 기업진출 현황	181
3. 세관 현대화·관세법 개정	183
4. 자산규제강화 규정 신설	185
5. 한국-필리핀 조세조약 전문	186
6. Anti-Dummy Law 원문	207



책자 구성과 범위

최근 필리핀 과세당국은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제정 및 구체화, 조세조약 개정, 조사대상자 선정 유형에 대해 국세청장 고시를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세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또한 세수 증대를 위해 조사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세무 신고에 대한 사후검증 및 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진출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됨

이에 동 책자는 최신 세무정보를 총 6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자 함

제1장에는 필리핀 개황, 조세체계, 최근 세제개혁에 대해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필리핀의 이전가격세제를 포함한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한 조세 제도를 주요 세목별로 특징과 핵심 내용을 정리함

제3장에서는 필리핀 국제행정 특징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유형을 포함한 세무조사 절차 및 불복제도를 알아본 후,

제4장에는 필리핀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예정인 한국기업들이 현지에서 겪을 수 있는 세무 이슈를 살펴본 후,

제5장에서는 필리핀의 투자지원제도 및 투자진출시 애로사항·고려사항 등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필리핀 진출 시 알아야 할 최신 투자 정보 및 세제 관련 신설 규정을 수집하여 제공함

I. 총론

1. 필리핀 개항 / 4
2. 조세체계 / 20
3. 최근 세제개혁 / 26





1

필리핀 개황



가. 국가 일반사항

국 명	필리핀 공화국 (Republika ng Philipinas)
위 치	동남아시아 * 북위 4도 23분 - 21도 25분, 동경 116도 - 127도
면 적	300,179km ² (한반도의 1.3배, 7, 107개의 섬으로 구성)
기 후	고온 다습 아열대성 기후 * 건기(11~5월)와 우기(6~10월)로 구분
수 도	메트로 마닐라 (Metro Manila) * 서울시와 면적 및 인구 유사
인 구	1억 767만명 * 세계 12위 / 동남아시아 2위
주 요 도 시	Metro Manila(1천 145만명)/Davao City(148만명)/Cebu City(85만명)
민 족	말레이계가 주종, 네그리토 / 인도네시아인 / 중국 / 메스티조 / 모로 등 여러 종족 간 혼혈
언 어	필리핀어(타갈로그어), 영어(공용어), 지방 토착언어
종 교	로만 가톨릭(83%), 기독교(9%), 회교(5%), 기타 종교
건 국(독립)일	1898. 6. 12
정 부 형 태	대통령 중심제
국 가 원 수	Rodrigo Duterte (제 16대 대통령) * 취임일 : 2016년 6월 30일부터(6년 임기)
입 법 부	양원제 (상원 24명, 하원 285명)
정 당	Liberal, PMP, Nacionalista, Lakas-Kampi, Bangon Pilipinas 등
화 폐 단 위	Peso(페소, PHP)
시 차	그리니치 표준시 +8시간 (한국보다 1시간 빠름)
환 율	1페소 ÷ 24.77원 / 1페소 ÷ 0.02미국달러 (2016. 6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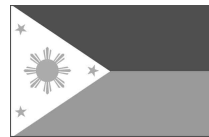
□ 위치

- 동남아시아, 북위 4도 23분~21도 25분, 동경 116-127도에 위치하며, 주요 도시로는 Metro Manila, Davao City, Cebu City가 있음



□ 국기

- 필리핀의 국가적 영웅이자 독립운동지도자인 에밀리오 아기날도(Emilio Aguinaldo) 장군이 1897년에 도안, 1898년 스페인에 독립선언 하면서 처음 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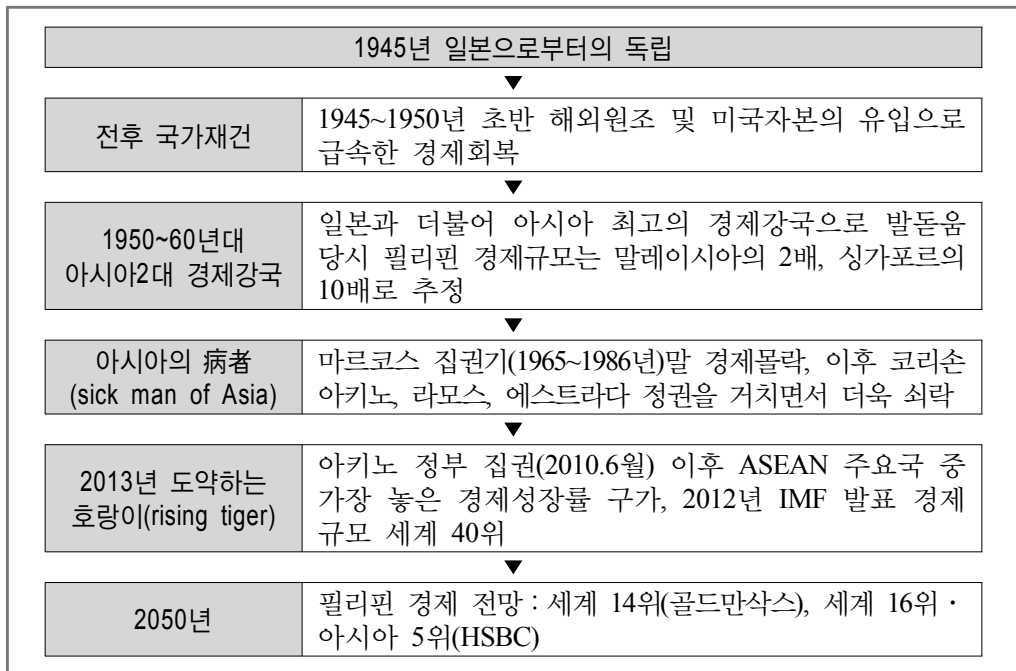
- 파란색은 이상, 붉은색은 용기, 흰색은 평화와 평등을 상징하며, 세 개의 별은 필리핀의 주요 섬인 루손 섬, 비사야 제도, 민다니오 섬을 상징하며, 태양의 여덟 개의 햇살은 최초로 스페인에 반기를 든 8주를 나타냄

□ 경제지표

명 목 GDP	2,848억 달러 (2014년)
1 인 당 GDP	2,772달러 (2013), 2,955달러 (2014)
GDP 성 장 률	5.8% (2015년)
물 가 상 승 률	1.4% (2015년 월평균), 1.3% (2016년 1월 기준)
실 업 률	5.6% (2016년 2월 확인가능 최신정보 기준)
외 채	756억 달러 (2015년 9월 기준)
외 환 보 유 고	805억 달러 (2015년 9월 기준)
산 업 구 조 (GDP 비 중)	1차 산업 (8.6%), 2차 산업 (32.4%), 3차 산업 (59.0%)
교 역 규 모	총 1,275억 달러(수출 621억 달러, 수입 654억 달러) (2014) 총 937억 달러(수출 437억 달러, 수입 500억 달러) (2015 3분기 기준)
주 요 교 역 품	· 수출 : 반도체, 전자제품, 광물, 가구, 화학제품, 코코넛 및 과일류 · 수입 : 반도체부품, 광물연료, 운송장비, 산업용 기계, 가전제품

<자료원 : KOTRA>

나. 필리핀의 경제 개관



<자료원 : 외교부>

□ 시장 특성

○ 서비스 / 소비 중심의 시장 구조

- 필리핀은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고 제조업이 매우 취약하며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위주로 해외 수입이 많음

* 2015년 기준 서비스 59.0%, 제조 32.4%, 농업 8.6%

- 해외 근로자의 국내송금(2014년 기준 243억달러)을 중심으로 한 소비위주의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GDP의 70%를 민간소비가 차지. 해외 근로자 국내송금액은 전년대비 기준 5.65% 증가하여, 앞으로 소비가 더 늘어날 전망

○ 메트로 마닐라 및 소수 거점도시 상권 집중

- Luaon섬 남부, 세부(Visayas섬), 다바오(Mindanao섬), 수빅(Subic), 클라크(Luzon섬 경제자유구역) 중심으로 초대형 쇼핑몰이 발달

○ 외국인 투자/ 화교 자본에 의한 경제성장

- 수출의 65%를 반도체, 전자분야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주도하고 전자분야 중심의 화교자본의 영향력이 막강

○ 부의 편중과 소비 양극화

- 인구의 25%는 절대 빈곤층으로 하루 2불 정도의 비용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고, 중산층이 미약하여 소비시장도 고가시장(초대형 현대식 쇼핑몰)과 저가시장(재래시장)으로 명확히 구분

○ 공급자 중심의 시장

- 유통이 일부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경쟁이 제한적이며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구조를 형성
- 특히, 필리핀 현행법에 의해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소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그 외에는 법인설립이 제한되며, 이는 필리핀시장을 공급자 중심으로 만드는 주 요인 중 하나임

○ 한국 상품 인지도

- 화장품, 휴대폰 등의 인기가 높아 수출이 확대되어 한류붐이 경제한류로 확대되고 있음

○ 유통구조

- 온라인 판매 등 비점포 형태의 유통채널보다는 전통적인 점포를 통한 유통이 아직까지 활성화 되어 있으며, 최근 인터넷 보급률 증가, 외국 온라인쇼핑 문화 유입 등으로 온라인 유통거래는 점차 확산되는 추세

○ 필리핀 온라인 유통시장형태

- 주로 Ayosdito, Sulit, Tipidpc 등 개인간 온라인 거래 사이트,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 Ensogo, Cashcashpinoy, Deal Grocer 공동구매 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짐

□ 경제동향

- 2013년 필리핀 경제는 정부지출 확대 및 민간소비 증가, 건설·부동산·금융부문 호조에 힘입어 7.2%의 기록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아세안 국가들 중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2014년 태풍 하이옌에 의한 피해로 농업 분야에 타격이 발생함에 따라 6.1%대로 둔화

- 2015년 국제 유가 하락 및 세계적인 소비침체로 인하여 필리핀 정부 예상치인 7~8%,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같은 국제기관의 예상치인 평균 6.5%를 밑도는 5.8%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 둔화

○ 경제성장률

- 필리핀 경제는 2015년 4/4분기중 6.3% 성장률을 기록, 2015년 연간 5.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 이는 인도, 중국, 베트남에 이어 아시아 지역 내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

(출처 : 필리핀 중앙은행)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GDP 성장률	7.6%	3.7%	6.8%	7.2%	6.1%	5.8%

○ 경상수지

- 필리핀 경제는 12년간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 중 GDP의 4.4%인 142억불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

○ 정부 채무

- 필리핀 정부는 GDP 대비 정부 채무 비율을 2010년 42.2%에서 2015년 중반 36.2%로 감축하였으며, 채무중 외채 비중을 2010년 42.4%에서 2015년 중반 35.6%로 감축

□ 필리핀 수출입 동향

○ 필리핀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 2014년 수출액은 618억달러로 2013년 대비 9% 증가, 수입은 639억 달러로 2.4% 늘어나며 무역적자의 폭은 2011년부터 매년 감소하는 추세
- 2015년 10월까지 수출액 48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했으며 수입액은 565억 달러로 5.6% 증가하여, 2015년 들어 적자폭이 다시 증가

<필리핀 무역수지 추이>

(백만달러)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10(월)
수 출	48,305	51,994	56,698	61,800	48,871
수 입	60,496	61,659	62,411	63,923	56,535
무역수지	-12,191	-9,665	-5,713	-2,123	-7,664

○ 필리핀의 국가별 수출 현황

<필리핀의 주요 국가별 수출 현황>

(백만달러)

순위	국 가 명	2013	2014	2015.10월
1	일 본	11,423	13,918	10,351
2	미 국	7,813	8,716	7,383
3	중 국	6,583	8,022	5,467
4	홍 콩	4,418	5,594	5,066
5	싱가포르	4,014	4,454	3,043
6	독 일	2,167	2,660	2,147
7	한 국	3,126	2,532	2,107
8	태 국	1,936	2,352	1,872
9	대 만	1,801	2,446	1,619
10	네덜란드	1,692	1,892	1,506

○ 필리핀의 국가별 수입 현황

<필리핀의 주요 국가별 수입 현황>

(백만달러)

순위	국 가 명	2013	2014	2015.10월
1	중 국	8,033	9,692	9,124
2	미 국	6,686	5,629	6,180
3	일 본	5,184	5,192	5,181
4	대 만	4,800	5,043	4,444
5	싱가포르	4,227	4,520	3,932
6	한 국	4,879	4,398	3,558
7	태 국	3,381	3,438	3,481
8	말레이시아	2,828	3,250	2,759
9	인도네시아	2,288	3,000	2,583
10	독 일	2,709	3,000	2,297

□ 수입규제제도

-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쿼터 및 비관세 장벽 형성 등의 강력한 필리핀의 정책을 도입·시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 쌀에 대한 총량규제, 설탕생산 및 처리과정에 대한 고도의 규제, 쌀 및 옥수수 등에 대한 가격지지 등을 통해 자국산업 보호 정책을 실행
- 특히 필리핀은 민감품목(sensitive items)에 대해서는 최소시장접근물량(MAV; Minimum Access Volume) 정책에 의거한 쿼터 내 관세율을 부과하며, 설탕(사탕수수)에 가장 높은 50-6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쌀은 35-50%, 가공류 식품, 감자, 옥수수도 관세율이 40%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마늘, 양배추, 고구마, 돼지고기 등 다양한 농·축산물이 규제 대상
- 이 밖에도 세이프가드, 라벨링 등의 기술장벽(TBT), 광범위한 외국인 투자 규제, 세관장벽 등의 다양한 수입규제 존재
- 수입금지 품목

- 중고자동차(3톤 이하 차량, 6~12톤 버스, 2.5톤~6톤의 트럭)
-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세탁 세정제 및 산업세정제 (R.A. No. 8970, 벌금 200,000페소)
- 오른쪽 핸들차량(R.A. No. 8506, 벌금 50,000페소)
 - 법적으로 허가된 모터 스포츠 이벤트, 오프로드 특수목적 차량 등 국가나 지자체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오른쪽 핸들 차량의 수입, 운영 등록은 모두 금지됨
- 장난감 총기와 폭발물(Letter of Instruction No. 1264)
- 지적재산권법 위반상품(R.A. No. 8293)
- 헌옷(R.A. No. 4653, 위반시 2~5년의 징역)
- 중고차 부품(Executive Order-156)
 - 수빅항을 통한 수입만 예외적으로 허용

- 관세법 제101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품목
 - 폭약 및 총기, 무기류 및 부품(특별히 승인된 것 제외)
 - 내란, 선동 등의 불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 생명의 위협을 담고 있거나 신체 해악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
 - 불법 낙태용 도구 및 약품 등
 - 필리핀 정부 공인 외 추첨 및 광고 및 목록
 - 금, 은, 기타 귀금속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정확한 순도가 표시되지 않은 것
 - 식품 의약품 법을 위반한 식품 및 약품 등
 - 기타 법률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것

○ 수입규제 품목

- 아래 자료는 필리핀 중앙은행(BSP)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수입을 할 경우 사전에 Bureau of Import Service에 사전 수입허가 취득이 필요한 품목인지 확인해야 함

<수입규제 품목 및 승인기관>

- 가전제품 : BPS
- Acetic anhydride : DDB
- 쌀, 옥수수 : NFA
- Sodium Cyanide : BFAD
- Chlorofluorocarbon : BFAD
- Penicillin, derivatives : BFAD
- 정제석유제품 : ERB
- 석탄 : ERB
- 쿨러복사기 : NBI & Cash Dept. of Central Bank
- 폭약용 화공약품 : PNP-FEO
- 양파, 마늘, 감자, 양배추(종자용) : Bureau of Plant Industry
- 농약 : Fertilizer & Pesticide Authority
- 중고차 - DFA (* 공기관 주재원 한하여 DFA승인 가능)

- 중고 자동차 부품 : BIS
- 모든 건강제품 All Health products - DOH-FDA
- 중고 타이어 : DTI
- 납산 중고배터리 :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EMB)
- 달러화로 결제하지 않는 중고차 수입 : BIS
- 정부기관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연간 2백만 페소 초과시) : Nat'l Computer Center
- 방사능물질 : PNRI
- 필리핀 통화의 합법적 입찰 : BSP
- 금화, 구리, 니켈 등 각종 주화용 빈 동전, 지폐 : BSP
-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농산물 : NFA, BAI
- 옥수수, 가금류/돈육 및 그 제품, 쇠고기를 제외한 육류 및 그 제품
- 휴대전화 단말기, 전화수신기 등 모든 통신기기 : NTC
- 중고컴퓨터 : DENR
- 냉장고, 냉동고, 에어컨용 프레온 가스 : DENR
- 모든 농업용 비료, 살충제 및 화학제품 : FPA
- 전기톱, 목재 : DENR-FMB
- 신선 과일, 채소류 : BPI
- 동/식물 : BAI
- 신선 및 냉동 어류 조개류 : BFAR
- 동물용 사료 : BAI
- 가공 식품류 및 약품 : BFAD
- 사탕수수함유 설탕 : SRA
- PVC resin : BOI
- 담배류 : NTA, DENR, BIR
- 화장품 : BFAD
- 수의약품 : BFAD, BAI
- 보트 및 각종 선박 : MARINA
- 각종 항공기 : ATO, CAB
- 컴퓨터(모뎀 장착된 것) : NTC
- 카지노 산업용 게임 기계, 부품 및 용품 : PAGCOR

※ 승인기관 약칭

- | | |
|---|--|
| ○ ATO : Air Transportation Office | ○ FPA : Fertilizer and Pesticide Authority |
| ○ BAI : Bureau of Animal Industry | ○ MARINA : Maritime Industry Authority |
| ○ BPI : Bureau of Plant Industry | ○ NBI :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
| ○ BFAD : Bureau of Food and Drugs | ○ NFA : National Food Authority |
| ○ BIR : Bureau of Internal Revenue | ○ NTA : National Tobacco Authority |
| ○ BOI : Board of Investment | ○ NTC :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
| ○ BPS : Bureau of Product Standard | ○ PNP-FEO : Philippines National Police-Firearms and Explosives Office |
| ○ BRAR : Bureau of Fisheries & Aquatic Resources | ○ PNRI : Phil. Nuclear Research Institute |
| ○ CAB : Civil Aeronautics Board | ○ EMB : Environmental Management Bureau |
| ○ DDB : Dangerous Drugs Board | ○ ICO-CA :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Certifying Agency |
| ○ DENR : Dept. of Environment & Natural Resources | ○ NM : National Museum |
| ○ DFA :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 ○ SRA : Sugar Regulatory Administration |
| ○ DOH : Department of Health | ○ PAGCOR : Philippines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 |
| ○ ERB : Energy Regulatory Board | |
| ○ 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

<자료원 : KOTRA>

○ 기타 수입제한 법규

- 근거법령 : Anti-Dumping Law/Safeguards Law(RA 8800)
- 규제기관 : 무역산업부(DTI) 및 관세위원회(TC)
- 규제품목 : Steel Angle Bar/ Float Glass/ Testliner Board/ Newsprints Sheet
* (DTI 조사진행중) Galvanized Iron (GI) and Pre-Painted Galvanized Iron Sheets
- Safeguard Law 조사 진행절차는 총 17개 절차로 약 120 일 소요

○ 수입쿼터

- 아래 제품은 공화국법 650조(Republic Act No. 650)에 따라 수입쿼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로부터 수입할당을 받은 특정업체만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음

수입쿼터 지정 품목

- 쌀, 밀
- 통조림 생선, 정어리, 오징어, 고등어, 청어, 연어
- 통조림 우유
- 소고기, 소시지 통조림, 콘드비프(절인 소고기), 냉동소고기
- 교과서
- 중고의류 (* 자선단체에 한하여 수입가능)
- 종이, 펄프

○ 비관세장벽

-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한-ASEAN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반 민감 품목의 관세율이 2012년부터 20% 이내로 인하되어 시행

AKFTA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 발표

2012년 4월 필리핀 정부는 일반민감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년~2015년 20% 이내, 2016년도부터 5% 이내, 초민감품목의 경우, 2016년도부터 A그룹 50% 이내, B그룹 20% 이내로 인하한다는 AKFTA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NO.73/74)을 공식적으로 발표, 2020년까지 모든 아세안 국가들과 90%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음

- 필리핀은 2008년 8월부터 봉강(Steel Angle Bar)에 대한 세이프가드 산업조사를 실시, 2009년부터 동 규제가 발효되었으나 WTO 규정상 수입품 중 시장점유율이 3%를 넘지 않는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3% 미만인 한국제품의 경우 2009년 7월 29일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내린바 있음
- 2013년 4월, 필리핀정부는 자국 쌀 산업보호를 위해 2017년까지 수입관세 40% 유예를 국제무역기구(WTO)에게 신청
- 그러나, 비록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 받아 자국의 쌀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결국 관세가 인하될 경우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이 필리핀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며, 쌀 개방을 저지하더라도 대신 다른 제품에 대한 개방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경과가 주목됨

○ 참고사항

- 그 동안 필리핀은 민감품목과 고도 민감품목으로 분류된 농산물 분야를 제외하고는 수입 규제와 관련된 사안들이 많지는 않은 편이나,
- 농축산물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율할당 적용,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 서비스 및 유통을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반경쟁적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상품거래와 투자진출 시 사전에 대상분야의 규제동향 확인은 필수적임
- 또한, 최근에는 자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정용 살충제의 제조·수입·유통 과정에서의 모니터링 강화, 완구류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등의 TBT(기술장벽) 사례들도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안전과 보건위생 분야에서 비관세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업계의 주의가 필요

다.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개요

-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수출은 2015.11월말 기준 77.7억불(전년동기 대비 16.3% 감소)로, 2015년 중 대 필리핀 우리 수출 감소는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제품 및 동제품의 하락에 기인

I. 총론

(단위 : 백만불, ()는 증감률 / 출처 : 한국무역협회)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11
총교역액	9,326	10,910	11,495	12,489	13,363.7	10,734
	(29.2)	(17.0)	(5.4)	(8.6)	(7.0)	(△13.3)
수 출	5,838	7,339	8,211	8,783	10,032	7,766
	(27.8)	(25.7)	(11.9)	(7.0)	(14.2)	(△16.3)
수 입	3,488	3,571	3,284	3,706	3,331	2,967
	(31.6)	(2.4)	(△8.0)	(12.9)	(△10.1)	(△3.8)
무역수지	2,350	3,768	4,927	5,077	6,701	4,799

※ 14년 기준, 필리핀은 우리의 20대 교역 대상국임(수출 13위, 수입 28위)

-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수입은 2015.11월말 기준 29.7억불(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

□ 한 - 필리핀 투자 통계

(단위 : 천불, 신고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수출입은행)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9	누계	
對한 투자	건수	7	7	7	9	11	12	153
	금액	328	21,290	625	101,995	5,872	187,003	443,620
對필 투자	건수	207	265	220	239	187	114	3,791
	금액	385,629	233,835	959,434	469,945	109,531	73,609	4,443,018
무역수지	70	81	67	52	40	25	1,479	

※ 14년 기준 외국의 전체 대한투자 중 필리핀은 34위이며, 14년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 중 필리핀은 20위
 ※ 누계 기준 : 대한투자 (1987-2015.9), 대필리핀투자 (1968-2015.9)

□ 필리핀 수출 동향 (2015년 기준)

- 2015.1-11월간 상품수출액은 539.9억불로, 전년 동기 수출액 573.0억불 대비 5.8% 감소

- 2015.11월중 필리핀 10대 수출품목 중 5개 품목이 감소세를 시현한 반면 필리핀 총 상품수출액의 90.4%를 차지하는 공산품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3.6% 증가
 - 의류(52.7% 감소), 화학제품(40.2% 감소), 목제품 및 가구(9.5% 감소), 기타 공산품(6.0% 감소), 금속부품(3.7% 감소)
- 2015.10월 작년동기 대비 감소했던 기계류 수출은 11월중 큰 폭 증가 (54.1%)하였고 그 외 전자기기 및 부품(19.7%), 코코넛오일(17.9%), 배선류 (13.3%), 전자제품(9.3%) 수출은 증가
- 가장 비중이 높은 수출 품목인 전자제품 중 38.3%는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반도체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5.7% 증가
- 주요 수출국가로는 일본(21.3%), 미국(14.0%), 홍콩(10.9%), 중국(9.8%), 대만(7.6%), 싱가포르(5.9%), 태국(4.1%), 한국(4.0%) 순

□ 한국의 對필리핀 주요 수출품목

(단위 : US\$ 백만, %)

순위	품 목 명	2014		2015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전 체	10,033	14.2	8,332	-17.0
1	반 도 체	3,088	35.8	2,779	-10.0
2	석유제품	2,724	45.1	1,176	-56.8
3	자 동 차	321	18.3	355	14.1
4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305	-16.7	314	25.6
5	동 제 품	250	9.8	243	-24.3
6	수동부품	222	-7.4	215	26.5
7	철 강 판	170	14.4	179	-19.4
8	컴 퓨 터	130	-16.9	154	670.0
9	광학기기	146	8.1	142	19.3
10	편 직 물	119	21.4	141	-3.4

주 : 수동부품(축전기, 저항기, 계전기류)

□ 한국의 對필리핀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S\$ 백만, %)

순위	품 목 명	2014		2015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전 체	3,331	-10.1	3,251	-2.4
1	반 도 체	827	-16.3	751	-9.2
2	곡 식 류	384	20.4	362	-5.7
3	동 제 품	273	-38.9	294	7.7
6	무선통신기기	42	147.1	162	285.7
4	원 유	368	-22.7	152	-58.7
5	수동부품	152	-22.4	143	5.9
7	동 광	104	-11.9	140	34.6
8	기구부품	104	55.2	103	-1.0
9	기호식품	106	16.5	91	-14.2
10	기타석유화학제품	29	190.0	88	203.4

주 : 수동부품(축전기, 저항기, 계전기류)

자료원 : KOTIS(MTI 3 단위) 순위는 2015 년 전체 수입액 기준

2 조세체계

가. 세제사(稅制史)

□ 필리핀 국세청의 변화 요약 (최근 10년간)

2005년	- 국세청의 전자시스템 개시 (eRegistration, eBroad, eCorrespondence, eSubmission 등)
2006년	- 공화국법 9337조에 따른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실행 - Run After Tax Evaders(RATE) 프로그램 계속 진행
2007년	- National Rollout of Computerized Systems(NRCS) 실시 - NPSTAR 강화 - SEC,DTI,SSS,LGUs를 통한 납세자 데이터베이스 확장
2008년	- Oplan Kandado 프로그램 실행, RATE 프로그램 강화
2009년	- RMO NO.15-2009에 따른 “Handang Maglingkod” 프로그램 재시도 - 납세자 피드백 시스템 개설
2010년	- “Making the public know” 캠페인 실시
2011년	- 2011~2016년 성과달성을 위한 전략 로드맵 정의
2012년	- eBIR FORMS, e-ATRIG 개시
2013년	- “I love the Philippines, I pay my taxes right.It's as easy as RFP. Register,File, and Pay” 캠페인 활동 개시
2014년	- Electronic Information Systems(eTIS-1)의 도입 - '14.1.16 압수 자산에 대한 관리에 대한 기술 작업반 재결성

□ 최근 필리핀 국세청 조직의 변화 요약

2008년	- 지방청의 세분화 · Bulacan과 Cavite 지역을 5군데 세분화 · Las Pinas-Muntinlupa 시를 2 지역으로 분리
2009년	- Revenue District Offices(RDOs) 9곳 신설
2010년	- 가스, 운송업 등의 Regular Large Taxpayer의 RDO No.116 과 주류, 광산 등의 Excise Large Taxpayer의 RDO No.121 지역의 분리
2011년	- Large Tax Service의 Regular Large Taxpayer를 3 Audit Division으로 변경됨
2013년	- 보라카이섬 Regional District Office 설립
2014년	- 본청은 LTS(Large Taxpayer Service), PMS(Planning and Management Service), PMIS(Project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Service), LG(Legal Group)과 ISG(Information Systems Group) Resource Management Group(RMG) 외의 부서로 구성됨 - LTS에는 세무조사 관련 부서 신설함 - OG(Operations Group)은 AS(assessment Service), CS(Collection Service), CSS(Client Support Service)로 구성됨

나. 세법체계와 특징

- 필리핀은 하나의 세법에서 모든 세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Revenue Regulation(RR), Revenue Memorandum Order(RMO), Revenue Memorandum Circular(RMC) 등의 발의 및 개정을 통해 세법을 보완하고 구체화
- 현행 세법은 1997년 Tax Reform Act of 1997을 제정하였고, 이후 RA (Republic Act) No. 9337, RA No. 9504 등으로 개정

세무관련 기본법

- The Tax Reform Act of 1997(Republic Act No.8424)
- Amendments to the Tax Reform Act of 1997 : RA9337('05.11.1. 발효), RA9504('08.07.06. 발효)

- 필리핀에서 과세되는 세금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됨
 - 사유세(Personal Tax) :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징수하는 거주세
 - 재산세(Property Tax) : 일정한 수준별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한 세금
 - 직접세(Direct Tax) : 세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즉시 그 혜택이 돌아오는 것 (예. 소득세, 주거세, 기부세등)
 - 간접세(Indirect Tax) : 세금이 직접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국가에서 사용되는 것(예. 관세, 부가가치세)
- 필리핀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목은,
 -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인지세(Documentary Stamp Tax), 증여세(Donor's Tax), 상속세(Estate Tax), 소득세(Income Tax), 비율세(Percentage Tax),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개별 소비세(Excise Tax) 등이 대표적임
- 우리나라와 같이 세목별 세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의 구성이 아닌, 특정한 내용에 대해 RR(재무부가 세법 시행을 위해 지정, 예. 2013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RMO(국세청장 고시, 예. 2013년 공식 영수증 개편) 등을 개별 발의 및 개정하기 때문에 조세체계가 다소 복잡하다는 평가가 있음
- 필리핀 조세법의 법원
 - The Philippine Constitution
 - Statutes - The National Internal Revenue Code(NIRC)
 - Revenue Regulation(RR) 재무부가 세법 시행을 위해 지정



- Revenue Memorandum Order(RMO) 국세청장 고시
 - Revenue Memorandum Circular(RMC) 조세법령 및 고시내용을 해석
 - Revenue Memorandum Ruling(RMR)
-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국세청의 판단, 견해, 해석
- BIR Rulings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 Judicial Decisions - Philippine Courts
 - Treaties or International Agreements
 - The United States Internal Revenue Acts, Judicial Decisions, Administrative Rulings and Opinions of the US Courts

다. 세수규모와 구성 등

□ 세수 규모

○ 세수 목표 및 실제 징수세액 (BIR Collection and Goals)

(In Trillion pesos)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실 적	0.823	0.924	1.058	1.217	1.335
목 표	0.860	0.940	1.066	1.254	1.456
목표 달성도		98.31%	99.23%	97.05%	91.65%

○ 징수세액 및 GDP (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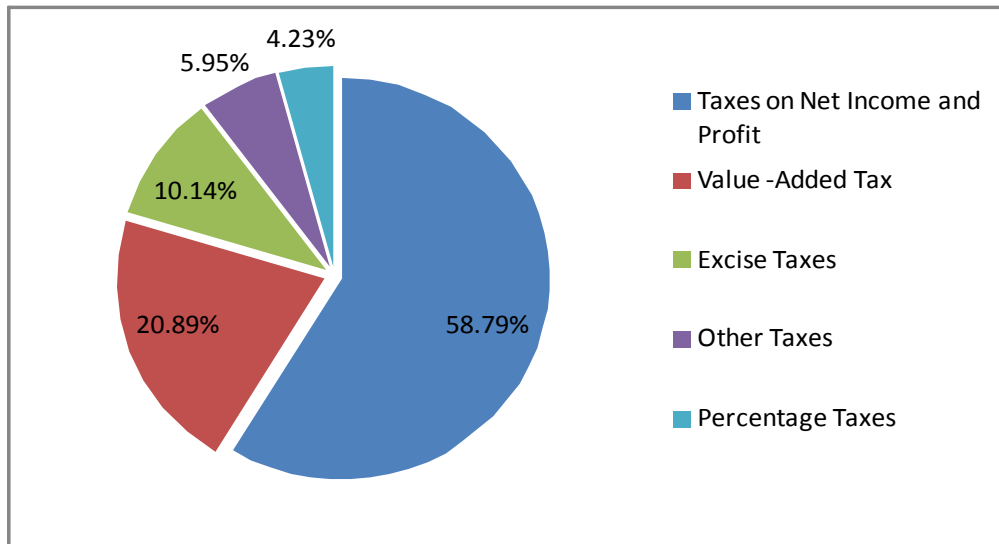
연도	국세청 징수 세액		GDP at Current Price		TAX EFFORT (%)
	금액(1조 페소)	증감률	금액(1조 페소)	증감률	
2010	1.335	9.71	12.642	9.53	10.56
2011	1.217	15.01	11.542	9.29	10.54
2012	1.058	14.47	10.561	8.78	10.02
2013	0.924	12.34	9.708	7.83	9.52
2014	0.823	9.64	9.003	12.18	9.14

□ 주요 세목별 세수 실적 (2014년)

(In Million pesos)

유 형	2014년		2013년	전년대비 실적	
	실적	목표	실적	증가액	증가율 (%)
합 계	1,334.76	1,456.33	1,216.66	118.1	9.71
I. Taxes on net Income and Profit	784.75	855.77	718.36	66.39	9.24
1. Company, corporate enterprise	455.09	495.97	424.49	30.6	7.21
a. Corporation income tax	187.01	206.31	174.91	12.1	6.92
b. withholding at source	268.08	289.66	249.57	18.51	7.41
2. Individual	283.58	297.54	246.58	37.00	15.01
a. Individual Income tax0.01	14.83	17.39	14.30	0.53	3.68
b. Withholding on Wages	232.43	243.28	200.77	31.66	15.77
c. Capital Gains Tax	12.47	11.62	10.70	1.77	16.61
d. Withholding at Source	23.84	25.43	20.79	3.05	14.67
3. Others	46.06	62.24	47.28	-1.22	-2.57
a. Bank Deposits	12.49	16.23	13.30	-0.81	-6.07
b. Tax on Government Securities	33.57	46.01	33.58	-0.01	-1.20
II. Excise Taxes	135.31	124.17	118.85	16.46	13.85
1. Alcoholic Products	37.52	39.80	33.53	3.99	11.90
2. Tobacco Products	82.33	65.36	71.60	10.73	14.98
3. Petroleum Products	9.41	12.11	8.50	0.91	10.77
4. Miscellaneous Products	2.83	3.86	2.71	0.12	4.28
5. Mining/Mineral Products	3.20	3.01	2.49	0.71	28.45
III. Value-Added Tax	278.79	325.73	250.14	28.65	11.45
IV. Percentage Taxes	56.48	72.40	60.80	-4.32	-7.10
1. Banks/Financial Institutions	25.49	34.56	29.20	-3.71	-12.72
2. Insurance Premiums	1.18	1.14	0.99	0.19	19.60
3. Amusements	0.44	0.73	0.42	0.02	3.70
4. Other Percentage	28.77	35.22	29.64	-0.87	-2.93
5. Taxes on use of goods or perform activities (Franchise Tax)	0.59	0.75	0.53	0.06	10.83
V. Other taxes	79.40	78.24	68.49	10.91	15.94
1. Tax on Property	5.44	5.09	3.27	2.17	66.38
2. Documentary Stamp Tax	69.03	67.21	60.35	8.68	14.38
3. Travel Tax	-	-	-	-	-
4. Miscellaneous	4.92	5.93	4.85	0.07	1.35

○ 주요 세목별 구성비 (2014년)



□ 납세자 구성

○ 연도별 전체 납세자수(Total Registered Taxpayers)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인 원	18,957,477	20,833,287	22,989,825	24,875,941
증 감 륜		9.9%	10.4%	8.2%

○ 납세자 구성 (2014년 기준)

구 분	2014	2013	증감률(%)
Total	24,875,941	22,989,825	8.20
Corporate Taxpayers	753,174	717,980	4.90
Taxable	553,981	532,731	3.99
Exempt	191,011	178,713	6.88
Non-Resident Foreign	8,182	6,536	25.18
Individual Taxpayers	15,345,448	14,311,342	7.23
Compensation Income Earners	12,981,926	12,076,663	7.50
Professionals	264,068	234,908	12.41
Single Proprietorship	2,041,699	1,942,583	5.10
OFW/Non-Resident Citizen	57,755	57,188	0.99
Estate	32,923	28,634	14.98
Trust	1,954	1,703	14.74
Marginal Income Earners	130,053	115,053	13.04
One Time Payer	3,292,074	3,065,771	7.38
Others(Executive Order No.98)	5,320,315	4,749,342	12.02

3 최근 세제개혁

가. 일반조세 개정 내용

- 필리핀 정부는 2015.1월 필리핀 국세청 세수 증대를 위한 27개의 우선순위 프로그램(RMC 3-2015)을 시행하는 등 세수 증대를 위한 관련세제 개편에 중점을 두는 한편,

-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보너스(13th month pay and other benefits)의 상한을 당초 30,000페소에서 82,000페소로 상향조정하는 등 소득세 관련 제세의 일부 개정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확대될 전망

□ 최근 개정 사항

2016년 개정 세제

- 비거주자가 필리핀에서 벌어들인 배당, 이자, 로열티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을 요청하기 위한 절차 개정(RMO No. 27-2016)
- RMO No. 27-2016는 RMO No. 72-2010에 대한 개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법에 정해진 조세조약 제외 지역(Tax Treaty Relief Application; TTRA)안에서 배당, 이자, 로열티 소득에 대해 적용가능한 조세조약상 세율로 확정세액을 원천징수 함으로써 조세조약 세율의 우선권이 완전히 승인되어 진다.
 2. 원천징수 대행자는 BIR Form Nos. 1601-F 와 1604-CF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상기 서식 작성 내용에 오류가 있을 시 조세조약 세율 우선권 적용불가하며, 원천징수 대행자의 원천징수 업무 관련 비용도 불공제 된다.
 3. 내국세법 Sec.28(B)(5)(b) 하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Non-resident foreign corporation; NRFC)이 수령하는 기업간 배당소득에 대해 우선적용 세율(15%)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 필리핀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아야함
 - 국제적 회계시스템을 조세체계를 갖추어야함
 - 해당 거주지국에서 비거주외국법인의 배당소득세액에 대해 필리핀에서 15%가 납부된 것으로 보고,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
 4. 조세조약 세율 우선권 적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기 BIR Form Nos. 1601-F와 1604-CF를 비거주 외국법인이 지정·등록한 필리핀 국내 원천징수 대행자의 적정 관할 세무서에 기한 내 제출되어야 하며, 확정세액이 납부 되어야 한다.
 5. 세무조사가 있을 시, 조세조약 세율 우선권 요청의 관철을 위해 원천징수 대행자는 관련 근거서류를 보관해야한다.

2016년 개정 세제

6. 상기 3항의 15%세율 적용을 위해서 비거주 외국법인은 별도의 적용신청서를 필리핀 국세청 국제조세부서(BIR-ITAD; International Tax Affairs Division)에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7. 상기 규정의 위반할 시 Sec.250 및 기타 관련 세법 가산세가 적용된다.
8. 상기 배당, 이자, 로열티 소득 외의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RMO No. 72-2010을 계속하여 따른다.

□ 부과권 제척기간, 징수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소멸시효법 적용 제외 합의서(이하, 합의서)” 시행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개정(RMO No. 14-2016)

○ RMO NO.14-2016 은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규정함

1. 제척기간(소멸시효) 적용제외 합의서는 RMO NO. 20-90 또는 RDAO NO. 05-01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일 수 있으나 필수적이지는 않다. 다음에 언급된 사항들이 적용된다면 납세자가 상기의 형식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합의서 실행이 무효화되진 않는다.
 - a) Section 222조 b항, d항에 따른 제척기간(소멸시효) 적용 제외 합의서는 부과제척기간 또는 징수권 소멸시효 내 시행되어야 한다. 시행일자 는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한다.
 - b) 합의서는 납세자 본인 또는 그가 정식으로 권한을 위임한 대리인이서 명하여야 한다. 기업의 경우 합의서는 그 기업의 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 c) 합의된 부과제척기간, 소멸시효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징수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합의서에는 어떠한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명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세액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모든 내국세”등으로 기재할 수 있다.
3. 대리인이 위임 작성한 합의서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세무조사에 참여한 납세자의 대리인의 위임권한은 합의서를 무효화하는 것에 대항할 수 없다.
4. 합의서를 공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내국세법에 제시된 대로 작성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효하다.
5. 납세자는 서명한 합의서를 국세청장 혹은 관련 부서등에 제출할의무가 있다. 합의서는 제척기간 혹은 소멸시효 도래 전에 접수 및 시행되어야 하며, 복사본을 보관해야한다.
6. 합의서에는 다음의 두가지 일자만 제시되면 된다.
 - 합의서 시행일자
 - 합의한 소멸시효기간(부과제척기간)
7. 이전에 시행된 합의서의 시효기간에 대해 추가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2016년 개정 세제

□ 연말보너스(13th month pay)와 그 외 보너스(other benefits)의 과세제외 상향조정

- Republic Act No.10653(2015.2월 제정) 및 Revenue Regulations No. 3-2015 (2015.3월 제정)의 제정을 통하여 과세대상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13th month pay*와 다른 Benefits의 상한선을 30,000페소에서 82,000페소로 상향조정함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13th month pay :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No.851으로 규정된 연말보너스 성격의 급여

- 상기 규정은 기본급여와 그 외 수당과 같은 고용관계에서 받는 일반적인 보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 개정

- 필리핀 국세청은 RA 10351 및 RR No. 17-2012를 통하여 특별소비세를 개정하였으며, 개정내용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세율을 올리고, 발효주와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등을 통해 단일의 조세체도를 만들어, 소비억제품목(sin products)에 대한 특별소비세 계산구조를 간소화하고, 동시에 정부의 국민건강프로그램(Universal Health Care Program;UHCP) 기금마련 및 이를 통한 국민복지향상을 목표로 함
2. 또한 증류주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복합적인 조세체계로 변경함
3.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 담세율을 2013년에 29.1%에서 52.5%까지, 2017년 내에 63%까지 끌어올릴 예정임
4. 특정 소비억제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하기의 날짜로부터 매년 4%씩 자동인상되도록 개정
 - 2014.1.1 - 와인, 소형 양조장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발효주(fermented liquors brewed and sold at microbreweries), 담배류(tobacco products and cigars)
 - 2016.1.1 - 증류주
 - 2018.1.1 - 발효주(소형 양조장에서 제조 및 판매되는 발효주 제외), 담배(cigarettes)
5. 소비억제품목의 재분류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와인, 발효주, 담배의 적절한 법적분류를 매 2년마다 하도록 개정
6. 주류 및 담배류에 대한 개정된 특별소비세 세율표(Appendix A)를 게재
7. 담배류 및 주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세수의 일부를 법에 정해진 특정한 공익 목적을 위해 재분배할 수 있는 법안 마련

나. 국제조세 주요 개정 내용

○ Revenue Regulations(RR) No. 2-2013

- '13.1.23 이전가격의 국제적 기준(OECD)을 기반으로 하는 이전가격세 제RR NO. 2-2013을 발표

Revenue Regulations(RR) No. 2-2013

- Transfer Pricing(TP) Guidelines
- Largely based on arm's length OECD TP guidelines
- Effectivity Date : February 9, 2013
- Transitory provision : Transactions entered into prior to the effective date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and other administrative issuances prevailing at the time the controlled transactions were entered into

○ Revenue Memorandum Circular No.3-2015

- '15.1.13. 필리핀 국세청은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IGA 1)체결과 RR No.2-2013 관련 TP 가이드라인의 의무 제출서류 및 위험평가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Revenue Memorandum Circular No.3-2015 계획 발표

Revenue Memorandum Circular No.3-2015

- Exchange of Information(EOI) Program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Intergovernmental Agreement Model 1(FATCA-IGA 1)
- Transfer Pricing Program

○ 조세조약

- 필리핀은 '15.12.31. 현재 40개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과 '84.2.21.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s)을 체결

- '13.6.21 필리핀, 태국 양국 개정 조세조약안에 가서명함
- '16.1.1. 이전가격 관련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개정된 독일과의 조세 조약 (DTA) 발효함
- 미국 - 필리핀 FATCA 협정 체결
 - '15.9.30. 미국 - 필리핀 FATCA 협정(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체결

다. 세법개정 동향

□ 필리핀 세법 개정안 추진 배경

- 필리핀 정부는 종합조세개혁 법안과 조세인센티브 합리화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음
-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ASEAN 통합 준비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필리핀의 소득세 및 법인세는 ASEAN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다른 회원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투자 및 자본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조세 인센티브 합리화 법안과 관리 및 투명화 법안은 인센티브 목적 규정 및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함
 - 현재 50개가 넘는 조세 인센티브 관련법이 실행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필리핀 정부는 인센티브의 취지가 기업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처음 몇 년 동안 겪게 되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보고 인센티브 적용기간 단축을 추진 중임

□ 필리핀 진출 시사점 및 전망

- 필리핀은 2013년부터 대대적인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16.5월 대통령 두테르테 당선을 기점으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대통령 두테르테의 당선 공약이 25,000페소 이상 고소득자에게 세금 추과 부과 및 25,000페소 미만 소득자는 세금 면제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며,
 - 16.5월 도밍게즈 재무장관은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고 사회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공론화하였음
 - 도밍게즈 재무장관이 필리핀의 법인 소득세율이 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율을 25%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개인소득세 또한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우리 기업이 필리핀 진출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조세인센티브 제도와 그에 따른 세제 혜택으로서, 우리 기업은 조세 인센티브 합리화 법안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안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6년 6월말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논의가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됨

Ⅱ . 조세제도

1. 개인·법인 소득세 / 34
2. 부가가치세 / 52
3. 국제조세 / 58
4. 기타의 세금 / 77
5. 세법개정안 / 79



1 개인·법인 소득세

- 필리핀은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가 모두 소득세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가. 납세의무자

□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구분	납세의무 범위
거주자 (Resident Citizens)	필리핀 국내외 소득에 대해 과세
비거주자 (Nonresident Citizens)	필리핀내 발생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거주외국인 (Resident Aliens)	필리핀내 발생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비거주 외국인 중 필리핀 내 비즈니스 종사자	필리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거주 외국인과 동등하게 과세
비거주 외국인 중 필리핀과 비즈니스 비종사자	필리핀내 발생하는 소득 총액에 대해 과세

□ 법인소득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구분	납세의무 범위
내국법인	필리핀 국내외 소득에 대해 과세
거주외국법인	지사 등 필리핀 내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
비거주외국법인	필리핀 내 총이익에 대해 과세

* 모든 파트너십, 주식회사, 협회, 보험회사가 법인에 포함



나. 거주자 판정

□ 개인에 대한 거주자판정

- 거주자는 필리핀 소득세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음
- 거주자인 외국인은 필리핀 국민은 아니지만 필리핀에 거주하는 개인,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필리핀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서 필리핀 국민이 아닌 자를 말함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비거주자인 필리핀 국민에 해당
 - ① 국세청장이 인정할 정도로 해외에 물리적인 주소로 두고 해외에 거주할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 국민
 - ② 항구적으로 이민자 또는 고용을 위하여 해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과세기간 동안 필리핀을 떠난 필리핀 국민
 - ③ 해외에서 근무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고용관계로 인하여 과세기간 대부분을 해외에 거주하여야 하는 필리핀 국민
 - ④ 과거 비거주자였던 자로서 필리핀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과세기간 중에 필리핀에 도착한 필리핀 국민(이 경우에 필리핀에 거주하지 않았던 과세기간 동안에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국민으로 간주)

※ 납세의무자는 해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것인지 필리핀에 재입국하여 거주할 것인지 의도를 표시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필리핀 국민이란?

- 1971년 헌법 도입시 필리핀 국민인 자
- 부모 중 한 사람이 필리핀 국민인 자
- 1935년 헌법 조항에 따라 필리핀 시민권을 선택한 자
- 법에 의하여 귀화한 자

□ 법인에 대한 거주자 판정

- 필리핀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내국법인, 내국법인이 아닌 법인은 외국법인으로 보며, 필리핀 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거주자인 외국법인, 필리핀 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은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다. 과세대상 소득

- 일반적으로 법인은 총소득에 대해, 개인은 소득종류별로 과세하는 것이 특징이며 아래에서 소득의 종류별로 살펴보고자 함

□ 사업소득

- 법인의 사업소득은 모든 다른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개인의 사업소득은 다른 종류의 소득과 분리하여 과세
- 과세대상 총사업소득(Gross Income)은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으로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임 (일반적인 전문 파트너쉽으로부터 수취한 파트너의 지분은 사업소득으로 간주)
- 재무 보고 목적의 기업회계기준에서 손익을 인식하는 기준으로 세법상 손익을 인식
- 필요경비에는 사업상의 비용, 이자비용, 손실,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기부금, 연구개발비 등이 있음
 - 사업상의 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개발, 관리, 사업의 운영, 전문직의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또는 전문직의 비용은 공제 가능함



- 이자비용
 - 세금과 관련된 이자소득의 33% 범위 내에서 과세연도 중 지급하거나 발생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
 - 상업 또는 사업, 전문직 활동에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 발생한 이자비용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
 - 선급금과 부채로부터 발생한 이자비용은 부채가 상환된 연도에만 필요경비로 인정
 - 부채가 정기적으로 상환되면 상환비율에 해당하는 이자금액 만큼 필요경비로 인정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필요경비로 인정
- 기부금은 개인은 순소득의 10% 한도, 법인은 순소득의 5% 한도 내의 기부금을 공제
- 연구개발비는 발생한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최소 60개월 동안 감가상각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 가능
- 기타 필요경비
 - 임대료, 감가상각충당금, 감모상각충당금, 대손상각비, 고용주 부담 연금신탁 불입액, 인센티브로 부여된 특별경비 항목, 법률비용, 합리적 이고 지출증빙을 갖춘 광고비·접대비·여행경비
- 아래 항목은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음
 - 설립비용 및 사업개시 이전 비용(법인 존속 기간 또는 내용연수 중 기간동안 감가상각 가능)
 - 특허권·저작권 취득비용(내용연수 기간 동안은 감가상각 가능)
 - 자산에 대한 소유권 유지 비용
 -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영구적 개량을 위해 신축 건물에 대하여 지불한 비용
 - 임원이나 직원을 위한 생명보험료 지급액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 사실상 배당으로써 우선주에 지급된 이자
- 선택적인 표준 공제
 - 필리핀 국민, 거주자인 외국인은 법인들에게 허용되는 상기 항목별 필요경비 공제 대신 총사업소득의 40%를 선택적인 표준 공제로 청구 가능

○ 감가상각

- 상업 또는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노후, 진부화에 대하여 감가상각 총당금 설정을 허용하며 그 대상자산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무형자산은 상업 사업에서의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상각가능
- 토지, 매매용주식, 기타 상업 또는 사업의 사용에 기간 제한이 없는 무형자산(예. 영업권) 감가상각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열거되어 있음
- 사업연도별 감가상각총당금은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원가, 추정내용연수, 잔존가치로 결정됨
- 감가상각은 정액법, 가속상각법, 연수합계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외국법인은 필리핀 내에 소재하는 자산에 대하여만 감가상각 허용

○ 사업손실

- 사업손실이란 상업, 전문직,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손실이나 이것들과 연관된 자산의 손실로서 당해 손실이 화재, 폭풍, 난파, 강탈, 절도, 횡령으로 인한 것을 말함(보험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없는 경우 공제)
- 비거주자인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필리핀 내에서 수행한 전문직 활동이나 사업, 상업으로부터 실제로 발생한 손실만 공제가능
- 사업손실은 3년 이내에 공제가능하며, 비과세나 세금 감면 기간 중 발생한 손실이나, 사업이나 기업의 소유권의 중요나 변동이 있었던 경우의 손실은 인정하지 않음



□ 배당소득

- 배당이란 법인이 이익을 당해 법인의 주주들에게 금전이나 기타 자산 형태로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익을 분배하는 법인이 신주를 재취득하지 않는 경우 신주 발행을 통하여 분배되는 이익은 배당으로 보지 않음
- 과세대상 소득은 필리핀 원천 배당소득과 국외원천 배당소득으로 나뉘어 볼 수 있음
 - 필리핀 원천 배당소득이란,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배당 분배전 최소 3년간 이익의 최소 50%가 필리핀 내에서 발생한 외국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을 말함

<필리핀 원천 배당소득>

수 취 인		과세형태
거 주 자	내국법인	소득세 신고납부
	거주자인 외국법인	비 과 세
	거주자인 필리핀 국민	소득세 신고납부
	거주자인 외국인	비 과 세
비거주자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비 과 세
	비거주자인 필리핀 국민	비 과 세
	비거주자인 외국인	비 과 세

<국외원천 배당소득>

수 취 인		과세형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
거 주 자	내국법인	비 과 세	
	거주자인 외국법인	비 과 세	
	거주자인 필리핀 국민	원천징수	없 음
	거주자인 외국인	원천징수	없 음
비거주자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원천징수	없 음
	비거주자인 필리핀 국민	원천징수	없 음
	비거주자인 외국인	원천징수	없 음

- 배당금액을 수령한 연도에 과세하는 것이며, 현금배당은 수령한 현금의 금액 내에서 과세, 재산 형태로 수취한 배당은 재산의 시가 내에서 과세하는 것임
-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국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 원천징수
 -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외국법인에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필리핀 원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금이 부과
 - 원천징수 세금은 배당이 결의되고 지급이 확정된 경우 원천징수
 - 원천징수 불이행시 비용 불공제 및 원천징수 세금이 추징

□ 이자소득

- 이자소득 수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상이
- 이자소득이 비거주자에게 지급된 경우 해당국과의 이중과세 방지협약에 따라 세율이 감소
- 이자소득에 대하여 필리핀 소득세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음
- 필리핀원천 이자소득
 - 사채, 어음, 기타 거주자(내국법인 포함)의 이자부 채무에 대한 이자소득은 필리핀 원천소득으로 처리
 - 사채에 대한 이자에 있어서 필리핀 외의 지역에서 사채가 양도된 경우 필리핀 원천소득을 판정하는 데 있어서 관련이 없음



○ 과세대상 이자소득

<거주자>

-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외국법인, 거주자인 필리핀 국민,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필리핀 화폐의 예금, 적금, 신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하여 세금이 징수
- 국외원천 이자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단, 필리핀 원천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되는 거주자인 외국법인과 거주자인 외국인은 제외)

<비거주자>

-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 및 비거주자인 필리핀 국민에게 지급된 필리핀 원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하여 과세(거주자인 시민과 동일)
-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외국인 및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게 지급된 필리핀원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하여 과세

-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나, 외국 납부세액이 있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당해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 원천징수

- 시기 : 필리핀 원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이자 지급시에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금은 예금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은행이 아닌 재무 중개기관에 의해서 징수되어야 함
-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자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로열티소득

- 로열티소득에 대한 세율은 로열티소득 수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이

-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소득에 대한 세율은 해당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따라 감소됨
- 일반적으로 로열티소득에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됨(필리핀 소득세 법에는 로열티소득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로열티소득으로 간주되는 많은 지급을 예시함으로써 로열티소득의 개념이 이해될 수 있음)
- 필리핀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만들어진 로열티소득이나 필리핀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만들어진 로열티소득은 필리핀 원천 소득으로 간주
- 국외원천소득
 - 필리핀 이외에 있는 재산으로부터의 로열티소득
 - 필리핀 이외에 있는 재산에 대한 지분으로부터의 로열티소득
 - 필리핀 이외 지역에서 특허권, 저작권, 비공개 처리과정 및 공식, 영업권, 상표권, 상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기타 유사한 재산의 이용에 대한 권리나 이용에 대한 로열티소득
- 과세대상 로열티소득은 필리핀 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필리핀 원천 로열티소득>

수취인		과세형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거주자	내국법인	원천징수	없음
	거주자인 외국법인	원천징수	없음
	거주자인 필리핀 국민	원천징수	없음
	거주자인 외국인	원천징수	없음
비거주자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원천징수	없음
	비거주자인 필리핀 국민	원천징수	없음
	비거주자인 외국인	원천징수	없음



<국외원천 로열티소득>

	수 취 인	과세형태
거 주 자	내국법인	소득세 신고납부
	거주자인 외국법인	비 과 세
	거주자인 필리핀국민	소득세 신고납부
	거주자인 외국인	비 과 세
비거주자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비 과 세
	비거주자인 필리핀국민	비 과 세
	비거주자인 외국인	비 과 세

- 일반적으로 로열티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나, 외국 납부세액이 있는 로열티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당해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 기술지원 및 서비스 수수료

- 기술지원 및 서비스 수수료는 로열티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비거주자인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수수료가 공급받은 서비스보다 높은 경우 독립기업의 원칙 기준에 의거 재조정
- 필리핀 소득세법에 기술지원 및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예들이 확장된 로열티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음
- 필리핀원천 기술지원 및 서비스 수수료
 - 필리핀 내에서 수행된 노동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필리핀 원천 소득임
 - 반면에 필리핀 이외 지역에서 수행된 노동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국외 원천소득임
- 로열티 소득으로 처리되는 필리핀 원천 기술지원 수수료에 대하여는 원천 징수를 통하여 과세

□ 양도소득

- 양도소득은 주식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소득으로 과세(예외 : 주식 양도는 특별세율 적용 또는 주식거래세로 과세)하며, 개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방식으로 과세함
- 양도소득은 양도자산의 판매, 이전,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때 양도자산이란 사업과 관련 없이 납세자가 보유한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재산은 포함하지 않음
 - 매매용 주식
 - 사업상 거래처에 판매하기 위해 주로 보유하는 재산
 - 상업 또는 사업에서 사용되고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재산(예, 사무실 비품, 건물)
 - 상업 또는 사업에서 사용되는 부동산(예, 사업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 필리핀 원천 양도소득
 - 납세자에 의해 생산되지 않고 취득되어 필리핀 내에서 양도되어 발생되는 이득은 필리핀 원천소득으로 간주
 - 자산이 납세자에 의해 생산된 후 양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장소와 관계없이 그 이득은 부분적으로 필리핀 원천 소득으로 간주
- 내국법인의 지분 양도, 교환 및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
 - 지방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세율로 과세
 - 지방 주식 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총수입에 대하여 주식거래세로 과세
- 필리핀 내의 부동산의 양도 및 기타 처분으로 필리핀 국민과 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은 원천징수세율에 의거 원천징수 대상
- 양도차손
 - 순양도차손은 자산의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초과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통산 가능
 - 비상장주식의 지분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다른 법인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음



- 비상장주식이 아닌 주식의 지분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비상장주식이 아닌 주식의 지분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통산가능

□ 부동산임대 및 리스소득

- 필리핀 소득세법에는 부동산임대 및 리스 소득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자산의 이용과 관련하여 받거나 발생하는 모든 지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됨
- 일반적으로 필리핀 내에 위치하는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필리핀 원천 소득임
- 과세대상 소득

<필리핀원천 부동산임대 및 리스소득>

수 취 인		과세형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거 주 자	내국법인	원천징수	있 음
	거주자인 외국법인	원천징수	있 음
	거주자인 필리핀국민	원천징수	없 음
	거주자인 외국인	원천징수	없 음
비거주자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원천징수	없 음
	비거주자인 필리핀국민	원천징수	없 음
	비거주자인 외국인	원천징수	없 음

<국외원천 부동산임대 및 리스소득>

수 취 인		과세형태
거 주 자	내국법인	소득세 신고납부
	거주자인 외국법인	비 과 세
	거주자인 필리핀국민	소득세 신고납부
	거주자인 외국인	비 과 세
비거주자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비 과 세
	비거주자인 필리핀국민	비 과 세
	비거주자인 외국인	비 과 세

□ 근로소득

- 근로소득은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를 차감한 후 총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며, 필요경비는 공제되지 않음
- 필리핀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모든 보상금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함
(예시) · 급여, 임금, 보너스, 사례금 · 과세대상 연금 · 수당(예. 생활비, 교육비등) · 보수(이사의 보수) · 기타 금전적, 비금전적 유형의 소득
- 거주자인 필리핀 국민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거주자인 외국인 ·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필리핀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비거주자인 필리핀 국민은 특별 규정 적용)
- 1년 중 183일 이상 필리핀에 체류하는 외국인 컨설턴트는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세 납세의무 있음
- 원천징수
 - 원천징수세율은 근로소득금액,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라 상이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됨
 - 미혼자인 개인
 - 법적으로 분리신고하는 기혼자인 개인
 - 가족의 가장
 - 법적으로 합산신고하는 기혼자인 개인으로써 배우자 중 1인만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법적으로 합산신고하는 기혼자인 개인으로써 부부가 동일한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이 경우, 근로소득은 부부 간 합산과세)
 - 그 외의 근로자는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된 세금은 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임



- 법정 최저임금 근로자는 소득세 신고의무 없음
- 필리핀 국민, 거주자인 외국인이 수취하는 상금은 로열티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금액이 1만 페소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사망을 이유로 지급되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비과세, 증여·상속·유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되는 것임

○ 인적공제

<필리핀 국민 및 거주자인 개인>

- 필리핀 국민과 거주자인 외국인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 공제가 추가로 공제됨

공제대상자	공제금액(페소)
독신자	50,000
가장	50,000
소득이 있는 기혼자 1인당	50,000
부양가족 1인당(최대 4인까지)	25,000

- 선택적인 표준공제 : 아래 인적 추가 공제와 함께 총소득에서 차감되며 40% 공제가 가능함

<비거주자인 외국인>

- 필리핀 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은 당해 외국인의 국가에서 비거주자인 필리핀 국민에게 인적공제가 허용된다면, 필리핀 역시 동일하게 인적공제가 허용됨(공제금액은 필리핀 거주자와 동일)

라. 소득세율

□ 소득수준별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 구간	세 율
1만페소 이하	5%
1만페소 초과 3만페소 이하	500페소 + 1만페소 초과액에 대한 10%
3만페소 초과 7만페소 이하	2,500페소 + 3만페소 초과액에 대한 15%
7만페소 초과 14만페소 이하	8,500페소 + 7만페소 초과액에 대한 20%
14만페소 초과 25만페소 이하	22,500페소 + 14만페소 초과액에 대한 25%
25만페소 초과 50만페소 이하	50,000페소 + 25만페소 초과액에 대한 30%
50만페소 초과	125,000페소 + 50만페소 초과액에 대한 32%

* 세액이 2,000페소 이상인 경우, 전체 세액의 1/2을 분납할 수 있으며, 신고서 제출시와 당해연도 7월 15일에 나누어 납부가능함

□ 필리핀 거주자 불로소득(Passive Income) 세율

소득의 종류		거주자 세율
이자소득/펀드투자수익(Interest from currency deposits, trust funds and deposit substitutes)		20%
로열티(royalties)	일반적인경우	20%
	출판, 작곡, 도서 관련	10%
상금(prizes)	10,000페소 이하	5%
	10,000페소 초과	20%
경품(winnings) 단, 복권(Lotto) · 경마(PCSO) 제외		20%
외화예금이자소득 (Interest Income of Foreign Currency Deposit)		7.5%
배당소득(Cash and Property Dividends)	내국법인이 개인에게 배당	10%
부동산 양도소득		총양도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의 6%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10만페소 이하	5%
	10만페소 초과	10%
장기저축 · 투자에 대한 이자	5년 이상 유지	비 과 세
	4년 이상 5년 미만	5%
	3년 이상 4년 미만	12%
	3년 미만	20%



□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 외국인

소득의 종류		세 율
이자소득 / 펀드투자수익		20%
장기저축·투자에 대한 이자	5년 이상 유지	비 과 세
	4년 이상 5년 미만	5%
	3년 이상 4년 미만	12%
	3년 미만	20%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10만페소 이하	5%
	10만페소 초과	10%

* 필리핀에 체류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간주

□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거주자 외국인

소득의 종류		세 율
필리핀 원천의 모든 소득		25%
필리핀내 부동산 양도소득		6%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	10만페소 미만	5%
	10만페소 초과	10%

□ 지역본부, 지역운영본부, 역외금융기관((Offshore Banking Units)의 지점, 석유관련 용역 시공자 및 하도급자의 필리핀 내 총 소득 - 15%

□ 일반적인 전문기술 파트너십(General Professional Partnerships) - 0%

□ 내국법인

소득의 종류		세 율
일반적인 소득	일반적인 경우	과세대상 순이익(net taxable income)의 30%
	제한세율(Minimum Corporate Income Tax)	총소득*(gross income)의 2%
	배당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유보된 소득	부적절하게 유보된 소득의 10%
자영교육기관/병원	일반적인 경우	과세대상 순이익의 10%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가 50% 이상인 경우	총소득*의 30%
공공기관, 정부대행기관	일반적인 경우	과세대상 순이익의 30%
	최저한세*	총소득*의 2%
	배당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유보된 소득	부적절하게 유보된 소득의 10%
특정 면세법인	면세활동	0%
	과세활동	30%
특별법 적용법인		특별법에 규정된 세율
과세대상 파트너십	일반적인 경우	과세대상 순이익(net taxable income)의 30%
	최저한세*	총소득*의 2%
	배당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유보된 소득	부적절하게 유보된 소득의 10%
이자소득/펀드투자수익(Interest from currency deposits, trust funds and deposit substitutes)		20%
로 열 티		20%
외화예금이자소득(Interest Income of Foreign Currency Deposit)		7.5%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	10만페소 미만	5%
	10만페소 초과	10%
외화예치기관 및 역외금융기관(Offshore Banking Units)과 비거주자간 외환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과세제외
외화예치기관 및 역외금융기관의 국내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로 발생한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배당	과세제외
비업무용 부동산 양도소득		총양도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의 6%

* 최저한세는 법인의 사업개시연도로부터 4번째 과세연도부터 과세

최저한세율이 일반 소득세율보다 높은 경우 총소득의 2% 납부

* 총소득(gross income)은 총수입에서 환입, 할인, 공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함



□ 거주자인 외국법인

소득의 종류		세 율
일반적인 소득	일반적인 경우	과세대상 순이익의 30%
	제한세율(Minimum Corporate Income Tax)	총소득의 2%
	배당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유보된 소득	부적절하게 유보된 소득의 10%
국제 운송용역	필리핀에서 발생된 소득	2.5%
	지역운영본부	총수입의 10%
	다국적회사의 지역본부	과세제외
	특별법 적용법인	특별법에 규정된 세율
	역외금융기관	총수입의 10%
	외화예치기관	총수입의 10%
지점의 이익에 대한 송금	일반적인 경우	외국에 있는 본점에 송금되는 이익의 15%
	수출가공지역(PEZA)에 등록된 지점이 송금하는 이익	과세제외
외화예치기관 및 역외금융기관(Offshore Banking Units)과 비거주자간 외환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과세제외
외화예치기관 및 역외금융기관의 국내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로 발생한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 부터의 배당	과세제외

□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소득의 종류		세 율
일반적인 소득		필리핀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의 30%
영화 소유회사, 임대회사, 배급회사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총소득의 25%
선박임대		임대료의 4.5%
항공기, 기계 및 기구 임대		임대료의 7.5%
외화대출금 이자		20% 원천징수
배당소득	내국법인으로 부터의 배당	15%원천징수 (단, 비거주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 세율과의 차이율 15%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해야 상기세율 적용가능하며,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시 30% 적용)

2 부가가치세

가. 개요

- 필리핀 부가가치세법은 과세 대상 거래를 재화의 공급·용역의 제공 및 임대 관련·재화의 수입 3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 재화는 상품 및 유·무형 자산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화의 판매 및 교환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되는 것이며, 영세율 적용대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제공 및 임대 관련 부가가치세는 거래 발생 총액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재화와 마찬가지로 영세율 적용대상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 재화의 수입은 과세 지역 외로부터 과세 대상 재화를 반입하여 이용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 것으로, 상품의 수입금액에 관세 및 기타 관계되는 모든 세금을 합산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며, 면세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나. 세율 및 과세표준

□ 세율

- 대부분의 과세공급에 적용되는 부가세율은 12%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대해 법에서 열거하고 있음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값에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값으로, 이 때 과세표준은 공급가액(gross selling price)이 기준이 되는 것임
 - 공급가액(gross selling price)이란 매입자가 공급자에게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전상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되는 것임(특소세는 포함)
 - 재화의 수입 시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산식이 아래와 같음

$$\text{과세표준} = \text{관세 과세표준} + \text{관세} + \text{특소세} + \text{보세구역에서 반출전까지 발생한 수수료 등 기타요금}$$

다. 영세율

□ 재화의 수출 (Sec. 106(A))

- 재화의 수출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
 - 필리핀에서 국외로 재화를 선적하여 공급
 - 비거주자에게 원재료 공급시 이의 제조 가공 포장을 위해 국내수출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수출업자란 수출이 연간 생산품의 70%를 초과하는 기업)
 - 중앙은행에 공급하는 금
 - 수출로 보는 재화의 공급
 - (예) 신용장 등에 따라 무역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등
 - 국제 운송(선박, 비행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선용품등을 판매하는 경우

□ 간주 공급 (Sec. 106(B))

- 재화의 이전 없이 대가를 수령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당초 사업상 사용 용도인 재화를 비사업적 용도로 사용/소비한 경우
 - 주주에게 이익으로 배분, 채권자에게 채무상환 목적으로 양도
 - 위탁상품이 위탁일로부터 60일 내에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 폐업 및 사업 중단 시 보유중인 재고자산, 투자자산 설비, 장비

□ 영세율 적용 용역의 제공 (Sec. 108(B))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의해 아래의 용역이 수행된 경우 영세율 적용되는 것임
 - 국외사업자를 위해 국내에서 제조자공하여 다시 수출되는 재화에 대한 임가공용역
 - 기타 국외사업자나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수출업자
 - 국세선박항공운송용역
 - 국세선박 항공 운송업을 영위하는 이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 신재생에너지 공급업
 - 국내수출업자에게 용역을 제품 제조 용역등을 제공함으로써 하도급업자등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수출업자란 수출이 연간 생산품의 70%를 초과하는 기업)

라. 면세 (Sec.109)

- 필리핀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에 대해 20여가지를 정의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아래의 거래 형태가 있음



- 식품류의 소비용 또는 가공용 농수산물 및 육류 제품 판매
- 비율세(Percentage Tax) 과세대상 용역
- 의료기관, 치과, 병원등에서 제공하는 용역(전문인의 용역은 제외)
-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의 수출
- 매달 1만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임차료
- 연매출 150만 페소 이하인 업체
- 국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업자가 수입하는 연료, 상품 등

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필리핀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다른 부가세 납세자의 과세공급이나 수입 재화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활동에 사용될 때 공제되는 것임

□ 매입세액 안분 (Sec. 110)

- 일반적으로 과세거래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이나 아래의 경우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 것임
 - 면세거래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영세율 매출과 비영세율 매출의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함
 - 과세거래 또는 면세거래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 매입세액은 과세거래 비율만큼만 공제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Sec. 110)

- 감가상각자산의 1역월 총 매입가액이 p100만 이하이면 매입한 달에 전액 공제하는 것이나, p100만을 초과하는 경우 추정재용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이 때 개별 자산의 매입가액이 아닌 1역월 총 감가상각자산 매입가액임을 주의해야 하는 것임

<구매 혹은 수입가격이 P100만을 넘는 자본재 구입>

- 자본재를 5년이상 사용할 수 있을 경우 : 구입(수입)금액을 60개월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자본재를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60개월동안 매월 공제
- 자본재를 5년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경우 : 구입(수입)금액을 사용가능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자본재를 구입한 시점으로부터 사용가능기간 동안 매월 공제
- 감가상각 자산을 분할기간 만료 전에 처분한 경우 미공제한 매입세액은 매각할 달/분기에 전액 공제 하는 것임

□ 기타 공제

○ 재고매입세액 공제 (Sec. 111)

- 자진등록을 통해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날 보유중인 재고자산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재고금액의 2% 또는 실제 매입세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의제매입세액 공제 (Sec. 111)

- 고등어, 우유, 튀김유, 라면류 등을 가공 및 제조하는 업자는 원시 농작물을 구입하는 경우 그 금액의 4%를 세액공제 하는 것임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sec. 110)

- 판매가 부진하거나, 상품을 한 번에 많이 구입하여 여러 달에 나눠 판매하는 경우 또는 자본재를 한 번에 많이 구입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 이 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 다음달 혹은 분기로 이월공제, 국세납부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 초과되는 금액을 이월하는 경우, 이월한 금액은 실제 공제받고자 하는 분기의 매출세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남은 금액은 다음 분기로 재이월해야 함

바. 신고·납부(환급신청) 기한

□ 신고 및 납부 기한(sec. 112)

-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월별,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면 신고기한은 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폐업한 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 해야 함
 - 여러 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경우 본점에서 하나의 연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영세율 적용업체는 환급절차에 따라 부가세 환급 신청하거나 다른 세금을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제증명서(Tax Credit Certificate)를 신청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의 환급 신청은 매출이 일어난 분기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하며, 공제증명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폐업한 자는 폐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제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음
- 국세청은 환급신청이나 공제증명서 신청이 있는 달로부터 120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환급해야 하는 것이며, 만약 120일 이내에 국세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권을 이유로 하여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은 재화의 구입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 시 그 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임(정부기관 등과 거래를 한 사업자는 나머지 7%의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
 - 비거주자의 자산이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대여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0%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임

3 국제조세

가. 국제조세 개관

1) 필리핀 국제조세 연혁

- 필리핀 과세당국은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1월 13일에 발표된 TP 가이드라인(REVENUE REGULATIONS NO. 2-2013(Transfer Pricing Guidelines))을 제정하였으며, 동 가이드라인은 OECD TP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작성됨
- 필리핀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국내세법 제50조 하에서, 관계기업간의 통제된 거래를 재검토하고, 그들의 적정 수익과 과세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소득과 비용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부여하기 위해 제정됨



□ 이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Law and Regulations)에 관한 법률

○ Section 50 of the Philippine Tax Code

'39년 이진가격에 대한 미국세법 제482조에 영향을 받아 제정

Section 50 of the Philippine Tax Code

- Empowers the Commissioners to make allocation of income and expenses between or among controlled group of companies if he determines that a related taxpayer has not reported its true taxable income
- Taxpayers covered are organizations, trades, or business(whether incorporated or not and whether organized or not in the Philippines)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same interests

○ Revenue Memorandum Circular(RMC) No. 26-2008

BIR은 OECD 이진가격 가이드라인을 정상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선정함

Revenue Memorandum Circular No. 26-2008

- Adopted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on and Development (OECD) Transfer Pricing(TP) Guidelines as the interim TP guidelines
- Specifically states that the BIR, as a matter of policy, subscribes to the OECD TP guidelines and until the draft TP regulations are issued, any and all concerns on TP shall be resolved in accordance with said Guidelines

○ Revenue Regulations(RR) No. 2-2013

'13.1.23 이진가격의 국제적 기준(OECD)을 기반으로 하는 이진가격세제 RR NO. 2-2013을 발표

Revenue Regulations(RR) No. 2-2013

- Transfer Pricing(TP) Guidelines
- Largely based on arm's length OECD TP guidelines
- Effectivity Date : February 9, 2013
- Transitory provision : Transactions entered into prior to the effective date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and other administrative issuances prevailing at the time the controlled transactions were entered into

○ Revenue Memorandum Circular No.3-2015

'15.1.13. 필리핀 국세청은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IGA 1)체결과 RR No.2-2013 관련 TP 가이드라인의 의무 제출서류 및 위험평가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Revenue Memorandum Circular No.3-2015 계획 발표

Revenue Memorandum Circular No.3-2015

- Exchange of Information(EOI) Program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Intergovernmental Agreement Model 1(FATCA-IGA 1)
- Transfer Pricing Program

○ 조세조약

- 필리핀은 '15.12.31. 현재 40개 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과 '84.2.21.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s) 체결
- '13.6.21 필리핀, 태국 양국 개정 조세조약안에 가서명
- '16.1.1. 이전가격 관련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개정한 독일과의 조세 조약(DTA) 발효

○ 미국-필리핀 FATCA 협정 체결

- '15.9.30. 미국-필리핀 FATCA 협정(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체결

나. 이전가격세제 가이드라인 연구

1) 개요

□ Revenue Regulations(RR) No. 2-2013

- '13.1.13 필리핀 과세당국이 발표한 REVENUE REGULATIONS No. 2-2013은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동 가이드라인은 OECD TP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작성됨(SEC.2)

-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수익에 대해 적절한 배분을 위한 것임(SEC.3)
 - 필리핀 세법 제50조하에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관계기업간의 통제된 거래를 재검토하고, 그들의 적정 수익과 과세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소득과 비용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부여하기 위해 제정

□ 용어 정의

- SEC.4에서는 이전가격에 대해 주요 이슈가 되는 용어를 정리함
 - 비교대상거래(Comparable Transaction) : 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의 거래
 - 관계회사(associated enterprises) : 둘 혹은 그 이상의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회사 경영, 자본 등이 하나로 묶여있거나, 같은 사람이 여러 회사의 경영, 자본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 특수관계거래(controlled Transaction) :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관계회사간의 거래
 -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 과세당국과 납세자 서면 약정서에 의해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그 근거를 정의한 협약
 -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 : 상호합의

2) 비교가능성 분석

□ COMPARABILITY ANALYSIS(비교가능성 분석)(SEC.6)

-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제3자 거래는 유사한 거래특성 및 상황(거래조건)에 기반한 거래일 경우에만 활용됨
- 거래조건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서로 비교가능 해야하며, 상품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임

- 비교 가능성 분석 시 반드시 3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함
 - 재화, 서비스, 무형자산의 비교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재화, 서비스, 무형자산의 가치는 시장에서 그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므로(더 높은 질의 상품은 당연히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 그것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반드시 검토해야 함
 - 회사가 수행한 기능, 사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정도 등에 대한 분석 : 회사가 얼마만큼의 위험을 감수했는지, 어느 정도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에 따라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기업 활동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요소와 수익성간의 관계를 입증해야 함
 - 계약조건(거래 당사자들의 책임 및 이해관계에 대한 규정 또는 구속력 있는 합의)이나 경제적 여건(거래 이행 시점에서의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3) 정상가격 산출방법

□ IDENTIFICATION OF THE TESTED PARTY AND THE APPROPRIATE TRANSFER PRICING METHOD (분석대상기업과 최적의 이전가격 방법)(SEC.7조)

- SECTION 10에서 열거한 정상가격 결정방법 중 거래조건에 부합하고 신뢰 가능한 근거자료로 입증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며, 납세자가 이를 입증한 경우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할 책임은 과세당국에 있는 것임

□ 정상가격 산출방법(SEC.10조)

- 필리핀 정상가격 결정방법(5가지)
 -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UP)
 - 재판매가격법(RP)



- 원가가산법(CP)
- 비교가능이익율법(The comparable profit method)
- 이익분할법(The profit split method)
- 최적방법의 원칙(The most appropriate price determination method)
 - 5가지 방법 중 거래조건에7 부합하고 신뢰 가능한 근거자료로 입증되는 방법
 - 기업은 “표준시가”(the values of the standard market price range) 범위내의 가격 중 최적의 가격(“정상가격”)을 직접 선정하여야하며 거래가격이 선정한 최적의 가격과 상이하더라도 과세소득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조정하지 않음

입증책임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독립기업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납세자가 이를 입증한 경우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해야 하는 것임

가)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이란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 상품의 “단가(the unit price of products)”를 기준으로 함
- 비교가능성 결정요소 순위
 - 재화의 특성과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기능과 경제적 여건은 보완적 요소에 해당함
- 적용요건(동일유형 + 차이조정가능)
 - 시장에서 유통되는 각종 재화의 개별적 거래
 - 용역, 저작권 또는 대출계약의 각종 형태에 대한 개별적 거래
 - 기업이 동종 재화에 대하여 비특수관계자 거래를 실시하는 경우(내부 가격 우선원칙)

비교가능 회사(Comparable Companies)

BIR은 내국 비교 대상 회사를 사용할 것을 선호함

- 내국 기업 : 내국 비교 대상 회사 선정을 위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의 DATABASE에 접근할 수 있음
- 외국기업 : 내국기업 중 비교 가능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외국 비교 가능 회사를 사용할 수 있음

나) 재판매가격법(Resales Price Method)

- 재판매가격에서 재판매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영업비용과 수행 활동에 비추어 적절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매출총이익을 차감하고, 그 차감금액(재판매가격-매출총이익)에서 물품구입과 관련한 다른 원가(관세 등)를 조정한 후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순 매출 대비 매출총이익의 비율
- 비교가능성 결정요소 순위
 - 수행기능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계약조건, 재화의 특성, 경제적 여건은 보완적 요소
- 단순한 유통만을 하는 경우(일명 ‘유통대리인’ distribution agent without ownership of products)
 -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경우 판매가격(순 매출) 대비 매출총이익의 비율로 간주
- 순 매출대비 매출총이익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기업이 수행한 기능을 반영하는 비용(예 : 독점 유통 대리, 광고 또는 판촉 프로그램 수행 또는 보증 등)
 - 재판매용으로 구매한 재화의 종류, 규모, 수량 및 회전주기와 시장거래의 운영상 특성(예 : 도매, 소매 등)
 - 회계처리방법(즉, 특수관계자 거래와 제3자 거래의 매출총이익과 매출의 구성요소가 비교 가능하거나 동일한 회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함)



다)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 원가가산법이란 재판매가격에서 재판매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상품의 원가를 기준으로 매출총이익을 가산하는 방법을 말함
 - 매출총이익은 원가 대비 매출총이익의 비율 및 원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이는 기업이 수행한 업무와 시장 상황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임
- 비교가능성 결정요소 순위
 - 수행기능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계약조건, 재화의 특성, 경제적 여건은 보완적 요소
- 로열티 및 대출이자
 - 직·간접적 생산 비용이 아닌 금융활동 관련 비용(예 : 로열티 및 대출이자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음
 - 단, 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총이익을 산출하는 데 기준으로 사용된 상품의 원가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
- 단순한 구매만을 하는 경우(일명 ‘구매대리인’ purchase agent without ownership of products)
 -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경우 원가대비 매출총이익의 비율로 간주
- 순 매출대비 매출총이익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기업이 수행한 업무를 반영하는 비용(예 : 계약에 따른 생산, 신제품 연구개발, 투자 등 부가된 가치의 비중)
 - 계약 이행 의무(예 : 상품의 운송 소요시간, 품질관리 및 보관 비용, 대금지급조건)
 - 회계처리방법(특수관계자 거래 및 제3자 거래의 원가(또는 원가가격)의 요소가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회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함)

라) 이익분할법(Method of profit division)

- 이익분할법이란 다수 특수관계자들의 이익을 결합한 후 비교가능한 비특수 관계자거래의 제3자들이 이익을 활용 각각 적정이익 재배부하여 산출하는 방법임
 - 제품에 밀접하게 연관이 된 다수의 특수관계자 거래로 구성되거나 특수관계 당사자들 간에 이행된 특수관계자 거래로 구성된, 특별하고, 독특한 성격의 거래(Unique)
- 이익분할법 적용방법
 - (부담한 원가기준)자본의 투자, 원가의 공동부담에 기초하여 각 특수관계 당사자에게 이익을 배분
 - (잔여이익분할법)기본적인 이익을 배분하고 독특한 무형자산의 비율에 차지하는 비율을 잔여이익에 적용하여 분할
 - 1단계 : 독특한 무형자산을 고려하지 않은 기본적 수행 기능에 따라 기본 이익의 일부를 수령
 - 2단계 : 잔여 이익을 독특한 무형자산을 고려하여 분배하여 기본 이익과 함께 결합(최종)이익을 구성함

마) 거래순이익률방법(Transaction Net Margin Method)

- 당해 기업의 매출이익율 또는 영업이익율을 비교가능기업군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비교가능기업군을 선별할 때는 운영 형태의 유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함

필리핀 거래순이익률 관련 Q&A

- Q.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적용할 때 local taxpayer를 분석대상기업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A. 아니다
- Q. 미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적용할 수 있는가(특정한 순이익을 얻는 회계 연도에 대한 미래의 정상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A. 그렇다
- Q. 과거의 거래순이익률을 적용할 수 있는가(최근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 연도말 이전가격 조정이 가능한가)? A. 그렇다

4) 기타 이전가격 관련 사항

□ APA와 MAP에 관한 사항(SEC.11조)

- 이전가격사전승인(APA) 및 이전가격 상호합의(MAP)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미정임

최근동향

필리핀 국세청이 세수증대를 위한 REVENUE MEMORANDUM CIRCULAR 3-2015의 26개 프로그램의 하나로 APA를 포함한 이전가격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공표

□ 이전가격 문서화에 관한 사항(SEC.12조)

- 이전가격 문서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 입장에서도 그들의 이전 가격 분석에 대한 근거 서류로서,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합의시 응용하기 위해 이전가격 관련 자료*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음

* 거래 조건,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관한 서류 등을 열거하고 있음

- 이전 가격 문서의 준비기한 : 거래발생 시점에 이전 가격 문서를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이전가격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약정 또는 거래를 수행하는 때 혹은 소득신고 준비과정에서 관계회사간 거래에 대한 검토를 하는 때에 관련 자료를 문서화 하는 것임
- 관련 자료 제출 : 세무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시 제출
- 보관 의무 기간 : 이전가격 문서는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함
- 제출기한 : 제출기한은 별도로 법에 정해진 바는 없으나, BIR이 세무조사 중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언어 : 내국세법 제234조에 따르면, 서류와 기록은 필리핀어, 영어, 스페인어로 기록 보관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해야 함

* 단, 필리핀의 공식 비즈니스 언어는 영어임에 주의

필리핀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Q&A

- Q. 세무조정 신고시 이전가격 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A. 아니다
- Q.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이전가격 문서화가 면제되지 않는지?
A. 필리핀 세법상 문서 면제 대상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이전 가격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하는 모든 기업은 이전 가격을 문서화 해야 하는 것임
- Q. 필리핀 국세청은 개별기업간 비교가능성과 국가간/지역간 비교가능성 중 무엇을 더 우선시 하는지?
A. 필리핀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개별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우선시 되는 것으로, 국가간 또는 지역간 비교가능성은 개별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것임

□ 이전가격 세무조사

- BIR은 매년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하며, 다양한 조사선정기준(과거 세금 납부 추이 등) 이나 세무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선정 하며, 납세자에 따라 매년 조사를 받을 수도 전혀 받지 않을 수도 있음
- BIR은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15.8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가격 조사 및 평가에 대하여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필리핀 이전가격 조사에 관련 Q&A

- Q. 이전가격 T/F팀에서 이전 가격 조사를 실시하는지?
A.아니다(16.2월 기준)
- Q. 최근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 동향은?
A. 15.8월 BIR은 이전가격조사 전담 T/F팀을 발족하고, 다국적 기업 및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이전 가격세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표(15.8월 BIR 공식 보도자료)하는 등,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추세



□ 이전가격 불이익(Penalty)

- 이전가격 경정시 패널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소득 패널티 규정을 따르게 됨(외국기업도 동일)

Penalty 규정

- 이전가격에 대한 경정시 과소신고한 세액의 25%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며,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의 경우 50% 가산됨
- 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가 부담됨
- BIR 요청이 있으나 이전가격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50,000페소 까지 패널티가 부과됨

□ 필리핀 이전가격세제 참고사항

- Commissionaire 계약인정여부
 - 과거 필리핀 과세당국은 Commissionaire 약정을 인정하는 결정을 한 적이 있으나, 2013년 비공식적으로는 향후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취한 바 있음
- Business Restructuring에 관한 사항
 - 과세당국이 사업구조개편에 의한 중대한 수익구조의 변화를 주의깊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음
 - 구조 개편 후로 수익성의 악화가 발생한 경우 사업구조 개편 전/후와 관련한 기능 분석, 리스크 분석을 문서화할 것이 권장됨
- Cost Contribution/Cost Sharing 인정여부
 - 원가분담약정 인정함
 - 그룹 내 회사에 대한 원가배분은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도록 실제 얻은 효익 또는 기대되는 효익에 상응해야 함
- Management Fee에 관한 사항
 - 경영자문수수료의 공제는 인정함

-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이 문서화되어야 하며, 문서화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명시된 바 없지만 일반적으로 경영자문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자료가 이에 해당함

○ 이전가격조정 소급 가능여부

- 이전가격 조정은 기중 및 과세연도 종료 후 소급조정 모두 가능함

□ 필리핀 이전가격 규정 요약

이전가격 규정	인정 여부
APA가능 여부	N
해외비교가능회사 인정 여부	Y
Cost contribution/ Cost sharing 계약가능 여부	Y
경영자문수수료 손금인정 여부	Y
TPD 미제출시 벌금 부과 여부	Y
TPD 제출시 penalty 감면 여부	Y
Penalty가 납부세액의 일정비율로 계산되는지 여부	N
Penalty가 TP 조정액의 일정비율로 계산되는지 여부	Y
TP 규정이 국내관계사 거래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Y
관계사간 거래내역을 세무조정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Y
TPD 작성이 필수적인지 여부	Y
거래시점에서 TPD가 구비되어야 하는지 여부	Y
세무신고시 TPD가 필요한지 여부	N
세무조사시 TPD를 요구하는지 여부	Y
TPD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여부	Y
이익분할방법 인정 여부	Y
OECD Guidelines와 TP방법이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Y
소급하여 자발적인 TP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Y
비교가능회사가 현지법인으로 선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N



다. 필리핀 조세 쟁송 사례

1) 이전가격 관련 조세 쟁송 사례

- 필리핀에 대한 조세 쟁송 연구한 바,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제정 이전에도 필리핀 국내세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이전가격 조정하여 법인세 등 과세한 바 있었음
- 조세쟁송에 있어서의 잇따른 국가 패소, 뱀스 프로젝트와 같은 국제조세 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로 요인을 이유로, 필리핀 국세청은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APA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이전가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임

□ 필리핀 - 외국기업 간의 이전가격 판례

사례 1 : CIR VS Cyanamid Philippines, Inc (CA, '99.2.4.)

필리핀 과세당국은 Cyanamid사의 비교가능대상 업체로 Pfizer를 선정하여 비교 가능 제3자가격법을 사용하여 이전가격 조정하여 법인세 부과 결정함

<국세청 주장>

- Cyanamid사의 Aurofac과 Pfizer의 Vigofac은 비슷한 항생제임
- Cyanamid사의 Minocycline과 Pfizer의 Doxycycline은 박테리아 치료제임

<법원 판결>

- Aurofac은 동물 치료, Vigofac는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
 - Doxycycline은 제조과정이 3단계로 쉽게 원재료를 이용할 수 있으나, Minocycline는 제조과정이 5단계임
- 상소법원은 과세당국이 적용한 비교대상 업체의 비교가능성이 낮다고 판결함

사례 2 : CIR VS Avon Products Mfg., Inc(CTA, '05.1.20.)

필리핀 과세당국은 Avon사의 국외 수출의 판매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의 차이분에 대해 이전가격 조정하여 법인세 결정하였으나, 법원은 Avon사의 낮은 수출가격은 판매 시장의 차이에 따른 회사의 정책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함

사례 3 : CIR VS Filinvest Development Corporation(G.R.Nos.163653, '11.7.19.)

Filinvest사는 '96년 26억페소, '97년 34억페소를 특수관계법인 FAI, FLI, Davao Sugar Central Cop, Filinvest capital 사에 무상 대여함

필리핀 과세당국은 Filinvest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지급하고 차입한 위 금액을 무이자로 특수관계자에 대출한 행위에 대해 국내세법 450조에 따라 '이론적 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세 부과결정함

대법원은 국세청은 위 이론적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고 위 금액의 출처가 은행이라는 증거가 없어 민법 1956조에 따라 법인세 취소처분 하도록 판결함

□ 필리핀 과세당국 - 국내기업 간의 이전가격 판례

Court of Tax Appeals(CTA) Case No. 8500('15.8.20.) 사례 분석

○○은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법인으로 필리핀 현지자회사를 두고 있음

<사실 관계>

○○○의 필리핀 현지법인은 '08 귀속 법인세 신고서를 '09.4.2. 제출하고 원천징수 법인세를 납부함

'09.6.5. 필리핀 국세청 '08 과세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통지

'11.11.8. 필리핀 국세청 PAN 발송에 따른 비공식 회의 통지

'11.12.19. ○○○의 필리핀 현지법인 PAN 항소 제출

과세당국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 통지 및 FAN 통지

'12.1.27. ○○○의 필리핀 현지법인 FAN 항소

<처분청 의견>

1. '08 사업연도 비용으로 공제된 변호사 수수료 875,000페소는 '07년 발생분으로 당해 비용으로 공제 불가능함

2. 필리핀 현지법인은 비거주 외국법인 ○○○에 배당을 지급하며 한국-필리핀 조세조약에 근거하여(법인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한 법인 경우 원천징수 세율 10%) 원천징수세율 10%를 적용함

처분청은 Revenue Memorandum Order 1-2000에 따라 국세청 기본통칙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율 35%이 타당하다고 통보함

<쟁점 사항>

1. 필리핀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2. 필리핀 현지법인이 모법인 ○○○에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해 한국-필리핀 조세조약에 근거하여 10% 원천징수(필리핀 법인의 자본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 경우, 10% 원천징수세율 적용) 세율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3. '08 사업연도 변호사 비용의 불공제 결정이 타당한지

<판결 내용 - 일부 승소>

- 쟁점사항 2) 문서통지번호 No. WF-LA12660-08-11-0979의 '08 귀속 법인세 1,682,718.69페소 부과처분을 취소함
- 쟁점사항 3) 문서통지번호 No. IT-LA12660-08-12-0482의 '08 귀속 법인세 306,250페소와 가산세 25%의 합계 382,812.50페소 납부하도록 판결함

라. 필리핀 최근 동향**1) 필리핀 조세조약 개정 추진**

- 세계적으로 국제조세 환경은 2013년 2월 OECD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를 개시한 것으로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이전 가격 세제 및 조세 조약의 제정 및 개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3년 필리핀은 OECD모델조약의 최신동향을 적극 반영하여 이전가격 세제 RR NO. 2-2013을 발표하고 태국과 독일 양 국과 조세 조약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음
- 필리핀의 이러한 조세정책의 변화는 배당, 이자, 사용료 등 투자소득의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함으로써 선진국 자본의 투자를 자극하고, 거주자 및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명확화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됨

- 필리핀 정부가 14년부터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논의를 위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필리핀의 국세청장 Kim S, Jacinto-Henares가 OECD의 BEPS 프로그램 작업반의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주요 동향을 살펴볼 때도 필리핀 이전가격에 대한 감시체계가 분명 강화될 것임

□ 태국과 조세조약 개정안(요약)

- '13.6.21 필리핀, 태국 양국은 개정 조세조약안에 가서명하였음. '82년 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필리핀 정부는 이후 변화한 양국 경제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 협상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주요개정사항

2조. 대상조세

- 주식 거래에 대한 조세 추가

4조. 거주자

- 법인의 설립 장소, 실질적인 경영 장소로 법인의 거주자 여부 판정

5조. 고정사업장

- 건축장소, 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 또는 이들과 관련된 감독 활동은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3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봄
- service PE : 기업이 고용인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고문 용역을 포함한 용역제공은 그러한 성질의 활동이 일방체약국내에서 12개월 중에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단일 또는 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봄.

7조. 사업소득

-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

8조. 항공 및 운수소득

- 타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음. 동 일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총수입금액의 1.5%임.



10조. 배당

-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음.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못함
-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 부과
-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25% 부과
- 10% 지점세 부과

11조. 이자

-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음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못함.
- 공모 발행된 공채, 사채 또는 이와 유사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0% 부과
- 기타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5% 부과

15조. 사용료

- 15% 원천징수세율 적용

□ 독일과 조세협약 개정 내용

(Germany-Philippines revised income tax treaty enters into force)

- 2015.12.18. 독일과 필리핀의 개정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조세 조약이 발효되었음. 이는 1983년 조세조약을 대체하며 2016.1.1부터 효력이 있음

주요개정사항

4조. 거주자의 정의 추가

- 개정조약은 조합(Partnership)의 실질적인 사업의 장소가 독일에 있다면, 조합(Partnership)을 독일의 거주자로 간주함

5조. 고정사업장의 정의 추가

- 개정조약은 고정사업장 개념에 service PE를 추가하였음
- 기업이 고용인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고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제공은 그러한 성질의 활동이 일방체약국내에서 12개월중에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단일 또는 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봄

- 개정조약은 아래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삭제하였음
-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그가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고 상시 행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그 기업을 대표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정구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일방체약국에서 상시 보유하는 경우, 상기 인은 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봄
- 일방체약국의 보험기업이 타방국에서 독립된 자격을 가진 대리인이 아닌 고용인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타방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며 타방국에 소재하는 피보험물을 보증한다면, 동 보험기업은 타방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봄

6조. 부동산 소득의 정의

- 부동산 정의를 확대하였음.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을 포함함

8조. 해운 및 항공운수

- 선박의 거주성에 대한 정의 추가함. 선박의 주요기항 혹은 회사가 일방체약국에 있다면, 선박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선박이 일방체약국에 위치하는 것으로 간주함

9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대응 조정

- OECD 모델 조약에 따른 이전 가격 과세로 인한 이중 과세 조정을 위한 대응 조정함

10,11,12조 이자,배당, 사용료 소득 원천징수

- 실질적 소유자(조합 제외)가 직접적으로 70% 초과하여 보유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된 배당의 원천징수 세율은 특혜세율로 5% 적용 (기존 10%, 15%)
- 이자 및 사용료 원천징수세율 10% 적용
- 지점세 세율 10% (독일은 지점세 제도가 없음)

13조 양도소득

- 개정세법 하에 부동산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법인의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4조 이중과세 조정 제거

- 필리핀의 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독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독일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필리핀의 조세로부터 공제됨

27조 정보 교환

- OECD 모델 조약에 따른 양 국가간의 정보 교환 정의

28조 소득 원천별 절차상 법

- 독일의 조세 환급 신청에 대한 청구기한(Statute of limitations)은 일반적으로 3년임에 반해, 개정된 조세협약 28조의 환급기한은 납부일로부터 2년임

29조 일반적인 조세회피방지법안(GAAR)과 조세조약 남용 금지(anti-treaty shopping rules)

- 양 계약국 모두 조세회피방지법안과 조세조약 남용금지안을 따르며, 그 세부절차는 상호합의에 의해 규정됨

2) 필리핀 - 미국 FACTA 협정 체결

- 미국 - 필리핀 양국은 FATCA를 이행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2015.9.30 FATCA 협정(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체결하였음. 2016.4.1.부터 금융회사는 미국 납세자의 2014, 2015년도의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 및 보고할 예정이며, 2016.9.30. 국세청은 동 정보를 미국과 교환 예정임

4 기타의 세금



□ 인지세

- 모든 채무 증서의 최초 발행시 발행가액의 200페소 당 1페소 과세
- 주식 증서의 액면가액이나 액면가액이 없는 경우 대가에 대하여
 - 최초 발행시 200페소 당 1페소 과세
 - 이전시 200페소 당 0.75페소 과세
- 기타 특별한 거래나 문서에 대하여 해당 세금 과세

□ 개별소비세(Excise Taxes)

- 주류, 담배, 석유제품, 기타 화장품이나 향수, 요트 및 자동차에 대해 적용
- 광산물도 석탄, 코크스 등은 채굴 톤당 10페소, 그 외 비철광물 연간 총 생산량의 실제 시장가격에 대해 2% 과세. 금, 크롬은 2%, 구리 및 기타 금속광물은 2% 이하 등 적용
- 자동차는 판매가격에 따라 2%~60%로 차등 적용

□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s Tax)

- 관리감독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얻은 총 이익을 통화로 환산한 총 가치에 대하여 32%의 세금이 부과됨.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이나 편익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가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사업의 성질상 필요에 따라 지급한 경우에, 부가급여에 대한 조세는 부과되지 않음.

□ 퍼센트 세(정율세)

- 필리핀 국내에서 영업하는 운송인 및 국제운송인, 가스수도 회사, TV 방송 회사, 은행, 은행이 아닌 금융중개회사, 금융회사와 같은 회사는 1~30%의 세율에 의한 퍼센트 세를 부담하며, 퍼센트 세는 보통 필리핀에서 발행한 전체 영수증 금액이나 총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고,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매년 총 판매액 또는 영수액이 1,919,500페소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 3%의 퍼센트 세를 부담함

□ 상속세

- 사망을 이유로 하는 재산이전에 대하여 순재산가치를 기초로 하여 과세되며, 피상속인 사망 후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세율은 5%에서 20% 사이 적용)

□ 증여세

- 역년 중에 이루어진 순증여액에 의거 과세되는 것으로 연도가 다른 증여는 통산되지 않으며, 증여세율은 2%에서 15%사이에서 적용되고 증여자(Donor)가 납세 의무자가 되며 증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5 세법개정안



□ 필리핀 세법 개정안 추진 배경

- 필리핀 정부는 종합조세개혁 법안과 조세인센티브 합리화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음
 - 종합조세개혁 법안은 소득세 및 법인세율 완화, 부가가치세율 증가가 핵심 내용임
 - 조세인센티브 합리화 법안은 외국인 투자유치 장려책으로 기업에 제공되는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단일화가 핵심 내용임
-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ASEAN 통합 준비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필리핀의 소득세 및 법인세는 ASEAN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다른 회원국과 동등한 조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투자 및 자본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필리핀 일각에서는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하나 투자 유치 확대에 따른 경기 활성화로 대규모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는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의견임
 - 특히 개인소득세율 인하는 해외 우수인력 유치, 필리핀 근로자의 해외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세에 비해 개인 소득세율은 1997년 이후 변화가 없다는 점, 과세의 기본 원칙은 납세자의 지급 능력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 등이 현행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함
- 조세 인센티브 합리화 법안과 관리 및 투명화 법안은 인센티브 목적 규정 및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함
- 현재 50개가 넘는 조세 인센티브 관련 법이 실행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필리핀 정부는 인센티브의 취지가 기업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처음 몇 년 동안 겪게 되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보고 인센티브 적용기간 단축을 추진 중임

□ 우리기업 필리핀 진출시 시사점

- 필리핀은 2013년부터 대대적인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16.5월 대통령 두테르테 당선을 기점으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의 당선 공약이 25,000페소 이상 고소득자에게 세금 추과 부과 및 25,000페소 미만 소득자는 세금 면제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며,
 - '16.5월 도밍게즈 재무장관은 납세자의 부담을 낮추고 사회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공론화하였음
 - 도밍게즈 재무장관이 필리핀의 법인 소득세율이 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율을 25%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개인소득세 또한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우리 기업이 필리핀 진출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조세인센티브 제도와 그에 따른 세제 혜택으로서, 우리 기업은 조세 인센티브 합리화 법안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합리화 개정 법안에 따르면 인센티브는 기업이 등록한 투자유치기관에 상관없이 기업의 활동 분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결정됨
 - 두 법안은 기업을 수출·전략, 수출·국내 기업으로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수출기업은 전략 및 국내 기업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한국 기업은 인센티브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어떤 인센티브가 가장 이익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업의 예상 수입 및 지출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함
 - 개정 법안처럼 법인세 면제 인센티브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더 이상 최고의 선택으로 여길 수 없으며,
 - 기업의 지출이 주로 매출원가일 경우 총수익(총매출-직접비)의 5% 납부가 유리하고, 기업이 매출원가 외에 다른 비용에 대한 지출이 많을 경우 법인세 15% 납부 인센티브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지출 형태를 확인하고 인센티브 방법을 선택해야 함
-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안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6년 6월말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논의가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세율 조정과 조세 인센티브 합리화·관리 효율화 방안의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도입 시기와는 별도로 우리 진출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일부 법안의 경우 단기간 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충분한 상황 분석에 따른 비즈니스 전략 수정 등의 사전 준비 역시 중요함

□ 세법개정안 내용 요약

<법인세 인하 추진 법안>

- 상원법안 2163호와 하원법안 4996호는 필리핀 세법 27항과 28항 개정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담고 있음
 -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Domestic Corp.), 필리핀 내 외국법인(Resident Foreign Corp.), 필리핀 외 외국법인(Non-resident Foreign Corp.)는 30%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 두 법안은 현행 30%의 법인세율을 25%까지 낮추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현재 세입위원회에 계류 중

현 재	주요 내용	
	상원법안2163호 (2014년 3월 5일 발의)	하원법안4996호 (2014년 9월 11일 발의)
법인세율 30%	3년 동안 3단계 인하 - 2015년 1월 1일 : 29% - 2016년 1월 1일 : 27% - 2017년 1월 1일 : 25%	3년 동안 2단계 인하 - 2015년 1월 1일 : 28% - 2017년 1월 1일 : 25%

<자료원 : Senate Bill No. 2163, House Bill No. 4996>

<개인소득세 인하 추진 법안>

- 필리핀 개인소득세는 내·외국인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소득 수준별 개인 소득세율(현재 16.6월 기준)>

소득 수준	개인 소득세율
1만 페소 이하	5%
3만 페소 이상 7만 페소 이하	500페소 + 1만 페소 초과액에 대한 10%
7만 페소 이상 14만 페소 이하	2,500페소 + 3만 페소 초과액에 대한 15%
14만 페소 이상 25만 페소 이하	8,500페소 + 7만 페소 초과액에 대한 20%
25만 페소 이상 50만 페소 이하	22,500페소 + 14만 페소 초과액에 대한 25%
50만 페소 이상	50,000페소 + 25만 페소 초과액에 대한 30%

<자료원 : 필리핀 국세청(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



- 상원법안 716호, 상원법안 1942호, 상원법안 2149호는 필리핀 세법 24항 개정으로 개인소득세에 대한 과세대상 수익액과 소득세율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세입위원회에 계류 중임

현 재	주요 내용	
	상원법안 716호 (2013년 7월 10일 발의)	상원법안 1942호 (2013년 11월 21일 발의)
5~32% - 1만 페소 이하 : 5% - 50만 페소 이상 : 32%	5~32% - 2만 페소 미만 : 5% - 100만 페소 이상 : 32%	15~35% - 6만 페소 미만 : 면제 - 6만 페소 이상 : 15% - 1200만 페소 이상 : 35%
	상원법안 2149호 (2014년 2월 27일 발의)	
	3년 동안 3단계 인하 15~32%, 13~28%, 10~20% · 2만~7만 페소 : 15%, 13%, 10% · 100만 페소 이상 : 32%, 28%, 20%	

<자료원 : Senate Bill No. 716, Senate Bill No. 1942, Senate Bill No. 2149>

<조세 인센티브 합리화 법안>

- 상원법안 2048호와 상원법안 987호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세 인센티브 제공 및 집행제도의 합리화(단일화)를 추진 중이나 현재 계류 중임
- 상원법안 987호는 투자유치기관으로 별도 업무를 수행하는 BOI와 PEZA를 한 기관으로 통합한 PIPA(Philippine Investment Promotion Administration) 출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현 재	주요 내용	
	상원법안 2048호 (2013년 12월 18일 발의)	상원법안 987호 (2013년 7월 22일 발의)
BOI, PEZA 등 개별 업무 수행	유 지	PIPA 설립으로 통합 업무 수행

<자료원 : Senate Bill No. 2048, Senate Bill No. 987>

- 두 법안에는 투자유치기관 등록 기업에 통일된 조세 인센티브 적용이 명시됨

현 재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면제(4~6년) ○ PEZ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면제(4~6년) - 이후 총수익(총매출-직접비)의 5%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업(다음 중 한 가지 인센티브 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세 면제(5년) 2) 15% 법인세 납부 3) 모든 국세 및 지방세를 대신 총수익(총매출-직접비)의 5% 납부(부가가치세, 부동산 재산세 제외) ○ 전략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1, 2번 중 한 가지 선택
	상원법안 98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업(다음 중 한 가지 선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5% 법인세 납부 2) 모든 국세 및 지방세를 대신 총수익(총매출-직접비)의 5% 납부(부가가치세, 부동산 재산세 제외) ○ 국내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1번만 선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O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개시 후 10년간 손실 발생 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순이익의 25% 까지 이월 공제 인정 - 소득세 산정 시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진 적용 ○ PEZ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비에 대한 회계상 비용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법안 204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개시 후 5년간 손실 발생 시 향후 5년까지 이월공제 인정 - 소득세 산정 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진 적용 - 교육훈련비,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회계상 비용 인정 - 교육훈련비 200%, 연구개발비용 100% 비용 인정
	상원법안 98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개시 후 5년간 손실 발생 시 향후 10년까지 이월공제 인정 - 소득세 산정 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이 등록 기업에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거래는 수출로 간주해 부가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법안 204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인이 등록 기업에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을 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품목으로 제한해 부가세 면제 혜택 부여



현 재	주요 내용
- 원부자재, 자본재, 수입관세 면제 - 항만사용료, 수출세 면제	상원법안 2048호
	○ 수출기업 - 원부자재, 자본재 수입관세 및 부가세 면제 ○ 전략기업 - 원부자재, 자본재 수입관세 면제
	상원법안 987호
	- 원부자재, 자본재 수입관세 면제

○ 이 법안에는 인센티브 혜택기간의 변경이 명시됨.

현 재	주요 내용	
	상원법안 2048호	상원법안 987호
○ BOI - 법인세 면제(4~6년) ○ PEZA - 법인세 면제(4~6년) - 이후 총수익(총매출-직접비)의 5% 납부	1) 법인세 면제(5년) 2) 15% 법인세 납부(25년) 3) 총수익 5% 납부(25년)	1) 15% 법인세 납부(20년) 2) 총수익 5% 납부(20년) · 불가항력으로 경영이 어려우면 PIPA 승인 후 연장 가능

<자료원 : Senate Bill No. 2048, Senate Bill No. 987>

○ 두 법안에는 법안 발효 시 현재 기업들이 받는 인센티브 적용 기간 및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김

상원법안 2048호	상원법안 987호
현재 인센티브 종료 기간까지 유지 가능 혹은 법안 발효 후 4년까지 유지 가능	현재 받는 조세인센티브와 새 조세인센티브 중 선택 가능

<자료원 : Senate Bill No. 2048, Senate Bill No. 987>

Ⅲ. 국세행정 및 절차

- 1. 개요 / 88
- 2. 세금신고 및 납부 / 91
- 3.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 95
- 4. 세무조사 프로그램 / 105
- 5. 조세 불복 / 108



1 개요

가. 필리핀 조세

□ 필리핀 조세 관련 체계

- 필리핀에서 과세되는 세금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됨
 - 사유세(Personal Tax) :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징수하는 거주세
 - 재산세(Property Tax) : 일정한 수준별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한 세금
 - 직접세(Direct Tax) : 세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즉시 그 혜택이 돌아오는 것 (예. 소득세, 주거세, 기부세등)
 - 간접세(Indirect Tax) : 세금이 직접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국가에서 사용되는 것(예. 관세, 부가가치세)
- 주요 내국세목으로는 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사업 특권세, 소비세, 비율세, 인지세 등이 있으며,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고, 지방세로서 부동산세, 사업면허세 등이 있으며, 기타 조세로는 사회보장세, 고정자산세 등이 있음

□ 국세

- 필리핀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목은,
 -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인지세(Dacumentary Stamp Tax), 증여세(Donor's Tax), 상속세(Estate Tax), 소득세(Income Tax), 비율세(Percentage Tax),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개별소비세(Excise Tax) 등이 대표적임



- 필리핀은 하나의 세법에서 모든 세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Revenue Regulation(RR), Revenue Memorandum Order(RMO), Revenue Memorandum Circular(RMC) 등의 발의 및 개정을 통해 세법을 보완하고 구체화함
- 현행 세법은 1997년 Tax Reform Act of 1997을 제정하였고, 이후 RA(Republic Act) No. 9337, RA No. 9504 등으로 개정

세무관련 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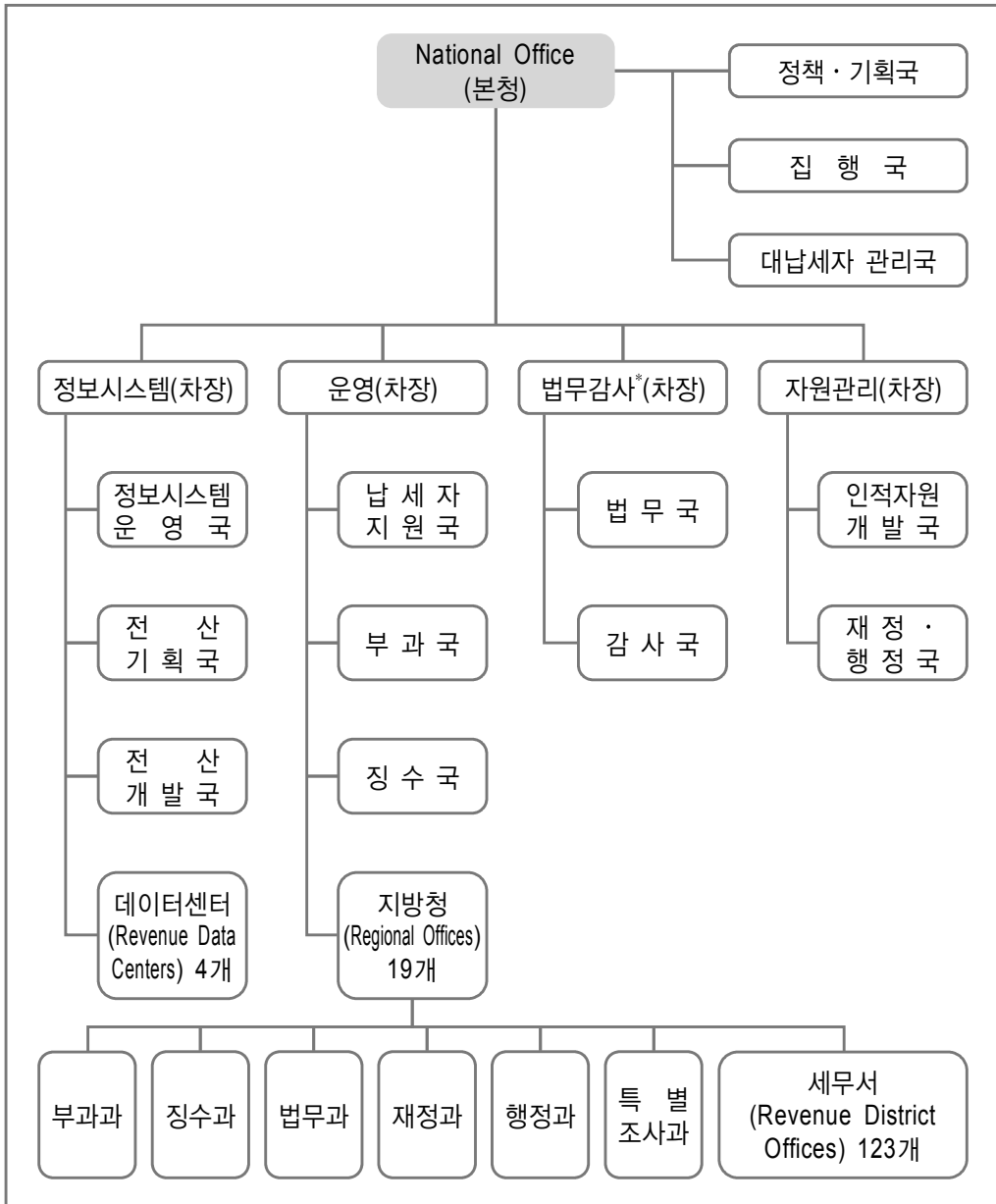
- The Tax Reform Act of 1997(Republic Act No.8424)
- Amendments to the Tax Reform Act of 1997 : RA9337('05.11.1. 발효), RA9504('08.07.06. 발효)

- 우리나라와 같이 세목별 세법-시행령-시행규칙의 구성이 아닌, 특정한 내용에 대해 RR(재무부가 세법 시행을 위해 지정, 예. 2013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RMO(국세청장 고시, 예. 2013년 공식 영수증 개편) 등을 개별 발의 및 개정
 - Revenue Regulation(RR) 재무부가 세법 시행을 위해 지정
 - Revenue Memorandum Order(RMO) 국세청장 고시
 - Revenue Memorandum Circular(RMC) 조세법령 및 고시내용을 해석
 - Revenue Memorandum Ruling(RMR)
 -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국세청의 판단, 견해, 해석
 - BIR Rulings 납세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나. 국세청 조직

- 필리핀 국세청(Bureau of Internal Revenue, “BIR”)은 4명의 차장이 각각 전산정보시스템 그룹, 운영 그룹, 법무·감사 그룹, 자원관리 그룹의 업무 영역을 담당하며, 국세청장 직속의 3개국(정책·기획국, 집행국, 대납세자 관리국)이 있음 (지방세는 지방정부에서 담당)

- 필리핀 국세청은 운영 그룹 산하에 19개 지방청과 132개의 세무서를 두고 있으며, IT 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본청 및 마닐라, 세부 등의 주요 도시에 4개의 데이터센터를 두고 국세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운영함



* 국제조세 업무는 법무국 내 국제조사과(International Tax Affairs Division)에서 수행



2 세금신고 및 납부

가. 신고 및 납부기한

□ 법인

-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외국법인
 - 과세연도의 각 분기종료일로부터 60일내에 예정신고하며, 확정신고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째의 15일까지 하는 것임
- 비거주자인 법인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소득세 신고의무 없음
- 지방 주식시장을 통해 거래되지 않는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정신고해야 하며, 모든 거래를 합산한 최종 신고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째의 15일까지 하는 것임

□ 개인

- 일반적인 경우 필리핀에서 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의 경우 익년 4월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 지방 주식시장을 통해 거래되지 않는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정신고 해야 하며, 모든 거래를 합산한 최종 신고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째의 15일까지 하는 것임(법인과 동일)
-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개인은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함

□ 부과제척기간

- 신고기한(신고기한보다 신고일이 늦는 경우 신고일)으로부터 3년이며, 허위신고 또는 무신고한 경우에는 10년까지 연장됨

나. 세목별 신고서식

TAX TYPE	BIR FORM NUMBER	TAX FORM DESCRIPTION
INCOME TAXES	1700	개인 소득에 대한 연간 신고서 (비사업자, 비전문 수입 포함)
	1701	자영업자, 개인, 부동산 및 신탁에 대한 연간 신고서 (사업 소득 및 근로소득 포함)
	1701Q	자영업자, 개인, 부동산 및 신탁에 대한 분기별 신고서 (사업 소득 및 근로소득 포함)
	1702	법인 소득에 대한 연간 신고서 (법인, 파트너십 그리고 비영리법인)
	1702Q	법인 및 파트너십에 대한 반기별 보고서
	1704	부적절한 누적 순이익에 대한 법인 신고서
	1706	고정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자본소득 신고서(과세, 비과세 포함)
	1707	국내 주식시장을 통해 거래되지 않은 주식 양도에 대한 자본소득세
	1707-A	국내 주식시장을 통해 거래되지 않은 주식 양도에 대한 연간 자본소득세
WITHHOLDING TAXES	1600	부가가치세 월별 신고서 (RAs 1051, 7649, 8241, 8424, 9337)
	1600-WP	경마 관련 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서
	1600-C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서
	1601-E	월별 공제가능한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서 (고정자산 양도 거래 제외함)



TAX TYPE	BIR FORM NUMBER	TAX FORM DESCRIPTION
WITHHOLDING TAXES	1601-F	월별 최종 원천징수 신고서
	1602	월별 최종 예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서
	1603	분기별 복리후생비 관련 소득세 신고서
	1604-CF	연간 급여 및 원천징수 소득세 관련 최종 신고서
	1704-E	연간 공제가능한 소득세 신고서/원천징수 면제되는 소득세 납부
	1606	고정자산 외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원천징수 신고서
VALUE-ADDED TAX	2550M	월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2550Q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서
PERCENTAGE TAXES	2551M	월별 비율세 신고서
	2551Q	분기별 비율세 신고서
	2552	증권거래소의 주식 양도 거래 및 공모 발행에 대한 비율세 신고서
	2553	특별법에 따른 비율세 신고서
TRANSFER TAXES	1800	증여세 신고서
	1801	상속세 신고서
EXCISE TAXES	2200-A	주류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서
	2200-AN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서
	2200-M	광물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서
	2200-P	석유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서
	2200-T	담배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서
OTHER TAXES	2000	인지세 신고서
	2000-OT	인지세 신고서(단발성 거래)

다. 전자세무신고시스템(eFPS)

□ 전자세무신고 의무화에 따른 국세청 세금신고 방법

- 온라인으로 국세청의 eFPS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
- eBIR 신청서 작성 및 신고 : 오프라인으로 작성 후 eBIRForms 시스템으로 접수됨

□ eFPS 작성 시 주의사항

- 소득세신고 시 국세청의 지정은행 온라인 납부가 정상처리 된 후 컨펌창이 뜨면 절차 완료됨
- 기간 내에 소득세신고 및 납세를 하지 않을 경우 [기존 부과된 세금 + 25% 이자]에 대해 벌금 부과
- 기간 내에 신고완료 했으나 차후 재검토시 잘못된 정보 발견 시 미지급 금액기준 연 20% 이자 부과됨
- 신고 누락 시 : 1회당 1000페소

□ 시사점 및 유의사항

- 온라인 세무신고로 신고서 제출 및 납부가 용이하며 결과 즉시확인 가능함
- 신고 내역 최종 제출 전 수정 가능 및 모든 자료의 암호화로 안전함
- 인터넷 연결 및 웹사이트다운 등의 기술적인 에러 발생 시 등록 재확인 등을 할 필요가 있으며 당 웹사이트의 기술적인 에러로 시간 내 등록을 못한 경우라도 벌금에 예외가 없으나 이런 경우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구제 가능함
- 기간 내에 등록 완료하여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3 신고검증 및 세무조사

- 필리핀은 납세자가 현행 세법과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계산, 납부 및 신고 하여야 하는 자진 신고납부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국세청은 이러한 자진 신고납부가 납세의무를 다한 것인지 세무조사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또는 검증의 결과 세금추징 결정을 할 수 있음
- 필리핀은 조사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 국세청 세무조사 유형 및 절차를 규정하는 세무조사 국세청장 고시 RMO NO,19-2015를 제정 하였음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2012년 국세청장 고시 RMO No. 19-2012 시행하고, 2015년RMO No. 19-2012 개정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가. 절차 및 세무조사 시한

1) 신고 검증 및 세무조사 절차

- 필리핀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절차 등에 대해 Revenue Audit Memorandum Order(RAMO) No. 1-99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절차 단계별로 내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음

□ 감사 통지(Audit Notice)

-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진신고한 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 및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때 LOA (Letter of Authority)를 발행해야 함

□ 공식적인 회의(Informal Conference)

- 국세청은 감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오류 혐의사항에 대해 납세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하며, 납세자는 회의 참석 안내문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응답해야 함(15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당 자료는 조사팀으로 이송됨)

□ 조사결과 예고 통지(Preliminary Assessment Notice, PAN)

- 국세청은 납세자의 해명 이후에도 신고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급 우편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납세자는 15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음

예고 통지 제외 사유

아래의 경우 조사결과 예고 통지(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음

- 납세자에게 환급이 나간 경우
- 원천징수된 금액과 원천징수한 기관에서 실제 송금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 소비세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한 세금이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경우
- 면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수입한 물품(기계류, 자본설비, 운송수당)이 세금이 면제되는 자에게 판매되거나 이전된 경우

□ 조사결과 최종 통지(Final Assessment Notice, FAN)

- 납세자의 충분한 해명 이후에도 납세자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은 최종 결과 통지 및 고지서를 발부하게 됨. 이 때, 조사 결과와 그에 관한 사실관계, 법령, 판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고, 우편 또는 교부송달되어야 함



2) 세무조사 기한

-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신고서를 실제 제출한 날이나 법에서 명시한 제출 기한 중 늦은 날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은 3년 기간 산정시 제외됨
 - 만약 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하거나 동산압류나 추가 과세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60일 이후
 - 만약 납세자가 위원회에 의해 면제된 재조사를 요구했을 때
 - 만약 납세자가 그 주소에 거주하지 않을 때
 - 납세자에게 동산압류 영장이 발부된 시점에 동산이 제 위치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만약 위원회와 납세자가 제한 기간을 포기하도록 동의했을 때

나. 주요 규정

- 국세청은 세무조사 통지서 발행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조사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음(이 때 납세자에게 LOA를 다시 발행할 의무가 있음)
- 최근 3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최근 2년 세무조사를 연속으로 받은 사업자가 그 다음해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비용 과다공제가 아닌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중복 조사는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3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허용됨
 -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진행 중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외 제외한 세목에 대해서 별도로 세무통지서 발행해야함)
 - 매출 1,000,000페소 혹은 자산 규모 3,000,000페소 사업자의 폐업 경우
 - 상속세 납부 결손자

- 조사팀은 통합조사시 아래와 같은 자료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게 됨
 -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신고서에 관한 부속서류
 -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서와 관련 부속서류
 - 분기별 신고서와 은행 납부 영수증
 - 매달 또는 매년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증빙서류
 - 부가세 신고서 및 그에 대한 증빙 서류
 - 미납입자본에 대한 증권용 수입인지세 납부 내역
 - 회계 기록 내역
 - 시산표
 - 임대계약서 사본
 - 증권 거래 위원회에 제출된 정보

- 납세자는 조사를 위해 아래의 자료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함
 - 일반적인 월장
 - 구입 및 매출 내역
 - 자회사의 구입 및 매출 내역
 - 판매 송장 및 다른 영수증
 - 수표 및 분개 전표
 - 다른 관련된 자료들

다. 통합세무조사 (RMO NO.19-2015)

-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특정과세기간 또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특정 세목에 대하여 또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 필리핀 과세당국은 2015년 국세청장 고시 RMO NO.19-2015을 통해 세무 조사 선정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 통합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필리핀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을 4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 의무 선정 대상자(Mandatory Cases)
 - 최우선 선정 대상자(Top Priority Taxpayers)
 - 기타 선정 대상자(Other Priority Taxpayers)
 - 개별 선정 대상자(Revenue District Officer's Discretion)

1) 의무선정대상자 (Mandatory Cases)

- 의무선정대상자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세무조사를 수반하며,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자의 폐업, 합병·분할 등 사업구조 변경 사업자가 대표적인 사례임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등 환급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환급 신청에 따른 세무조사의 경우 대개 환급 신청 직후 시작됨

분류코드	납세자 유형
ITC	소득세 환급 신청자
VTR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자
ETRS	특별소비세 환급 신청자
ERTR	환급 오류 신청자
TRC	매출 1백만 폐소, 자산 3백만 폐소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
TMC	합병 분할 등 사업구조 변경 사업자
LNA	LN(Letter Notices) 진행 사업자
EOT	상속세 신고한 체납자
CIR	국세청장 지정 사업자

2) 최우선 선정 대상자 (Top Priority Taxpayers)

- 필리핀 과세당국은 국세청 고시를 통해 세무조사 최우선 선정 대상으로 아래 유형을 나열하고 있음

분류코드	납세자 유형
EFP	전자신고시스템(eFPS, eBIRF)을 이용하지 않는 수동신고 사업자
INV	기말 재고자산 100% 이상 사업자
IOA	이전가격, BEPS 관련 세무조사 대상자
BEN	국세청 기준 수익률 이하 사업자
INF	재고, 임차인, SLS/P, 매출 미보고자
INC	조세 면세/면제 사업자
ENF	Oplan Kandado 와 기타 프로그램 대상자
LOS	2년 연속 결손 사업자
COA	국세청 검증 대상 정부기관
LGU	유료사회활동단체
LOW	매출 대비 조세 납부율이 2% 미만 법인
ASS	50% 이상 자산 증가한 이전년도 결손 법인
CLD	재해로 인한 재고 자산 손실 법인
PSA	계열 회사에서 매출/수입을 발생하는 법인
CWO	소득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대상 신고자
EPA	계열 자회사
PRO	전문사업(예. 변호사, 의사 등)
REA	부동산업
TEL	통신 관계업
CON	정부기관 관련 사업자
ECO	전자상거래사업자
MED	병원/치과
AEE	놀이기구/엔터테인먼트 사업
ADA	광고회사
BPO	비즈니스 아웃소싱 회사
INS	보험회사
RES	식당/패스트푸드/커피/술집
ZRS	매출 없는 사업자
TPI	지식, 정보 기반 사업자



3) 기타 선정 대상자 (Other Priority Taxpayers)

- 사업 개시 이후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한 납세자
- 소득세가 총매출액/수입금의 2% 적거나 전체 부가가치세가 총매출액/수익의 3% 보다 적은 경우
- 신고서상 이월결손금이 발생하거나 과세되는 수입이 없는 납세자

4) 개별 선정 대상자 (Revenue District Officer's Discretion)

- 관할세무서에서 납세자에 대한 개별검토 시 필요에 따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단, 개별검토 대상자의 25%를 초과하는 인원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는 없음

라.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RMO NO.19-2012)

- 필리핀은 2012년에는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관련 국세청장 고시 RMO No. 19-2012 시행, 2015년에는 RMO No. 19-2012 개정 및 국세청 세무조사 규정 및 절차를 규정하는 국세청장 고시 RMO No. 19-2015를 신설한 바 있음
 - '12.7.31.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국세청장 고시 RMO No. 19-2012 발표
 - '15.7.21. RMO No. 19-2012 개정하여 RMO 16-2015 발표

□ 국세청장 고시 RMO No. 19-2012에 관한 사항

- 필리핀 국세청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실행 및 성실신고 검증을 위해 2012년 RMO No. 19-2012을 고시함
- 12.9월부터 LTS(Large taxpayer service) 부서 내 부가가치세 조사팀에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수행하게 됨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팀은 세무 조사를 위하여 annex A - General Vat Audit Plan을 작성하여 LTS(Large Taxpayers Service)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게 됨
- 세무조사의 절차는 Revenue Audit Memorandum Order(RAMO) No. 1-99를 준수하여야 함
- 납세자는 통합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사에 대해 세무 조사 면제를 요청할 수 있음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를 통합조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항에 대해 세무조사 사전통지(e-Letter of Authority) 별도로 하여야 함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부가가치세 관련 국세청장 고시 RMO No. 19-2012는 납세자를 A. 고위험 납세자와 B. 납세의무 불이행 납세자로 유형을 분류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그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음

A. 고위험 납세자(High Risk Taxpayers)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성실 신고 불이행한 납세자

분류코드	납세자 유형
EZE	매출/수익 증가율이 없는 납세자
EIL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의 75%를 초과하여 매입세액이 상당한 납세자
EIH	매입세액 이월액을 신고한 납세자
ETI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및 면제 납세자
CTC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자
SNL	매출 대비 순손실 신고한 납세자
DIT	산업 규모와 경향을 비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
CRM	대사업자 성실신고검증 시스템 분석 결과 선정된 사업자



2. 기타 신고 의무 불이행한 납세자

분류코드	납세자 유형
ACA	1백만 페소 이상 자산을 매입하고 매입세액 신고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NCT	SLP, SLS, MAP, SAWT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
ESR	RMO No. 12-2012 전자 매출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
GPA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거래한 납세자

B. 중위험 납세자(Medium Risk Taxpayers)

분류코드	납세자 유형
CCS	인수 합병, 분할, 분사 등 복잡한 사업 구조의 사업자
CES	휴업 및 폐업 신청자
RLS	규모 대비 소액 매출 신고하는 납세자
STB	사업을 양도하는 사업자
MLB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사업자

□ 국세청장 고시 RMO No. 16-2015에 관한 사항

- BIR은 지역 국세청(Revenue Officers)에 부가가치세 세무 조사 권한을 이양하고, 세무조사 유형을 추가하고자 2015.7.21. RMO No. 19-2012를 개정하여 RMO 16-2015 시행하였음

<2015년 추가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

분류코드	납세자 유형
BIB	산업 기준 이하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DES	전자 매출 보고 및 판매 대비 부가가치세 신고 규모 이하인 사업자
EIT	부가가치세 연속 환급자가 매입세액 신고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는 주로 환급 신청을 통해 이루어짐. 따라서 중점 조사 사항은 대부분 매출세액보다는 매입세액 공제액의 정당성 검토에 모아짐. 이를 위해 과세당국은 다음과 같은 조사 절차를 주로 수행함
- 세금계산서의 타당성 검토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 계약서 또는 거래 증빙의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지 검토함. 예를 들어 납세자 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계약서에는 A 물품 공급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금계산서 품목에는 B 물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공급하는 자의 관할 세무서에 조회 확인
 - 세무조사시 거래처인 공급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는지 확인을 하게 되므로,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주요 거래처에 대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한 신고서 사본을 받아두면 좋음.
- 다른 자료와의 대사
 - 한국과 마찬가지로 필리핀도 조사시 다른 자료와의 대사를 실시하므로, 수출 신고서와 수출 매출액 대사, 수입 신고서와 수입 매입세액을 대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세무조사 프로그램

- 필리핀 과세당국은 조사회피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세수증대 방안 마련 등을 이유로 2005년부터 다양한 조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정교화 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RATE 프로그램과 Oplan Kandado 프로그램이 있으며, 실제 Oplan Kandado 프로그램을 통해 필리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음

가. RE-INVIGORATED RATE 프로그램

□ 프로그램 설명

- 필리핀 국세청은 2005년 재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제3자 정보, 법무부 미결 사건, 체납정보, 납세자 라이프스타일 체크 시스템(RMO 19-2010)등을 정보의 원천으로 조사회피자를 색출하는 프로그램인 RATE 프로그램을 신설함
- 프로그램 시행 이후 2010년까지 배우, 사업가등을 포함한 87건의 조세범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6건만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한계가 있어 2010년부터 대대적으로 정비에 들어감
- 2010년 필리핀 국세청은 행정명령 NO.277-A(행정명령 no.277 section 2 개정)를 발의하여 국세청의 모든 주요 밀수, 탈세사건을 재검토·평가·분석하는 독립된 위원회 창설하도록 하였으며,
 - NID(국내조사국)은 의무적으로 한 달에 2건, SID(특별조사국)은 한 달에 19건, RR-SI는 한 달에 1건을 검토하도록 강제하였음

- 또한 조사 기법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전가격 정보의 활용, 조사절차 규정 정비, 국가수사국 및 범죄수사부와의 협력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 기소 승소율을 높이고자 국세청 변호사와 법무부와의 협조, 조세심판원 판사의 자문, 대법원 재판 절차 규칙 개정 등을 추진한 바 있음

□ 추진 결과

- 필리핀 국세청은 RATE 프로그램을 통해 2014말까지 조세회피혐의자 327명에 대해 기소 신청하는 등 조세회피자를 집중 점검하고 있음

<RATE 프로그램을 통한 사건 진행상황(출처 : BIR)>

(2014.12.31 기준)

진행 상황	건 수
법무부에 계류중인 사건	283
법정 계류중인 사건	39
기각된 사건	5
제출된 건수 총계	327
예상 추징세액	649.8억 페소

나. Oplan Kandado 프로그램 (부가가치세 탈세 방지 프로그램)

- 2009.1월 필리핀 국세청은 2009.12.4 발표한 RMO No.43에 추가하여 RMO(Revenue Memorandum Order)3-09 Oplan Kandado 프로그램을 시행 하였음
- 이 프로그램은 탈세방지를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불이행 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을 폐쇄(일정기간 영업정지)하는 것으로, 그 사유는 아래와 같음
 - 사업자의 영수증 발행 거부



-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
 - 사업자의 30% 초과하여 매출 신고 누락
 - 부가가치세 사업자 미등록
- 필리핀 과세당국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10~30일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납세자가 통지서 수령 후 2일 이내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하였더라도 납세자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는 경우 고지서가 발부됨 이 때 5일 이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사업장을 폐쇄하는 것임
- Oplan Kandado 프로그램은 필리핀 과세당국의 매년 수립하는 세수 증대 방안 중 하나로서, 주로 현금 수입을 주로 하는 식당, 리조트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됨
- 실제 우리 교민의 사업장이 일정기간 폐쇄되고, 그 여파로 사업장이 문을 닫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필리핀 국세청, 한국계 식당 영업 정지 명령 (2015.9.21. 선스타세부)

필리핀 세부의 한국계 식당이 580만 페소(한화 145,000천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위 식당의 대표자는 2013, 2014, 2015년 1기의 매출액의 30% 이상 탈루한 혐의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5일내로 580만 페소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영구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BIR 13은 세무 조사 결과 평균 매출액 100만 페소로 신고된 위 식당의 실제 매출액이 150만 페소로 확인되어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RATE 프로그램** 하에 위 대표자를 기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2014년부터 소매업 자유화법 발효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리조트, 식당, 골프장 등 관광산업에 국내 기업의 관심이 높은 만큼 투자 상 주의가 필요함

5 조세 불복

가. 세금 징수

□ 가산세(Penalties)

-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 이후에 하거나,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무납부하는 경우, 신고서 상 납부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납부금액의 25%가 가산세로 부과됨
-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나 사기 등 부정한 신고를 한 경우 납부금액의 50%를 가산세로 부과함
- 상당한 신고누락(substantial under-declaration)은 허위나 사기행위로 보며, 수입금액의 30%를 초과하여 신고 누락하거나 실제 공제금액의 30%를 초과 공제한 경우가 상당한 신고누락에 포함됨
- 만약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통지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고의로 보지 않음(25% 가산세 적용)

□ 연체이자(Interest)

- 만약 납부기한까지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소납부한 금액의 20%를 연체이자로 부과하는 것임

□ 연체 세금의 강제 징수

-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은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 국세청은 주식, 금융계좌, 재산에 대한 권리 등을 포함한 개인 재산을 압류하거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압류, 고발 등 법정행위를 통해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나. 불복청구

□ 이의 신청

- 납세자는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재검토 혹은 재조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국세청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과통지서(Final Decision on Disputed Assessment, FDDA)를 발부해야 함
- 국세청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180일 이내 결정이 없으면, 결과통지서를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 항소(Administrative Appeal) 또는 사법 항소(Judicial Appeal)를 제기할 수 있음

□ 행정 항소(Administrative Appeal)

- 행정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각되는 경우 국세심판소에 불복 신청할 수 있음

□ 사법 항소(Judicial Appeal)

- 납세자는 이의신청 결과통지서(FDDA)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심판소(Court of Tax Appeals)에 불복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국세심판소 결정 내용에 대해 국세심판소 En Banc(전원합의체 재심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불복할 수 있음

필리핀 국세심판소(Court of Tax Appeals) 구성

국세심판소는 9명의 재판관이 3개의 branch로 구성되며, En Banc(전원합의체 재심리) 또는 Branch(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를 통해 불복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됨

IV. 필리핀 세무 이슈

1.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Anti-Dummy Law / 112
2. 부가가치세 탈세 방지 프로그램 시행 및 환급 지연 / 114
 3. 이전가격 관련자료 문서화 수준 제고 / 116
4. 필리핀 자회사의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상쇄 현상 / 118
5. 무형자산 관련 이전가격 이슈화 가능성 증대 / 120
 6. 정부조달개혁법 / 124



1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Anti-Dummy Law

□ 사례 분석

- 필리핀은 자국 경제와 자원보전을 위하여 거의 모든 업종이 외국인들에게 40% 이상의 지분과 경영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법(FIA)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분야(Negative List)와 분야별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 비율을 열거하고 있음
 - 예를 들어 40% 외국인 지분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법인의 지분 40%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으나, 나머지 지분 60%는 필리핀 현지인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임
 - 만약 필리핀에 연고가 있거나 믿을 수 있는 사업 파트너가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현지인에게 법인 지분을 주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데 이 때 지분 비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경영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회사 소유권에 대한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음
- 이 때문에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미(Dummy)를 이용하는데, 예를 들면 표면상으로는 필리핀인 지분 60%, 외국인 지분 40%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나, 실제로는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리핀인 지분 60%를 각기 서로 모르는 필리핀 사람 3명에게 20%씩 쪼개어 분산하는 방법임
 - 이 때 현지브로커 등을 통하여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명의대여자)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하거나 직업을 알선해 주면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대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지분을 이전하고 있음
 - 보통 더미와 계약을 맺을 때 지분포기각서를 미리 받아두고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필리핀공화국법 제108조는 더미 방지 법률(Anti-Dummy) 규정을 두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와 더미들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음



□ 우리기업 필리핀 진출 시 시사점

- 필리핀 진출을 계획하는 경우 지역이나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고 합법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특히 해당 사업이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이라면 각종 설비가 법인의 재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특히 더비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임
- 더미를 이용한 것이 발각될 경우 5년 이상 이하의 징역(중형)에 처할 수 있고, 투자금 회수도 어려울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세무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더미를 이용하여 법인 설립 시 필리핀인에 대한 주식명의신탁 혐의, 명의대여자에게 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대가지급 또는 유대관계비용 지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 만약 한국모법인이 더미를 이용하여 필리핀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한국모법인이 일부 지분이 아닌 실제로는 100%의 지분 보유하는 것으로,
 - 국외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Transfer Pricing(TP) 과세문제 등 필리핀 현지법인의 역외소득 과세 원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부가가치세 탈세 방지 프로그램 시행 및 환급 지연

<사례1> Oplan Kandado 프로그램 (부가가치세 탈세 방지 프로그램)

□ 사례 분석

- 2009.1월 필리핀 국세청은 2009.12.4 발표한 RMO No.43에 추가하여 RMO(Revenue Memorandum Order)3-09 Oplan Kandado 프로그램을 시행
- 이 프로그램은 탈세방지를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불이행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을 폐쇄(일정기간 영업정지)하는 것으로, 그 사유는 아래와 같음
 - 사업자의 영수증 발행 거부
 -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
 - 사업자의 30% 초과하여 매출 신고 누락
 -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안한 경우
- 조사 절차를 살펴보면, 필리핀 과세당국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10~30일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납세자가 통지서 수령 후 2일 이내 답변하지 않거나, 답변을 하였더라도 납세자의 주장에 이유가 없는 경우 고지서가 발부됨. 이 때 5일 이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사업장을 폐쇄하는 것임

□ 우리기업 필리핀 진출시 시사점

- 예전에는 소매업이 외국인 투자 금지 분야였으나 2014년 소매업 자유화법 발효되어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필리핀 소매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 시장 규모면에서는 1억 1천만명 인구에 해외 진출 근로자를 중심으로 중산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화장품 상가, 콘도 미니엄, 골프장 등의 진출을 노리는 우리 기업이 많음
- Oplan Kandado 프로그램은 필리핀 과세당국의 매년 수립하는 세수 증대 방안 중 하나로서, 주로 현금 수입을 주로 하는 식당, 리조트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 대상으로 선정하며,
 - 실제 우리 교민이 일정기간 사업장이 폐쇄되고, 그 여파로 사업장이 문을 닫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
 - * 필리핀 국세청, 한국계 식당 영업 정지 명령(2015.09.01., 선스타 세부)
-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기업, 특히 현금 수입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Oplan Kandado 프로그램의 주 타깃이 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무납부하여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사례2>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사례

- 필리핀 국세법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후 12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통합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되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경우 120일 동안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부가가치세 조사 착수를 늦게 하거나 사업자가 필리핀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환급세액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간혹 있으므로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기업은 이를 고려하여 자금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이전가격 관련자료 문서화 수준 제고

□ 개요

- 세계적으로 국제조세 환경은 2013년 2월 OECD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EPS, GASE Erosion and Profit Shifing) 프로젝트’를 개시한 것으로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이전 가격 세제 및 조세 조약의 제정 및 개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필리핀은 2013년 OECD모델조약의 최신동향을 적극 반영하여 이전가격 세제 REVENUE REGULATIONS NO. 2-2013을 발표하고, 2015년에는 APA를 포함한 이전가격관련 가이드라인(REVENUE MEMORANDUM CIRCULAR 3-2015>의 26항)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공격적인 세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또한 필리핀은 세법 개정과 함께 태국과 독일 양 국과 조세 조약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선진국 자본의 투자를 자극하고, 거주자 및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됨
- 필리핀은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SECTION12에서 이전가격에 대한 서류의 문서화에 대하여 여러 권고사항들을 두고 있으며, 동 사항은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필리핀 세무당국에 의해 준용되고 있음
 - 특히 필리핀은 2015년 이전가격 T/F팀을 발족하고, 2015년 세수 증대 방안 중 하나로 이전가격 문서화 내용을 구체화할 것으로 공표하는 등 이전가격문서화가 더욱더 요구되는 상황임
- 필리핀은 최근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시 아래 세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우리기업의 주의가 필요함



- (저수익률) 세금 면제(감면) 기간 종료 후 이익률이 급감한 기업, 동종 기업 이익 수준보다 낮은 기업 등 국세청이 구축한 벤치마킹 지표를 기준으로 고위험군 납세자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 실시
 - * Performance Benchmarking 기준(RMO No.5-2012)
- (경영자문수수료) 과거에는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용인되었으나, 지금은 경영자문수수료에 대한 가격의 타당성을 입증 요구함에 따라 이전가격 문서화수준 제고를 요함
- (지급수수료) 과거에는 아웃바운드 서비스에 대해 5~10%의 마크업도 용인 되었으나, 지금은 10%의 마크업에 대해서도 이전가격 과세 문제를 제기 하고 있음. 특히, R&D와 같은 고부가가치 창출 분야의 경우 더욱더 주의가 필요할 것임
- 필리핀 세무당국 조사사례를 보면 회사가 이전가격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문서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검토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 문서화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늘려서라도 이전가격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수행하는 사례가 있음

□ 우리기업 필리핀 진출시 시사점

- 필리핀 국세청은 최근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제정 등 법률 정비하고 이전 가격 T/F팀을 발족하여 다국적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비교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조사 수준을 제고하고 있음.
- 필리핀은 이전가격 조사 초기단계로, 조사 기법이 숙련되기 전에는 부가세, 법인세 등에 대한 탈세 위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 특수관계자와의 가격산정 근거를 최대한 문서화하여 잘 보관하고, 제 3자와의 거래가격과 정기적으로 비교해서 거래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필리핀 자회사와 국내 모법인 간의 이전거래와 관련한 문서화와 작성·보관 수준이 조사 기간과 추정 세액 규모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 이전가격과 관련한 내용을 최대한 문서화를 해 두는 것이 필리핀 진출 시 세무 상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방법임

4 필리핀 자회사의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상쇄 현상

□ 사례의 요약

- 필리핀은 통상사업부 산하에 10여 개의 투자유치기관을 두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자신들의 등록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면제(감면), 자본재 수입시 관세 감면등의 혜택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투자 인센티브제도가 필리핀에 현지 자회사 형태의 투자를 할 경우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런데 필리핀의 투자지원청별 세제 혜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투자국과 달리 외국인 투자자가 설립한 법인의 법인소득세 감면율이 최대 30% 수준으로 그 비율이 낮은 편이며,
 - 최대 감면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한국모기업의 필리핀 자회사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한국 모기업의 세후 소득(필리핀 법인세 + 한국 법인세)은 자회사가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그 효과가 상쇄될뿐더러, 이월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시 한국모기업으로 유입되는 금액은 차이가 없음

□ 개별 사례 분석

- 필리핀 경제자유 구역청(PEZA)의 경우 제조업, IT업, 관광업등을 포함한 지정한 업종으로 입주하는 경우 최장 8년간 법인세 감면 (30%)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 한국 모기업이 100% 지분으로 PEZA에 필리핀 자회사를 설립하고, 필리핀 자회사가 세후 소득을 한국 모회사에 100% 배당으로 송금하였다고 가정하여 한국 모회사의 세후 순현금 유입액을 비교

- ① 필리핀자회사가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않은 경우
- ② 필리핀자회사가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30% 받은 경우

구 분	항목 구분	감면 "0"	감면 30%	비 고
필리핀 자회사	세전이익	1,000	1,000	
	법인세 산출세액	300	300	필리핀 세율 : 30%
	법인세 감면액	0	90	차액 : 90
	실제 법인세	300	210	
	세후 소득	700	790	
	배당한 금액	700	790	
	배당 후 현금	0	0	
	배당 시 원천징수	70	79	제한세율 10%
	실제 송금한 금액	630	711	
한 국 모회사	배당소득	700	790	
	(실배당 수령액)	630	711	
	법인세 과세표준	1,000	1,000	* 간접외국세액 포함
	법인세 산출세액	220	220	한국 세율 : 22%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220	220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370	289	
	- 직접외국납부	70	79	
	- 간접외국납부	300	210	
	- 간주의국납부	0	0	
	(이월세액공제 대상액)	150	69	
	실제 법인세	0	0	
	(결과) 세후 현금 유입액	630	711	차액 : 81
(결과) 이월세액 공제액	150	69	차액 : △81	

* $300 \times \{630 / 630\} = 300 \rightarrow$ 공제 한도 초과

** $210 \times \{711 / 711\} = 210 \rightarrow$ 공제 한도 초과

- 상기 도표에서 보듯이 필리핀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의 차이가 90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모회사의 세후 순현금 유입액의 차이는 81로 상쇄되고, 이월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에는 현금유입액이 780으로 동일함

5 무형자산 관련 이전가격 이슈화 가능성 증대

□ 개요

- 필리핀에 자회사 형태로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필리핀 과세당국의 무형자산과 관련한 이전가격 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 됨

□ 필리핀 진출형태의 변화 예상

- 필리핀은 지리적 이점으로 인한 전략적인 사업 요충지로 인구 6억명이 넘는 ASEAN 시장의 주요 관문으로, 섬나라 특성상 물류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 과거에는 저렴한 임금시장을 장점으로 필리핀에 제조장을 갖추고 직접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 최근에는 저렴한 임금과 영어구사능력이 우수한 인적자원 등을 이유로 휴대폰, 보안장비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사(R&D센터),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물류 공급을 위한 ‘물류기지’ 등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 그 간의 무형자산 이전가격에 관한 논란

- 최근 관계회사 간 이전거래에 대한 논쟁의 대부분은 무형자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
- 무형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독립기업 간 정상가격기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으며
 - 특히 무형자산의 적정가격을 결정하는 문제는 정상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어 왔음

- 이에 OECD는 2015년 9월 OECD 이전가격가이드라인(Transfer Pricing Guideline) 제6장 (무형자산)을 개정함

□ OECD TPG 제6장(무형자산)의 개정

- '15.9월 OECD/G20 공동 글로벌프로젝트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¹⁾) 대응 프로젝트 결과로 OECD 이전가격가이드라인(Transfer Pricing Guideline, TPG) 제6장(무형자산)이 개정²⁾되었으며, 개정 조항에서 무형자산을 이용한 부당한 소득이전을 차단하는 무형자산의 이전가격 과세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주요 개정 내용

- 무형자산의 정의
 - ‘소유되거나(owned) 통제되고(controlled) 비특수관계사이의 거래에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물리적 자산이나 금융자산이 아닌 자산’을 무형자산의 정의로 정립
- 무형자산의 분류
 - 마케팅 무형자산(marketing intangible)을 별도의 독자적인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개념 정의는 필요하다는 여러 국가의 의견을 존중해 용어사전(glossary)에 추가
- 무형자산의 소유권 및 이익귀속
 - 무형자산의 법적소유권자(legal owner)에게 무형자산관련소득이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관련 기능, 위험, 자산 분석을 통해 무형자산의 개발·향상·유지·보호·활용에 실질적 기여가 있는 실체에게 해당 기여도에 비례해 보상

1)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 15개 Action Plan으로 구성

2) 2015.9월 BEPS 프로젝트 최종결과보고서_주재관

- 특히, 무형자산과 관련된 위험과 관련해, 위험에 대한 통제*(control)와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financial capacity to assume the risk)을 가진 실체에게 관련이익을 귀속
- 위험의 통제는 특정 위험에 대해 평가하고 의사결정을 할 역량(capacity)과 이러한 역량과 관련된 기능을 실제로 이행(performance)하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기능(function)임
-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이란 위험이 실현되었을 때 그 결과를 부담하기 위해 자금을 접근(funding to access)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금에의 접근(funding to access)이란 정상가격 원리내에서 비교가능 제3자의 행동을 기반으로 이용가능한 자산과 추가적 유동성을 위해 이용가능한 현실적 대안들을 고려해 위험이 실현되었을 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

○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조건결정관련 보충적 지침

- 이전가격 결정방법으로 가치평가법(valuation technique method)과 현재 가치 할인법을 새로이 제시하고, 가치평가법과 관련해서는 가치 평가시 현금유입예측(cash flow projection) 뿐만 아니라 소득예측(income projection)도 유용하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
- 아울러, 가치평가(valuation technique)와 관련해, 이전가격가이드라인이 인정하는 5가지 방법(method)중 한 가지 방법이나, 정상가격을 확인하는데 사용가능한 도구(tool)로 과세당국과 납세자가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을 제6장(무형자산)에 포함
- 다만, TPG 제2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타의 방법(other methods)과 관련해서, 과세당국이 기타의 방법을 정식 방법으로 사용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견이 있어 기존의 내용(para 2.9)을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현재 명시된 바가 없음

○ 무형자산의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Hard to value intangibles)

- ‘hard to value intangibles’는 거래당시 신뢰할 수 있는 비교가능대상이 부재하고, 이전된 무형자산으로부터의 미래의 현금이나 소득의 흐름에

-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이 부재하거나 가치측정의 전제가 매우 불확실한 경우, 사전적 정보(ex-ante information)의 신뢰성을 사후적 정보(ex-post information)를 근거로 판단하는 경우의 무형자산을 의미하며, 과세당국은 일정한 경우에 가격조정조항(price adjustment clause)을 간주해서 과세 가능
-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이 부정하고 있는 hindsight(실제 거래 이후에 발생 상황)가 적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사후적 정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적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기술해 hindsight 문제를 회피
 - 'hard to value intangibles'가 정상가격원리내의 방안인지 정상가격 원리밖의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정상가격 원리내의 방안으로 적용하기로 함의

(HTVI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1. 납세자가 아래 정보를 제공한 경우
 - ① 납세자가 이전 당시 사용한 사전 예측내용의 상세 (위험 평가 내역,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사건과 다른 위험에 대한 고려의 적정성, 발생확률 포함); and,
 - ② 재무예측(financial projections)과 실제 결과 사이의 중요한 차이가 i) 거래 당시 예상할 수 없는 사건 또는 ii) 예견한 결과의 확률이 실현되었고, 그 확률이 과대·과소 평가되지 않은 경우
2. HTVI 이전이 합의된 일방 혹은 쌍방 APA의 대상거래인 경우
3. 기대이익과 실제이익의 차이가 20% 이상 나지 않는 경우
4. HTVI가 최초 제3자 매출을 창출한 이후 5년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 기간이 지난 경우, 이 경우 5년 상업화 기간 동안 기대이익과 실제이익의 차이가 20% 이상 되지 않아야 함

- 'hard to value intangibles'의 범위와 관련해, 일반적인 적용 예시를 기술 (illustration)하고 적용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기술
- TPG 제6장(무형자산)은 개정이 완결되었으나,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 자산(Hard-to-Value Intangible, HTVI)과 관련해서는 사례에 대한 각 국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2016.5월 기준)

□ 우리기업 필리핀 진출시 시사점

- 개정된 무형자산 관련 TPG(제6장)는 무형자산관련 이익을 기능, 자산, 위험 분석(특히 위험과 관련해 위험통제 및 재정적부담능력의 주체를 확인)을 통해 이익창출에 실제 기여한 실체를 확인하고 이들 실체에게 당해 실체의 기여분만큼 이익을 귀속시키는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향후 이전가격 분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각국이 이전가격 자료제출 규정을 법제화하고, 非OECD 국가들도 동 프로젝트 이행을 지지하면서, BEPS 프로젝트는 향후 국제조세원칙과 규범으로서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에 영향력 강화하고 있음
- 필리핀 과세당국이 2013년 OECD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15년 이전가격 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등 이전가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로,
 - 필리핀에 자회사 형태로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필리핀 과세당국의 무형자산과 관련한 이전가격 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 됨

6 정부조달개혁법

□ 정부조달개혁법(Government Procurement Reform Act) 개요

- 정부조달개혁법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프라 프로젝트, 상품, 컨설팅 서비스 등의 분야의 공개경쟁입찰에 관한 제반 절차 및 제도를 규정
 - 이 법령은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관, 금융 공기업, 주립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부기관에 적용
 - 외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조달활동에도 적용(단, 조약·국제협정을 통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금융기관의 조달규정 적용을 강제하는 경우 적용제외)



□ 필리핀 정부조달 표준 절차

1. 사전 조달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내용 및 절차를 사전 조달회의를 통해 검토 - 상품 2백만 페소 이상, 인프라 프로젝트 5백만 페소 이상, 컨설팅 서비스 1백만 페소 이상의 경우 필수
2. 입찰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시한, 입찰서류 양식 등 입찰관련 정보를 필리핀 온라인 정부조달시스템(PhilGEPS)이나, 조달기관 홈페이지, 신문 등에 공고 - 인프라 15백만 페소, 상품 10백만 페소, 컨설팅 서비스 5백만 페소 이상의 계약의 경우 2년 이상 발간한 신문에 1회 이상 게재 - 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조달기관 홈페이지나 PhilGEPS에 7일간 게재
3. 사전입찰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입찰회의 소집하여 입찰 참여자격, 입찰조건 등 협의 - 1백만 페소 이상의 프로젝트는 의무 개최 - 입찰 제출 마감기한 최소 12일전, PhilGEPS 게재일로부터 7일 이내 개최되어야 함
4. 입찰서 제출 및 첫 번째, 두 번째 봉투 개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된 대표기관을 통해 두 개의 봉인된 봉투에 입찰서류를 담아 제출 - 첫 번째 봉투 : 기술적 요소 등 적격성 증빙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ilGEPS 등록확인서, PCAB(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 필리핀건설계약자 승인 위원회)로부터 받은 건설면허 등 적격성 증명서류 · 입찰보증 금액 및 유효기간 증명서 · 입찰 계약 조직도, 참가자 인적사항 명부 등 - 두 번째 봉투 : 재정건전성 증빙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재정건전성 증명서류 · 분기별 현금흐름 등 - 마감시한 전까지는 기재출한 입찰서도 수정가능
5. 입찰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낮은 입찰가로 선정된 지원자를 선별(접수 마감일 기준 7일 이내 평가 완료) - 최종 낙찰자 선정 전까지 평가자들과 입찰 참여자들과의 접촉 금지
6. 사후 자격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가로 선정된 지원자의 계약관련 요구사항 충족여부 검토하여 최종 낙찰자 결정(최저가 지원자 선정일로부터 12일 이내 완료)
7. 계약 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기관의 기관장은 입찰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낙찰자의 승인여부를 15일 내에 결정해야 함

□ 외국기관 / 업체의 입찰 참여 조건

- 필리핀 정부는 정부조달 시 자국 고용률 증대, 내수증진을 위해 국내입찰자를 선호하나, 다른 국가와의 교역 촉진을 위해 외국기관에게도 상품, 인프라, 서비스 분야의 정부조달 입찰 참가자격 부여
 - ① 상품조달 분야 : 외국 국적의 입찰자도 해당 상품이 자국 공급자로부터 조달이 어려울 경우, 경쟁을 회피하거나 교역을 제한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특정 조약 또는 국제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입찰 참여가능
 - *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 (상품조달에 한해 적용)
 - 외국 입찰자는 입찰가의 15%를 가산하여 자국 입찰자와 경쟁
 - 입찰가의 15%를 가산해도 국내 입찰자보다 입찰가가 낮은 경우 외국 입찰자가 최종 수주
 - ② 인프라 프로젝트 분야 : 외국 국적의 입찰자는 지역 입찰 참여자들과 조인트벤처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하며, 외국 입찰자의 지분은 25%를 초과할 수 없음
 - ③ 컨설팅 서비스 분야 : 국내 컨설턴트들이 프로젝트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외국 컨설턴트 고용 가능

□ 정부조달개혁법 개정

개정항목	개 정 내 용
적용범위 (Sec.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정부 조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현행법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적 또는 실질적 지원 b) 학자금, 훈련, 교육, 회의, 세미나, COA(Commission on Audit), CSC(Civil Service Commission), 그리고 DBM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등이 관할하는 유사한 활동에의 참여



개정항목	개 정 내 용
적용범위 (Sec.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c) 정부소유자산의 리스 d) 작업지시서에 따른 직원의 채용 e) NEDA(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인트 벤처와 LGU (Local Government Units)에 의한 조인트벤처 협약에 관련된 사항 f) 정부자산의 처분
적격성 판단을 위한 요구자료 (Sec. 8.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모든 입찰참여자는 PhilGEPS에 다음과 같은 Class A의 적격성을 증명하기 위한 파일을 게재하고 관리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등록 증명서 b) 시장/기업체의 허가서 c) 세금 납부증명서 d) 필리핀건설계약자 승인위원회의 자격증과 등록증 e) 감사받은 재무재표 ○ 외국 입찰참여자의 경우 입찰자의 국적 국가서 발행한 영어로 번역된 적합한 문서로 대체될 수 있음. 아니면 공인된 해외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영어로 번역된 서류나 적절한 필리핀내 외국인 대상 서비스 기관에 의해 인증된 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입찰서류 제출 (Sec. 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입찰서류 제출시 시장/기업체의 허가증이 만료됐더라도 사후 심사 전까지 갱신된 허가증을 제출하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조인트 벤처 입찰서류 (Sec. 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입찰시 조인트 벤처의 경우 각 구성원이 PhilGEPS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기술적·재정적 적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규]NFCC(Net Financial Contracting Capacity)를 제출하는 파트너의 경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계약서와 감사받은 재무 재표를 제출해야 함.
컨설팅 서비스 입찰서류 (Sec. 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컨설팅 서비스 입찰시 조인트 벤처의 각 구성원은 PhilGEPS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외국컨설턴트 입찰 서류 (Sec.24.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적격성 판단절차를 간소화 하기위해 통상 PhilGEPS에 등록한 내용을 확인하면 되나, 외국 국적의 컨설턴트는 이를 대신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규]외국국적의 컨설턴트가 입찰에 성공할 경우에는 PhilGEPS에 등록해야 함.

개정항목	개 정 내 용
<p>입찰서류 형 식 (Sec. 17.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조달기관은 입찰서류에 요구 조건, 입차기준, 그리고 입찰 절차 세부사항 및 프로젝트에 수반되는 계약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함. ○ [신규]입찰지원 수수료는 조달기관이 입찰을 거절하거나 입찰 실패를 공지한 경우 반환받을 수 있음.
<p>기타 입찰 관련사항 (Sec. 17.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미확정된 통행권 취득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경우, 조달 절차가 개시될 수는 있으나 자산소유자에 의해 권리가 확정되거나 공증된 판매나 기부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낙찰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음.
<p>입찰공고와 내 용 (Sec. 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입찰공고시 프로젝트, 품목의 평가서 뿐 아니라 프로젝트의 이름과 증명서, 품목, 수 등을 기입해야 함. ○ [수정]입찰광고는 상품의 경우 천만페소, 인프라의 경우 천오백만 페소, 건설링 서비스의 경우 오백만 페소 미만인 계약건은 필수 요소가 아님(기존 각각 이백만, 오백만, 백만 페소에서 금액 인상)
<p>사전입찰 회 의 (Sec. 2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사전 입찰회의의 세부사항은 회의 이후 5일내에 준비되어야 하며, 입찰참여 예정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일로부터 5일내에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기존 3일)
<p>입찰서 제출과 수 정 (Sec. 25.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상품조달 입찰의 경우 첫 번째 봉투에는 아래의 서류가 포함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hilGEPS 등록 증명서 - 진행중인 對정부, 對기업 계약서 - 과거 실적중 최대 계약건 - 재정능력지수 - 조인트벤처 동의서 또는 공증서 - 입찰보증금 - 생산/배송 스케줄, 소요인력, A/S 서비스계획 등이 포함된 기술적 능력을 나타내는 서류 - 선서진술서 - 국가간 상호주의에 의거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외국국적의 입찰자의 경우 필리핀 국적의 입찰자도 자국의 정부조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V. 필리핀 투자

1. 필리핀 투자 환경 / 130
2. 필리핀 투자지원제도 / 134
3. 재생에너지법 / 143
4. 조세인센티브 투명화법안(TIMTA) / 145
5. 법인 설립 및 해산·청산 절차 / 147
6. 필리핀 현지기업의 법·제도적 애로사항 / 156
7. 최근 필리핀 진출 호황 요인 / 158



1 필리핀 투자 환경

가. 일반환경

- 필리핀은 지리적 이점으로 인한 전략적인 사업요충지로 인구 6억명이 넘는 ASEAN 시장의 주요관문임과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인접해있으며, 섬나라 특성상 물류적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
- 필리핀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시아에서 우리기업의 투자 관심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1980년부터 2015년까지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수는 총 1,547개(현지법인, 지사, 지점포함)로 전체7위를 기록하고 있음
- 시장규모면에서는 1억 767만 명(2014년11월기준) 인구에 중산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도 커지고 있고, 외국문화와 기업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영어구사가 자유롭고, 뛰어난 손기술과 온순한 국민성을 보유한 인력이 풍부해 유리한 노동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됨
- 또한 근로자 최저 인건비가 낮고 인건비 상승정도도 완만하여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P턴 투자국가로 매력이 있음

나. 정부의 투자정책 및 외국인우대 정책

- 필리핀은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장려하고 있으며, 필리핀 진출 기업은 각 필리핀 투자유치기관의 요건을 충족하고 투자유치 기관에 등록을 한 경우 투자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음



- 필리핀은 복수의 기관이 외국인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이 중 PEZA(경제자유구역청)와 BOI(투자위원회)가 전국을 관할하는 대표 기관이며, 특정 경제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SBMA(수빅자유구역관리청), CDC(클락개발공사)와 함께 4대 투자유치기관으로 꼽힘
- 정부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금 및 이익금의 송금권한을 부여하며, 외국차관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유로운 외화환전 및 송금을 보장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며,
- 필리핀 투자청이 매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군을 발표하고, 동 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투자자들은 일정기간 법인세 면제, 관세 영세율 적용, 특별비자 등의 혜택 제공하므로 필리핀 진출 예정 기업은 투자유치기관별 인센티브 요건이나 혜택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국가투자위험도

- 필리핀 정부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소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여 필리핀 정부의 정책이 바뀌면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과정에 이의가 제기될 뿐더러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자선정 과정도 수의계약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정책투명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필리핀의 높은 전기료와 물류비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 중 하나로, 전기료의 경우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국내해운, 내륙운송, 창고비등 물류 관련 요금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음
-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프라투자가 부족하며, 도로, 해운, 공항, 철도 등 전반적인 국가의 기본 인프라 수준이 떨어지는 편으로, 특히 연말에 주로 발생하는 항구적체로 인한 진출기업의 피해는 2014년 14억8452만 달러 (필리핀상공회의소)에 달함

- 마지막으로 불투명하고 느린 비즈니스관행으로 인하여 정부 뿐 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비즈니스 추진속도가 느리고, 일부 브로커들의 불투명한 업무추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시장진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함

라. 투자유치기관

- 필리핀정부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내외투자자에게 균등하게 금전적, 비금전적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수혜를 위해서는 먼저 투자유치기관에 등록이 필요함
 - 필리핀에는 복수의 기관(12개)이 외국인투자 유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전국을 관할하는 대표기관으로 PEZA(경제자유구역청)와 BOI(투자위원회), 특정경제 특구를 기반으로 하는 SBMA(수빅자유구역관리청), CDC(클락개발공사)가 4대 투자유치기관으로 꼽힘

필리핀 정부 산하 주요 투자 유치기관

-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PEZA)
- Board of Investment (BOI)
-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SBMA)
-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CDC)
- Bases Conversion Development Authority (BCDA)
- the Authority of the Freeport Area of Bataan (BATAAN)
- Cagayan Economic Zone Authority (CEZA)
- Zamboanga City 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 and Freeport (ZCSEZA)
- PHIVIDEC Industrial Authority (Phividec)
- Aurora Special Economic Zone Authority (ASEZA)
- Regional Board of Investments of the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RBOI-ARMM)
- Tourism Infrastructure and Enterprise Zone Authority(TIEZA)



- 이들 투자유치기관은 모두 자체적으로 신청기업의 투자심사, 해당기업 등록, 관리, 지원(인센티브제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BOI와 PEZA는 모두 필리핀통상산업부(DTI) 산하기관의 성격을, CDC, SBMA는 독립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임

마. 제한 분야 및 금지 분야

- 필리핀은 외국인투자가 제한된 예외분야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투자가 허용되는 건설업, 물류업 등 분야에서 외국인투자지분 제한이 존재하며,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분야는 외국인투자법에 의거 Negative List(격년 단위로 리스트 조정)를 통해 외국인의 투자를 0~60%까지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광고업은 25%, 전문직, 방송 등은 원천적으로 외국인 지분 참여(0%)가 불가능함

Negative List

- List A
 - 0% : 대중매체, 소매, 전문직(법률, 회계, 건축설계, 의료), 민간경호회사, 소규모 광산개발업, 해양자원이용, 핵/생화학/방사능 무기 제조 등
 - 20% : 라디오통신
 - 25% : 국외 인력지원(인력해외송출업) 사업, 국내 자금 조달 공공사업 건설 및 보수계약, 국방 관련 건설 계약
 - 30% : 광고서비스
 - 40% : 천연자원 탐사/개발/활용, 사유지 소유, 공공사업 운영 및 관리, 교육기관 소유/설립/운영, BOT 프로젝트 관련 프로젝트 제안 및 시설 운영, 콘도 유닛에 대한 소유
- List B
 - 국방, 안보, 국민위생, 중소기업 보유 위한 외국지분 제한 분야

바. 투자유치정책 및 전망

- 필리핀은 최근 5년 동안 평균 6.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중산층 증가로 인해 소비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영어구사능력을 보유한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며 노사분규가 적고 낮은 임금(1일\$8) 및 임금인상률(2010년 이후 연평균 2.38%)로 고용여건이 우수함
- 또한, 정부주도의 관민합동사업(PPP) 중점추진으로 인한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제공함. 현재 총 54개 PPP(120억 달러)가 선정되어 12개가 입찰이 완료되었으며, 13개가 입찰 진행 하고 있으며 **전화엔지니어링**이 2.5억 달러 규모의 세부간선 급행버스 체계(BRT) 프로젝트를 수주하였고, **수자원공사**는 필리핀의 대기업 산미구엘과 컨소시엄으로 5억1720만 달러 규모의 **블라칸용수 공급프로젝트** (the Bulacan Bulk Water Supply Project)를 수주하는 등 한국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

2 필리핀 투자지원제도

□ 투자 지원 개요

- 통상산업부(DTI) 및 전환기지개발청(BCDA) 산하에 10여 개 이상의 투자유치기관이 대표적으로 PEZA(Philippines Economic Zone Authority, 경제자유구역청), BOI(Board of Investment, 투자위원회), SBMA(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수빅만관리청), CDC(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클락개발공사)가 있음
- 이들 기관은 자신의 등록기업에 대해 법인세면제(감면), 자본재 수입시 관세감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투자혜택을 서로 다르게 적용



- 따라서 필리핀 투자진출 시 이들 기관의 인센티브와 등록요건, 등록유지 요건 등을 세부적으로 비교하여 입지선정에 반영하는 것이 좋음

□ BOI(Board of Investment, 투자위원회)

- BOI는 투자프로젝트와 업종별로 등록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등록(인센티브부여) 대상기업은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Act)에 의거 매년 발표되는 IPP(Investment Priority Plan)에 언급됨
 - * 14.10.28. 최신IPP가 발표되었으며, 이는 업종별 등록요건과 함께 BOI가 발간하는 IPP 해설서에서 확인이 가능함
- 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IPP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IPP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인센티브 적요 적용 가능
 - 생산량50% 이상 수출시(필리핀인이 60% 이상 지분 소유한 기업)
 - 생산량70% 이상 수출시(필리핀인이 60%이하 지분 소유, 외국기업 간주)
- 외국계 기업(외국인지분 40% 이상, 필리핀인 지분 60% 이하)이 BOI에 등록, 인센티브 향유를 위해서는,
 - IPP 에 Pioneer Status 프로젝트로 분류되거나
 - 70% 이상 수출하는 대외 지향적 기업이어야 함

(Omnibus Investment Act, Pioneer Enterprise(Article 17), Article 32)

<2014~2016 필리핀 투자우선 유치계획(IPP) 대상 업종>

구 분	수혜대상	수혜요건
제 조 업	자동차(완성차) 프로젝트	최소 2억 페소 투자로 승용차 또는 상용 차량의 제조, 조립 프로젝트
	자동차 부품	차체 패널 금형, 엔진, 변속기 및 트랜스 액슬, 대형 사출 성형 부품 등
	조 선	최소 500 GT 선박 및 부품 제조 등

구 분	수혜대상	수 혜 요 건
제 조 업	항공 우주	항공 우주 부품·구성 요소 및 지원 활동 (예 : R&D 활동, 연구/시험 기관 및 기술 직업 교육 훈련 기관)관련 제조 등
	화학약품	Oleochemical(합유화학제품-동·식물 기름에서 추출) 지방산 및 지방알콜 제조 등
	버진 펄프	삼림 농장과 통합 펄프 생산
	구리 와이어 및 구리 선재	구리 에나멜 와이어의 생산
	철 강	기본 철강 제품, 철강 연마 공, 긴 철강 제품 (반제품 및 철근 막대), 평면 냉/압연 제품
	도구 및 금형	금속 스탬핑 또는 금속 단조를 위한 도구 등
농업/어업	산업용 농산물	코코넛, 옥수수, 카사바, 커피, 카카오, 생선, 고기 및 가축 등
	공 정	생물공정을 통한 농·어업 원재료로부터 고부가 가치 물질 추출 등
	비료 및 농약	최소 85%의 전체복구율(OAR) 이상의 제분소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설탕제분소의 현대화
	인 프 라	건조시설, 저온유통저장, 송풍동결, 대량취급 및 보관시설, 통조림공장, 무역센터, 저개발 지역에 얼음 공장, AAA 도살장, 연구 개발 및 테스트 시설, AAA 드레싱 공장
서 비 스	통합 회로 디자인	통합 회로를 디자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및 개발과 모든 논리 및 집적회로 설계
	창조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개발, 건강 정보 관리 시스템(HIM)
	선박수리	모든 종류의 해상 운송 시설의 보수 등
	전기자동차	전기 자동차 충전소의 설립
	항공기 유지보수점검	조사 및 개발 활동, 조사 및 테스트 실험실, 우수 기술 직업 교육 센터
	산업 폐기물	공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유독성유해폐기물(THW) 처리시설 건설
저가주택 공급	저가주택 프로젝트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대중적인 경제적 저가주택 프로젝트 등
	조립주택공급 부품	지붕, 철골구조, 벽 및 파티션, 바닥, 출입문 및 창문, 천장 등



- 각종 감면요건 및 혜택
 - 법인소득세 감면(30% 감면)
 - 투자위원회는 매년 유치우선계획을 발표하며, 이에 명시된 업종에 대해 개척, 미개척분야로 나눠 소득세 면제하며, 감면기간은 4~6년임
 - 저개발지역 내 신규 및 확장 사업 및 현대화 프로젝트 소득세 면제 기간은 1년임

- 기타 감면
 - 영업개시 후 10년간 손실 발생시 향후 5년간 발생 순이익의 25%까지 이월공제
 - 고정자산 감가상각 누진 적용, 환경보호 설비 구입 시 면세혜택 부여
 - 보세구역으로 등록된 제조기업(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이 부품, 자본재 수입시 수입관세, 내국세 면제(등록 후 10년간)
 - 등록 후 10년간 항만세, 수출세, Importand Fee 면제
 - 수출 제품의 국내 원자재비에 대한 Tax Credit 부여(부가가치세)
 - 일정 조건 충족 시, 등록 후 5년간 인건비에 대해 최대 50%까지 추가 공제(미개발지역 소재 시 두 배 인정)

- 기타 혜택
 - 외국인 고용 허용(일반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제한적 허용, 등록 후 5년간 비관리직, 기술직, 자문역에 한해 허용)
 - 외국투자이익금(과실송금) 보장
 - 수출, 원자재 수입 시 간소한 통관 절차 적용
 - 장비 수입 시 재수출본드 발행 허용(등록 후 10년간)
 - 보세 제조설비/창고 운영 가능
 - 광산계약자는 소득세 산정 시 손실 이월 가능(단 이는 ITH 와 중복 적용 불가)

□ PEZA(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필리핀경제특구관리청)

○ 주요 업종별 등록절차와 인센티브 수혜요건

① 수출제조업

- 4년(non-pioneer status) ~ 6년(pioneer status)간 소득세 면제(ITH; Income Tax Holiday)되며 아래요건이 충족할 때 1년 연장 가능하나 최대 8년 한도
 - 영업개시 후 첫3 년간 평균 순익이 500,000달러 이상인 경우
 - ITH 연장 전 1년간 근로자 1명당 자본설비율이 1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ITH 연장 전 등록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필리핀산 비율이 50% 이상
- 확장 프로젝트에 대하여 3년간 소득세 면제(매출 증가분만 ITH 적용)
- 소득세 면제기간 만료 시 총소득의 5% 특별 소득세 부과(재산세 제외한 각종 국세, 지방세 면제)
- 원자재, 자본재, 기계류 및 부품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 부두 사용료 및 수출세, 각종 수수료 면제
- 국내 구매분에 대해 VAT 영세율 적용(BIR, PEZA 요건충족시)
- 재산세 제외한 모든 지방세, 지방정부 부과금, 수수료, 라이선싱비 면제(기계류 : 작동 개시 후 3년간 재산세 면제, 부동산 외 생산설비 고정자산세 면제)
- 종합 원천징수세 면제

② IT (정보통신)

- 4(non-pioneer status) ~ 6년간(pioneer status) 간 소득세 면제(ITH)
- 아래요건 충족시 IHT 1년 연장 가능, 그러나 최대 8년이 한도
 - 영업개시 후 첫 3년간 평균순익이 500,000달러 이상인 경우

- ITH 연장전 1년간 근로자 1명당 자본설비율이 1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ITH연장전 등록제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필리핀산 비율이 50% 이상
 - 확장 프로젝트 3년간 소득세 면제(매출증가분에 대해서만 ITH 적용)
 - 소득세 면제기간 만료 시 총소득의 5% 특별 소득세 부과(재산세 제외한 각종 국세, 지방세 면제)
 - 장비 및 부품 수입 시 수입관세 면제
 - 장비 수입선적에 부과되는 부두 사용료 면제
 - 유틸리티(지상과 통신, 전기, 수도요금), 건물 임대료 등 국내에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영세율 적용(국세청, PEZA 요건충족시)
 - 재산세 제외한 모든 지방세, 지방정부부과금, 수수료, 라이선싱비 면제(기계류 작동 개시 후 3년간 재산세 면제, 부동산이 아닌 생산 설비는 고정자산세 면제)
 - 종합 원천징수세 면제
- ③ 관광경제특구(Tourism)
- 4년간 소득세 면제(ITH, IPP 상 요건 충족 시)
 - 소득세 면제기간 만료 시 총소득의 5% 특별소득세 부과(재산세 제외한 각종 국세, 지방세 면제)
 - 자본재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
 - 장비 수입 선적에 부과되는 부두사용료 면제
 - 유틸리티(지상과통신, 전기, 수도요금), 건물 임대료 등 국내에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영세율 적용(국세청, PEZA 요건 충족시)
 - 종합 원천징수세 면제
- ④ 농림수산경제특구(Agribusiness)
- 4년간 소득세 면제(ITH)
 - 소득세 면제기간 만료 시 총소득의 5% 특별 소득세 부과(재산세 제외한 각종 국세, 지방세 면제)

- 농기구 등 장비, 기계류, 부품, 가축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
- 수출세, 부두사용료, 각종 수수료 면제
- 유틸리티(지상파 통신, 전기, 수도요금), 건물 임대료 등 국내에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영세율 적용(국세청, PEZA 요건 충족 시)
- 각종 지방정부 부과금, 수수료 (Mayor's Permit, Business Permit, 취업 허가서, 보건위생 검사료, 쓰레기 수거비 등) 면제

⑤ 경제 자유 구역 내 물류 서비스기업

- 소득세 면제혜택은 없음.
- 재판매, PEZA 등록 수출제조사에 판매하기 위해 포장, 절단, 가공, 직접수출 하는 경우, 또는 PEZA 등록 수출기업에 위탁 판매하는 원부자재에 대한 제세금 면제
- 검사, 포장, 저장 및 선적위한 원부자재 국내 구입시 VAT 영세율 적용

⑥ 경제자유구역 개발/운영사(IT단지, 관광, 은퇴관광, 의료, 농업분야공통)

- 총소득의5% 특별 소득세 부과(토지에 대한 재산세 외 각종 국세, 지방세면제)
- 국내 구매분에 대한 VAT 영세율적용
- 종합 원천징수세 면제

○ 법인소득세 감면(30%)

- 하기 업종으로 PEZA(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내에 입주하거나 PEZA 지구로 지정 받는 경우 소득세 면제(ITH) 가능
 - 제조업, IT업, 관광업(의료, 은퇴산업 포함), 농업
 - 단, Logistics Service Enterprises은 소득세 감면혜택 비적용, 수입관세 면제
 - Utilities & Facilities Provider는 ITH 비적용, 총매출이익(총매출 - 직접비)의 5% 혜택만 적용
 - 감면기간은 4년(최장 8년)간 법인소득세 감면 가능, 4년 뒤에는 총매출이익(총매출 - 직접비)의 5%를 납부



- 기타 감면
 - 지사형태(Branch) 설립 시 Branch Profits Remittance Tax(지점송금세) 면제, 원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 사업허가(Business Permit), 시청허가(Mayor's Permit) 발급, 위생검사 및 폐기물 처리비용 관련 지방세 면제
 - 수출세, 항만사용료 면제
 - 고용비용에 대한 추가 공제
 - 통신, 전력, 수도요금에 부과되는 부가세 면제
 - Local Business Tax 면제
 - 부동산재산세(property tax) 면제

- 기타 혜택
 - 생산품의 30%까지 필리핀 내 판매 가능
 - 수출입 절차 간소화
 - 비거주 외국인 고용 허용(Supervisory, Technical, Advisory 가능)
 - 투자자 특별비자 발급(직계가족 포함)
 - 환경적합인증서(ECC) 획득 지원
 - 기타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26)에 언급된 사항
 - BSP(중앙은행) 사전승인 없이 이익금 송금 가능

- SBMA(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수빅만관리청)
 - 그 동안 SBMA는 SSEFPZ(Subic Special Economic & Free Port Zone) 내 기업에 소득세, 관세 면제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투자유치유망지역으로 Olongapo시 Subic Town (Zambales, Morong, Hermosa town in Bataan) 지역에도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함
 - 법인소득세 감면(30%)
 - 수빅자유구역에 입주 SBMA에 등록 시 인센티브 혜택 가능

- 모든 지방세/국세 대신 총매출이익(총매출-직접비)의 5%납부, 단 소득세 면제(ITH) 혜택은 없으며, ITH 적용 위해서는 BOI 별도등록 필요

○ 기타 감면

- 원부자재, 자본재, 자유구역 내 소비 위한 제품 수입 시 관세 면제
- VAT, Excise Tax 등 모든 국세, 지방세 면제 (Gross Income의 5% 소득세만 납부, 단 ITH 없음)
- 원자재, 중간재, 직접 급여, 제조연료비, 건물 및 장비 임대료 등에 세액 공제 혜택 부여

○ 기타 혜택

- 25만 페소 이상 투자 시 투자가 특별비자(Subic Special Investor Visa) 발급
- 수빅자유구역 내 면세품 무제한 구입
- 교육, 언론 등 특수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 외국기업 100% 소유 지분 설립 가능(단 외국인지분 제한 업종 경우 경제특구에서만 사업 행위 시)

□ CDC(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클라크 개발회사)

- 클락경제자유구역(Clark Freeport Zone)은 마닐라, 수빅, 세부와 함께 한국 등 외국기업의 투자지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지역으로, 클락지역에 진출한 주요 한국기업으로는 PSPC, 동광종합토건 등이 있으며, '13.9.4. 외환은행 클락지점도 신규개점하였고 2014년 기준 20여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음

○ 법인소득세 감면(30%)

- 클락자유구역(CFZ)내 입주하고 CDC에 등록 시 인센티브 혜택
- 모든 국세/지방세 대신 총매출이익(총매출-직접비)의 5% 납부, 단 소득세 면제혜택(ITH)은 없으며, ITH적용 위해서는 BOI 별도 등록 필요



- 기타 감면
 - 원부자재, 자본재, 자유구역 내 소비 위한 제품 수입 시 관세 면제
 - VAT, Excise Tax 등 모든 국세, 지방세 면제 (Gross Income의 5% 소득세만 납부, 단 ITH는 없음)
 - 원자재, 중간재, 직접 급여, 제조연료비, 건물 및 장비 임대료 등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 부여
- 기타 혜택
 - 투자가 특별비자 발급
 - 클락자유구역 내 면세품 무제한 구입
 - 제조업, 물류, 서비스 분야 R&D 설립 시 추가혜택 부여
 - (세부사항은 RR 16-99 참조)
 - 교육, 언론 등 특수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 외국기업 100% 소유 지분 설립 가능 (단 외국인지분 제한 업종 경우 경제특구에서만 사업 행위 시)

3 재생에너지법

- 필리핀은 2008.12월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 of 2008, Republic Act No 9513)을 제정, 2009.1.30일 발효시킴
 - 동 법은 해당 분야 투자 확대 유도, 프로젝트 개발, 상업화 촉진을 통한 에너지 자립 향상, 환경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동법에서 규정하는 재생에너지는 바이오매스, 풍력, 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이며, 바이오연료의 경우 2007년 제정된 Biofuel Act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음. 필리핀 재생에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분야 혜택은 재정, 비재정적 인센티브와 기타 특혜로 구분됨

- 재생에너지는 물론 수력, 병합발전(재생에너지, 非재생에너지 혼합 발전) 시스템 활용 프로젝트 developer 도 REPA(Renewable Energy Projects & Activities) developer들이 받는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음
- 필리핀 내 제조된 재생에너지 장비, 부분품의 제조, 조립 공급업자도 일정 수준까지 Tax,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부가가치세액, 중간재 수입 시 납부 관세액의 100% 세액을 공제받고, 에너지부로부터 해당기업 순이익이 재생에너지 관련 장비/서비스 매출에서 발생했다는 증명서 발급 이후 7년간 법인소득세 면제(ITH), 국내 상품/서비스 거래시 부가세 영세율 혜택 부여받을 수 있음
 - 바이오매스 원료 경작 농민과 기업도 재생에너지법 발효 후 10년간 관련 원료 장비에 대해 수입관세 및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밖에 재생에너지 부분품 구매 시 세금 환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필리핀 국세청(BIR)에서 상기 인센티브들을 반영한 세무 규정 공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며, 해당 분야 진출 기업은 인센티브 내역에 주의를 기울여 부여된 인센티브 활용이 필요함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주요 인센티브 내역>

구 분	인센티브 내용
소득세 면제 (Income Tax Holid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단 재생에너지법 발효 시점에서 이미 7년 이상 상용화, 운영 중인 프로젝트는 제외)에 대해 상용화 이후 7년간 소득세 면제 ·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건(기 재생에너지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의 신규 추진 재생 에너지 자원 탐사, 개발 프로젝트 포함)에 대해서도 신규 투자에 따른 프로젝트 상용화후 7년간 소득세 면제 · 기존 또는 신규 프로젝트의 추가 투자건에 대해서는 3회에 한해 소득세 면제 혜택 부여. 즉 한개 프로젝트에 대한 총 소득세 면제 기간은 21년임.
관세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인증서(RE Projects & Activities Developer'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획득 시 10년간 관련 기계, 장비, 원료 수입시 관세 면제

4 조세인센티브 투명화법안 (TIMTA)

- 2016년 초부터 승인 여부로 지연되던 조세인센티브 투명화 법안(TIMTA)이 7월 21일 발효되어, 동 법안 적용 및 전자 세무신고 시스템(eFPS) 의무화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외국 기업의 대응이 중시됨

□ 조세인센티브 투명화 법안(TIMTA) 개요

- 필리핀 국가예산 공공지출부(BESF)는 재정부(DOF)와 예산관리부(DBM)를 통해 조세인센티브 수혜업체의 실제적인 총 혜택금액, 해당연도 및 다음해 예상혜택금액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함
- 재 정부는 국세청(BIR)에서 받은 조세인센티브 내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함
- 투자유치 전담기구(IPAs)는 투자관련 등록기업 리스트, 투자프로젝트, 투자금액, 고용 및 수출이익을 국가경제개발청(NEDA)에 보고해야 함

□ 조세인센티브 보고서(Annual Tax Incentives Report : ATIR) 작성

- PEZA 조세인센티브 보고서 작성실무
 - 보고서 제출 요령 : 기존의 PEZA 운영보고서(PEZA Annual Report on Operations) 와 조세인센티브 보고서(Annual Tax Incentives Report) 둘 다 제출
 - 제출기한 : 세무신고 완료날짜로부터 30일 이내
- 보고서 작성요령
 - ITH(Income Tax Holiday) 혜택 가능할 경우 개별 프로젝트당 산출
 - GIT(Gross Income Tax) 혜택 가능할 경우 전체 프로젝트를 통합해서 산출

- 보고서는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작성
 - ① Income Based Tax Incentive :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
 - ② VAT, Excise Tax and Duty-Based Incentives : 추정되는 거래량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여 관세청(BOC)의 TSAD 확인 후 작성
- 기간 내 제출 누락 시 벌금 부과
 - 1차 : 100,000 페소, 2차 : 500,000 페소, 3차 : 사업자 등록 취소

□ 시사점

- 조세인센티브 보고서의 경우 구체적인내용 등록으로 인센티브 내역이 투명해지는 장점이 있고 기존 보고서보다 작성이 용이하나 기존 보고서의 대체가 아니라 두 가지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업체의 혼돈이 예상됨
- 각 업체의 해당 투자유치 전담기구(IPA)에 수시로 상기 명시된 두 가지 보고서(특히, 위②번 보고서)의 데이터관련 등록방법을 관세청(BOC)에 자세히 문의하여 등록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 PEZA, BOI 등 조세인센티브 보고서 제출 시 제출기간을 준수하고, 문제 발생시 빠른 대응으로 동 법안 발효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5 법인 설립 및 해산·청산 절차

가. 진출형태별 설립절차

□ 회사설립

- 외국인투자가 100% 가능한 업종(서비스, 제조, 수출, 관광, IT, 임대업, 금융)은 최소 20만 달러(납입자본금기준)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특별법(건설, 물류, 교육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규정된 최저납입자본금을 준수해야 법인설립이 가능함

□ 회사설립절차(지사, 연락사무소, 법인공동)

① 필리핀기업 등록 및 감독위원회(SEC) 등록(법인등기)

- 감독위원회 SEC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사무소) 설립 시 자본금 외 SEC, BIR, Mayor's Permit 획득에 각종 수수료가 소요되며, 동 수수료 중 일부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남
-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청약자본금(수권자본금의25% 이상), 납입자본금(청약자본금의 최소 25% 이상)으로 구성되며, 주금납입증명서에는 필리핀 내 은행에 최소 20만 달러 이상의 잔고증명이 필요함

SEC 등록절차 및 소요시일

- 소요 시일 : 신청일 기준 약 4주
- 제출 서류
 - 1) 현지 지사 사무소의 영문명 예약 및 확보
 - Appeal Letter 제출 후 약 2주후 예약 및 확보
 - 2) 통합 이사회 결의서 작성
 - 현지 지사 설립, Resident Agency 지정 등의 내용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작성 및 서명(주한 필리핀 대사관 공증 필요)

- 3) 전년도 및 최근 분기 재무제표(영문, 주한 필리핀 대사관 공증 필요)
 - 4) 모회사 정관(영문, 주한 필리핀 대사관 공증)
 - 5) 법정대리인(Resident Agent)수락서(필리핀 현지 공증)
 - 법정대리인은 일반적으로 지사장을 지칭
 - 6) 법정대리인 진술서(필리핀 현지 공증)
 - 7) 신청서(법정대리인 서명 필요)
 - SEC Form No. F-103
 - 8) 법정대리인 여권 원본
- ※ SEC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서비스
- (웹페이지(<http://www.sec.gov.ph/>)→online transactions→register corporation)
 - SEC-IRegister : 필리핀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기업등록및감독위원회)의 인터넷 기반등록 시스템
 - SEC-IRegister를 통해 가능한 서비스
 - 기업, 혹은파트너십으로원하는이름의사용가능성을확인
 - 확인된 이름을 예약
 - 회사등록에 필요한 지원서를 제출
 - SEC 양식을 살 필요 없이 회사등록완료 및 인쇄

② 국세청(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 신고

- 모든 사업자는 국세청(BIR)에 납세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도 마찬가지임. BIR등록을 위해서는 소정의 Certification Fee와 인지세(청약자본금의 0.5%)를 납부해야 함

- BIR 신고 절차 및 소요시일**
- 소요 시일 : 신청일 기준 약 4주
 - 절차
 - 1) 한국의 국세청과 같은 세무관청에 법인등기부등본을 획득
 - 2) 인지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기타 등록신고 자본금기준으로 인지세 산정



③ 사업허가서(Mayor's Permit) 신청

- Mayor's Permit 또는 Business Permit로 부르는 사업허가서는 각 해당 지방정부(City, Municipality, Barangay 등)가 발급하며 여기에는 사무소에 대한 각종위생, 소방점검 등이 포함되며, 우리 나라와 달리 사업자 등록에 대해 매년갱신이 필요하며, 갱신시 매출, 순익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하게 됨

Mayor's Permit 허가사항 및 소요시일

- 소요 시일 : 신청일 기준 약 1개월
- 허가사항
 - 1) Barangay Clearance -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관서에 신고 및 확인증 취득
 - 2) Locational Clearance - 실제로 법인사무실이 존재하는지 유무 확인
 - 3) Fire Inspection - 법인사무실 면적에 따른 소화기 개수와 배치 검사
 - 4) Sanitary Clearance - 위생점검으로 사무실이 영업장소로서 이상 유무 확인
 - 5) Insurance - 임차 면적 및 지역에 따라 다름

④ 9G(워킹비자) 신청

9G비자 신청 절차 및 소요 시일

- 소요 시일 : 신청일 기준 약 2~2.5개월
- 절차
 - 1) 회사 설립이 완료되면 신청할 수 있음
 - 2) 노동허가증(AEP) - 3~4주 내 발급
 - 3) 9G비자 완료 및 I-CARD(외국인등록증)발급은 대체로 2.5개월 정도 소요되나 이민국 진행절차 변경 및 추가서류 요구 Agenda(비자심사) 스케줄에 따라 소요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공장설립

○ 필리핀에서 일반적인 공장설립절차는 아래와 같음

① 위치/토지선택

- 부동산중개인 등을 통해 산업단지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위치 물색

② 공장허가신청

- SEC에 등록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BOI 및 PEZA 등을 통해 인센티브 신청

③ 사업허가신청

- 부동산 및 산업단지를 구입/임대하고, 환경자원부(DENR), 국세청(BIR) 등 관련기관의 최종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공장건설을 완료하여 가동함

나. 해산절차

□ 개요

○ 투자법인 철수란 회사를 해산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중단시키고 재산관계 처분 및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 시키는 것을 의미함

□ 법인철수(해산)절차 및 관련 법령

○ 필리핀 회사법(The Corporation Code, TITLE XIV, Section 117~121)에 의거, 법인해산은 자발적 해산(Voluntary Dissolution)과 비자발적 해산 (Involuntary Dissolution) 방법이 있음

○ 자발적 해산은 채권자 (creditor)가 영향을 받는 해산과 받지 않는 해산으로 나뉘어짐



① 채권자가 영향을 받지 않는 자발적 해산

- 회사의 해산이 채권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
- 해산은 이사회가 다수투표와, 주식회사의 이사회 또는 비주식회사의 이사회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3주 동안, 장소, 회의, 목적을 통지 후, 해외 개최를 통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소 2/3 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찬성투표에 의해 정식으로 승인된 결의에 의해 실행됨
- 해산 허가 결의안의 사본은 주식회사의 이사에 의해 증명되며 총무 부장에 의하여 승인됨
- 그 후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SEC)는 해산 증명서를 발행함

② 채권자가 영향을 받는 자발적 해산

- 회사의 해산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 할 경우
- 해산은 기업등록 및 관리위원회에서 출원
- 신청은 다수의 주식회사 또는 비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업무경영권을 가진 다른 임원에 의해 서명되고, 회장이나 총무부장 또는 이사회 중 한사람에 의해 증명되며, 이것에 관한 모든 청구와 요구를 발표함
- 발행된 자본주식의 2/3를 소유한 주주의 찬성투표나 이 목적으로 소집된 주주 또는 위원회의에서 회원의 최소 2/3에 의해 결의됨
- 신청의 내용과 형식이 충분할 때, 위원회는 신청의 목적을 상술하는 지시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에 의해 이의가 출원되기 전에 날짜를 정함
- 그 이전에 지시서 사본을 연속되는 3주 중 최소 일주일 동안 본점 소재지가 있는 지방이나 도시에서 간행되는 신문에 게재함

- 단, 상기 방법 모두 해산 전 3주일 동안 국내일간지에 3차례의 해산공고를 게재해야 하며, 해당회사의 소송인이 신문광고 확인 후 SEC에 신고할 경우 법인해산이 취소될 수 있음
- 강제해산은 법인의 중대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어, 이 경우 SEC를 통해 적법한 절차 및 법률에 의거하여 법인을 해산하게 됨

필리핀 법인 해산절차

1) 법인 청산 절차 요약

- ① 노동부 관련 서류작성 및 신고 /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해산·해고 서류
- ② 해산관련 주주총회결의서 및 이사회결의서 작성 및 공증
- ③ 채권자 공고 - 일간신문 3회 공고(총 3주간)
- ④ 국세청 해산신고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Fringe Benefit Tax 신청
- ⑤ 재고자산 처분에 대한 부가세 조정업무
- ⑥ 청산재무제표 성(해산공고일까지) 및 감사의견서
- ⑦ 해산과 관련된 서류작업
- ⑧ SEC 해산등기 및 City Hall 사업허가 취소 / 인허가 반납

2) 각 기관별 청산절차

- ① 노동부
 - 노동부 관련서류 제출(종업원에게 보내는 해산 공지 서류 등)
 - 해산관련 주주총회 결의서 및 이사회 결의서 작성 제출
- ② SEC
 - Publication(채권자 공고 - 연속 3주)
 - Tax Clearance(BIR 납세증명서) 확보
 - Copy of SEC registration, articles and by law 준비
 - Director's Certification 준비
 - 이사회 결의서 준비
- ③ BIR
 - BIR Form 1905(해산신청서) 작성
 - Letter request for dissolution(해산 신청 letter) 작성
 - Original COR 반납
 - Print out of open case from collection section 확인
 - Inventory of OR's 준비
 - Board Resolution 준비
 - 최근 2년간의 ITR(소득세 신고서 Income Tax Return) · 최근 2년간의 Audited F/S(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준비, 청산 재무제표 작성
- ④ City Hall
 - Municipal Hall 신청서류 작성
 - Latest Business Permit 제출
 - Affidavit of no Income 및 관련 서류 제출
 - Audited F/S, 3대 보험 말소증명서 제출



다. 청산절차

□ 법인청산절차 및 관련 법령

- 필리핀회사법(The Corporation Code, TITLE XIV, Section 122)에 의거, 법인의 청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름
 - 법인의 한계나 실효, 또는 기타원인으로 설립인가가 실효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한 법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종결된 법인은 법인에 의한, 또는 반한소송에 기소하고 항변하며, 업무를 안정하고 청산하며, 자산을 처리하거나 양도하며, 자산을 분배하기 위해 해산되어야 하는 시일 이후로 3년 동안 법인 조직체로 존속함
 - 하지만 회사가 설립된 사업을 계속하는 목적은 안 됨
 - 앞서 말한 3년 동안, 회사는 주주, 회원, 이사와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모든 자산을 이사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음
 - 회사는 주주, 회원, 이사와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양도할 시와 양도 후, 회사가 자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이자들, 이사들의 소유권에 있는 법적인 이자들, 모든 주주들, 회원, 이사와 그 밖에 관계있는 사람들의 모든 이익은 종결됨
 - 회사의 업무 종결 시, 알려지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이사, 주주 또는 회원 분배할 만한 모든 자산은 자신이 위치되어 있는 지방이나 도시에 몰수됨
 - 자본주식의 감퇴와 법령에서 허락된 것을 제외하고, 회사는 법적인 해산시, 또 모든 채무와 부담액을 모두 상환한 후를 제외하곤 어떤 자산이나 재산이던지 분배할 수 없음

라. 기업설립 및 납세 절차 간소화 추진계획

□ 간소화 추진 배경

○ 열악한 기업환경

- 세계은행(World Bank : WB)의 2016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에 따르면 필리핀은 189개국 중 103위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기업설립 부문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한 바, 이는 다른 국가보다 기업설립에 소요되는 시일과 절차(16단계/34일)가 길고 복잡한데 기인함

○ 기업설립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 국가경쟁력위원회(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 : NCC), 재무부(Departments of Finance : DOF), 통상산업부(Trade and Industry : DTI)등 주요 정부기관이 참여한 기업환경개선위원회(Ease of Doing Business Task Force) 설립
- NCC는 작년부터 ‘16단계/34일’의 창업 절차 및 소요시간을 ‘6단계/8일’로 간소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현재 수건의 절차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으며, 올해 10월 ‘6단계/8일’을 위한 시행령을 발표할 계획

<기업설립절차 간소화 로드맵>

개선 전(16단계/34일)		개선 후(6단계/8일)	
		사업자	
		1단계(1일) - 정관 기타서류 공증	
기업등록 및 감독위원회(SEC)	⇒ 통합 ⇒	기업등록 및 관리위원회(SEC)	
1단계(1일) - 영문상호명 확인 및 예약 은행(필리핀 소재)	⇒ 폐지 ⇒	SEC 통합등록 시스템(IBRS) 2단 - 사업자등록번호 취득 (1일) - 납세자 번호 취득 - SSS, PhilHealth, PagIBIG 등록번호 취득	
2단계(1일) - 자본금 납입증명서 취득 공증기관	⇒ 통합 ⇒		
3단계(1일) - 정관 등 기타 서류 공증 기업등록 및 관리위원회(SEC)	⇒ 통합 ⇒		
4단계(2일) - 사업자등록 - 예비 납세자 번호 취득	⇒ 통합 ⇒		



바랑가이 홀(사업장 소재지)	⇨ 유지 ⇨	바랑가이 홀(사업장 소재지)
5단계(1일) - 신고 및 확인증 취득 ※ 바랑가이 홀 : 한국의 동사무소		3단계(1일) - 신고 및 확인증 취득
시청(사업장 소재지)	⇨ 통합 ⇨	시청(사업장 소재지)
6단계(1일) - 주민세 납부 [담당부서 : CTO] 7단계(6일) - 영업허가서 취득 [담당부서 : BPLO]		BPLO에서 동시 처리 4단계 - 주민세 포함 기타 비용납부 (2~3일) - 영업허가서 취득
서점	⇨ 통합 ⇨	국세청(BIR)
8단계 - 주주명부 기입 책자 구입(1일)		
국세청(BIR)	⇨ 통합 ⇨	
9단계 - 법인등기부등본 취득 (1일) - 납세자 번호 취득 - 인지세/세금계산서 등 신고 10단계(1일) - 등록비 및 인지세 납부 11단계(1일) - 영수증 및 송장 인쇄 허가 취득 12단계(1일) - 영수증 및 송장 인쇄 13단계(1일) - 영수증 날인	⇨ 추가 ⇨	영수증 및 송장 관련 업무 통합 POS 단말기 등록 업무 추가 5단계 - 법인등기부등본 취득 (1일) - 주주명부 기입 등록 6단계 - POS 단말기 등록 (1~7일) - 영수증 인쇄
사회보장시스템(SSS)	⇨ 통합 ⇨	
14단계(1일) - SSS 등록		
건강의료보험(PhilHealth)	⇨ 통합 ⇨	
15단계(1일) - PhilHealth 등록		SEC 통합등록시스템으로 2단계에서 일괄처리
주택용자기금(PagIBIG)	⇨ 통합 ⇨	
16단계(1일) - PagIBIG 등록		

- 온라인 결제 시스템 활성화로 납세 절차 간소화
 - 정부는 종업원 10명 이상 고용 기업 대상으로 지정은행인 랜드뱅크 (Land Bank)와 필리핀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 DBP)을 통한 PhilHealth와 PagIBIG의 온라인 납부를 권장하고 있으며 납부횟수를 매달 납부에서 매년 1회로 단축을 추진하고 있음

- 시청의 각 부서에 납부하던 주민세(Community Tax, CTO1에 납부)와 지방세(Local Tax, BPLO2에 납부)는 BPLO에 통합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주 1. CTO, City Treasurer's Office
- 2. BPLO, Business Permits and Licensing Office

○ 시사점 및 전망

- 정부는 현재 기업설립 소요시일이 34일이라고 발표했지만,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업종별 면허 취득까지 고려했을 때 더 긴 시일이 필요함
- 이는 외국기업 투자유치의 큰 걸림돌로 지적되었으므로 정부의 기업 설립절차 개선 프로젝트를 통해 신설기업 수 증가 및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평가 순위의 상승이 전망됨
- 기업설립 절차 간소화의 효과가 투자활성화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뿐만 아니라 발기인 및 이사를 외국 지분에 상관없이 과반수의 필리핀 거주자로 임명해야 하는 등의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함

6 필리핀 현지기업의 법·제도적 애로사항

가. 매년 투자비자 갱신 애로

- 필리핀 법무부는 외국인투자유치기관(BOI, PEZA 등)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에 대해 3년 투자비자를 발급하도록 관련규정 개정하였음
- 관련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인도인들의 불법비자 발급사례를 이유로 1년 투자비자만 발급 중, 이에 따른 현지 기업인의 비용·기간 부담 가중되는 측면이 있음
 - * 비자발급 기간 : 1개월 소요, 소요비용 : 15,000페소(40만원 상당)
 - * 한국의 경우 : 외국인 직원에 3~5년의 투자 비자를 발급



필리핀 법무부 비자발급 규정

Section 12. Validity of 47(a)(2) Visa.-A 47(a)(2) visa issued pursuant to these Guidelines shall be valid for a fixed period not exceeding three years

나. 화학물질 취급절차 변경에 따른 투자기업 불편

- 당초 화학물질 운반 시 필리핀 마약 단속국에 신고를 하면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폭발물 및 화학물질 관리규정」이 제정되어 '15.7.22.부터 필리핀 경찰청장의 승인도 받도록 절차 변경됨
- 절차의 변경으로 기업이 사업상 목적으로 화학물질 운반 시 경찰 호송을 받도록 하여, 화학물질 운반에 필요한 경찰호송 차량을 한국 기업이 직접 섭외하고 호송비용도 납부해야 하는 실정임
- 반도체 관련 한국 투자기업은 빈번히 화학물질을 운반할 때마다 경찰 호송 섭외·비용부담이 매우 큰 상황임

* △△전자, △△△반도체 등 반도체공정이 필요한 한국투자기업 상당수

다. 클락(Clark) 경제구역 투자임대차계약서 독소조항

- 클락개발청은 입주하는 기업과 투자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고정 임차료 이외에 매출의 5~10% 임차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임대차 계약서는 클락개발청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 매출액의 5~10%를 임차료로 납부할 경우 투자기업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 대부분 기업이 적자로 철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런 규정은 다른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수한 계약서 형태임
- 또한 클락개발청의 내부 규정으로 전기 및 수도료 등을 임의로 인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추가 비용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상황임

- 실제 클락개발청에 입주한 우리 기업은 매출액 기준 추가 임차료 규정이 사무화된 조항을 인식하였으나, 2015년부터 클락개발청이 추가 임차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음

라. 프로젝트 오피스 설립규정 미비로 인한 애로점

- 필리핀은 프로젝트 오피스(특정 건설 사업등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그 프로젝트의 시행 지역에 한시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조직)의 설립규정이 미비하여 단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오피스 설립만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반 법인만 설립 가능하며, 이에 법인 설립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됨
- 1년 미만의 단기 사업수행에도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제정, 이사회 개최, 신문 공고 등 16개 절차가 필요(평균 29일 소요)함

7 최근 필리핀 진출 호황 요인



가. 필리핀 클락 자유무역항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 클락 자유무역항지역(Clark Freeport Zone) 입지 및 발전 계획

- 클락 자유무역항지역은 1991년 11월까지 미군 공군기지였으나, 미군 출수 이후 필리핀 내 대표적인 경제특구로 지정됨
 -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1993년 클락개발공사(CDC,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이 설립됨



- 클락은 마닐라 북서쪽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위치, Sbbic-Clark-Tarlac 고속도로(SCTEEx) 이용 시 인근 수빅 자유무역항지역까지 30분 정도가 소요됨
- 자유무역항 지역 내에 클락 국제공항이 있으며, 한국에서 직항으로 약 4시간이 소요되고 아시아나 항공과 진에에 등이 인천, 부산-클락 노선 취항하고 있음

□ 2013년 기지전환개발청(BCDA), 이 지역 내 Green City 프로젝트 추진

- 개발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의 면적은 약 3만5000ha(Metro Manila 전체 면적은 6만3000ha)에 달함
 - ① 정부센터(Government Center) : 모든 행정 절차를 One-Stop-Sh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One-Roof 방식의 통합시스템 구축
 - ② 중심업무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 : ICT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 시스템 도입을 통해 상업 중심지의 역할 수행
 - ③ 교육센터(Academic Center) : 모든 기능을 자동화해 향후에는 집이나 병원에서도 수업 참여 가능
 - ④ 농공산업센터(Agro-Industrial Center) : 인근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작물 재배
 - ⑤ 생태계관광지(Eco-Tourism Area) : 도시 거주민들이 15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등산로 및 관광지 개발 추진

□ 클락개발공사(CDC) 기업 입주 현황

- CDC에 따르면, 2015년 5월 기준 총 774개의 업체가 등록됨
 - 주요 업종은 요식(105개), 기타 제조(76개), BPO(51개), 기타서비스(49개), 소매(42개), 관광 부동산(21개), 무역(21개) 순

- 한국 기업은 약 50개 업체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주요 업종은 영어 교육(12개), 관광 부동산(6개), 건설(4개), 요식(4개), 호텔(2개), 반도체(1개), 기타 순
- 최근 삼본P&E사가 클락자유항 구역에 1억3200만 페소 투자하여 이어폰과 헤드폰, 코드 생산공장 설립 발표
 - 삼본P&E사는 중국에 음향 및 키패드 장치 생산설비를 구축했으며, 한국에는 연구개발 단지, 일본에는 판매법인을 설립함
 - 25년간 임대계약을 통해 동 자유항구역에 설치되는 공장은 오디오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해 팜판기 및 인근 지역으로부터 약 600명을 고용할 계획

□ 클락개발공사(CDC) 비즈니스 비용

1) 임대료

- 산업,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에 적용되는 임대료는 아래와 같음.
 - 산업 및 제조업 : 0.65달러(m²/월)
 - 상업 및 서비스 : 2달러(m²/월)
 - 운영 4년차부터 3년마다 10%씩 인상됨.
 - 임대료는 위치 혹은 건물의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산업 관련 업체에는 지불 금액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함.
 - 일시불 임대료 지불 또는 월간 최저 보장 임대료(MGL, Monthly Minimum Guaranteed Lease) 중 선택할 수 있음.
 - 월간 최저 보장 임대료(MGL)란 매월 임차료에 대한 최저보장 가격 조건을 의미함. 예를 들어, 25년간 혹은 50년을 임차했다면 토지의 가격을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0.5달러(m²/월), 4~8년차까지 0.7달러(m²/월)로 보장함
- 상업 및 관광업 관련 업체는 월간 최저보장 임대료(MGL) 외에 추가로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총 매출의 일정 비율과 임대 수익의 일정 비율을 납부해야 함



- 만약 업체가 건물 혹은 토지를 재임대(Sub Lease)했을 경우 건물 혹은 토지 소유주에 임대비를 납부하고 CDC에 총 매출에 대한 일정 비율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2) 기타 비용

구 분	비 용	비 고
최저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농업 분야(제조회사, 면세점, 호텔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자산 3천만 페소 이상인 회사 : 349페소/일 - 총 자산 3천만 페소 미만인 회사 : 342페소/일 ○ 소규모 소매/서비스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자 16명 이상 회사 : 338페소/일 - 노동자 16명 미만 회사 : 324페소/일 	2014년 11월 30일 기준
전 기	7,1833페소/kWh	- 필리핀전력공사 (NAPCOR)로부터 직접 공급
통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용 : 936.41페소/월 ○가정용 : 542.19페소/월 ○ 국내 전화 : 3.7페소/분 ○국제 전화 : 0.36달러/분 	
상하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상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0~10 cu.m : 209.70페소 -11~20 cu.m : 22.58페소 -21~30 cu.m : 23.91페소 -31 cu.m 이상 : 25.23페소 	

□ 클락개발공사(CDC) 인센티브

<조세 인센티브>

- 30% 법인세율 대신 총 매출이익(총 매출-직접비)의 5%를 납부
 - 총 매출이익의 70% 이상이 수출에서 발생 시 수혜 가능
- 기업이 납부하는 총 매출이익을 산출할 때 차감할 수 있는 직접비 내역은 다음과 같음.

<총매출이익 산출시 업종별 차감 가능한 직접비 내역>

업종	직접비 내역
무역업	매출원가(기초 재고액+당기 순매입액-기말 재고액)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노무비(제품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공장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노무비), 제조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비 - 생산관리자 임금 - 상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자재비 - 생산에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 및 연료 -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 및 설비의 감가상각비 - 생산에 사용하는 기업 소유 건물의 감가상각비 - 생산에 사용하는 건물, 설비, 창고 - 기초 재공품, 기말 재공품 감소를 환산한 비용 - 생산에 사용하는 건물, 설비, 창고의 임대료와 공공요금(전기세, 수도세 등) - 생산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수수료(이전에 출자되지 않은 비용)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노무비, 등록된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교육훈련비 - 서비스관리자 임금 - 직접자재비 - 서비스 활동을 창출하는 기계 및 설비의 감가상각비 - 서비스 활동을 창출하는 기업 소유 건물의 감가상각비 - 서비스 활동을 창출하는 건물, 설비, 창고의 임대료와 공공요금(전기세, 수도세 등) - 등록된 서비스 활동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수수료(이전에 출자되지 않은 비용)
금융업	없음



나. 기타 인센티브

- 자본 설비와 원자재에 대한 수입관세 및 관련 세금(소비세·부가세 등), 부동산세가 면제
- 업체는 필리핀 내에서 판매 및 기타 활동으로 전체 소득의 30%까지 소득 창출이 가능
- 외국인 특별 비자가 발급됨
 - 수빅 - 클락 워킹비자(SCWV, Subic-Clark Working Visa), 수빅 - 클락 투자자비자(SCIV, Subic-Clark Investor's Visa) 발급됨
- 언론 등 특수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 외국기업이 100% 지분 소유 가능

□ 클락개발공사(CDC) 등록 및 사업 운영 시 주의사항

1) 인센티브 수혜 시 주의 사항

- CDC, SBMA, PEZA의 인센티브는 거의 동일하지만 현재 CDC는 부가세 면세권(Tax exemption) 발급을 쉽게 내주지 않고 있음
 - 예를 들어, 무역업의 경우 일정 규모의 창고시설 보유 시 면세권 발급이 가능함
- 업종별 인센티브 수혜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 설립 및 투자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 일부 법인은 법인세 5% 외의 기타 인센티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유통업의 경우 기준 이상으로 제품을 클락 외부로 반출해 총 매출이익의 5% 혜택 또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 유용한 인센티브가 있다면, 일정금액 이상 투자할 경우 법인차량 면세를 허용하고 있음

- 인센티브를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부터 적법하게 외국환 신고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재산권 및 인센티브 보호에 유리함

2) 클락개발공사 등록 및 사업 운영 시 주의사항

- CDC는 법인 설립은 쉽게 허가하는 편이나 법인이 CDC와의 토지 임대계약 등 일정 계약을 요할 경우, 해당 법인의 내실(한국 모기업 자본금, 재무제표 등) 및 사업성에 대해 까다롭게 검토함
 - 이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 자금력 및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준비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함
-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CDC의 충분한 도움과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초반 CDC에 법인의 모기업 혹은 소유주에 대해 알리고 해당 사업을 이해시키는 것이 CDC와의 관계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임
 - 또한 규정에 해박하고 CDC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변호사에게 현지 계약서 검토, CDC와의 협상, 인센티브 혜택 논의 업무를 맡기는 것이 유리함
- 비용 처리 시 주의사항
 - 총 매출이익 산정 시 업종의 특성을 잘 이해해 영수증 관리 및 회계 처리를 해야 함.
 - 특히 원천징수와 관계되는 Withholding Tax(1601C) 및 Expanded Fee (1601E) 세금을 간과해 세금 신고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모든 하도급 및 직원 월급이 이에 해당됨

3) 시사점

- 클락 자유무역항지역은 필리핀 정부의 Clark Green City 개발 계획과 최근 발표된 일본의 대규모 투자 계획 등으로 볼 때 향후 발전 여지가 높다고 판단됨.

- 따라서 이미 필리핀에 진출한 기업은 CDC 및 해당 지역 진출 외국 기업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클락개발공사(CDC)는 BOI(Board of Investments)이나 PEZA(Philippines Economic Zone Authority) 등 다른 투자유치 기관과 비교 시 운영된 기간이 짧은 탓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 이에 진출을 고민하는 한국 기업은 CDC의 규정과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로 진출 여부를 타진할 필요가 있음

나. 필리핀 건설업, 외국기업에 일반건설 면허 개방 예정

□ 신규 건설면허 등급 Quadruple A (AAAA) 도입

- 필리핀건설면허발급위원회(PCAB)는 외국기업에 대한 건설면허 개방을 위해 기존 7등급(AAA, AA, A, B, C, D, Trade)의 건설면허 등급에 AAAA 등급을 신설하는 건설면허 제도 변경을 추진 중이며, 2016년 5월 하위 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 개정안에 따르면 AAAA 등급을 받은 외국기업은 독자적으로 일반 건설 면허를 받을수 있게 되어 향후 필리핀 내 민간건설 프로젝트와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단독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임
 - * 외국기업 단독 참여가 허용되는 프로젝트 규모는 추후 제한될 수 있음
- 개정 전에는 외국인 지분 40% 미만의 내국법인에만 일반 건설업 면허를 발급하여 사실상 외국법인은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받더라도 제한적으로 필리핀내 민간건설 프로젝트(사업 규모 제한)와 정부 건설 프로젝트(ICB, BOT, PPP)에만 참여할 수 있었음
 - ICB(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 국제 경쟁 입찰, 응찰자의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입찰

- BOT(Build-Operate-Transfer) :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여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 민관협력 방식, 개발도상국에 개발지원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접근 방식

□ 필리핀 건설면허 현황

○ 필리핀 건설면허 소개

- 필리핀에서 건설업은 필리핀건설면허발급위원회(PCAB)을 통해 프로젝트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면허)등급을 취득해야 함

<건설 면허 종류>

종 류	내 용
일반면허	- 민관, 관급 건설 프로젝트 수행가능 - 필리핀 국적자 지분 보유 비중이 60% 이상인 필리핀 기업만 발급
특별면허	-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국제경쟁입찰 방식의 외국차관 지원 프로젝트 수행 가능 - J/V, 컨소시엄, 외국 건설기업에 발급

<공사 종류 및 면허 등급>

종 류	일반 토목 (General Engineering)	일반 건축 (General Building)	전문 건설 (SPECIALTY)
범 위	전문 엔지니어링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공사 - 도로, 철도, 공항, 관개	일반 건축 공사 - 일반 건물, 공장 하수 처리장, 공원 등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소규모 공사 - 지하굴착, 도로포장, 준설 등
등 급	공사 종류에 따라 AAA, AA, A, B, C, D, Trade(전문 건설만 해당)등 총 7등급으로 구분		



종 류	일반 토목 (General Engineering)	일반 건축 (General Building)	전문 건설 (SPECIALTY)
최소납입 자 본 금	등급에 따라 4만5,000페소(Trade, 약 945달러)부터 9,000만 페소 (AAA, 약 189만1,600달러) - 필리핀 내 외국법인의 최소 납입자본금은 20만 달러		
AMO	AMO(Authorized Managing Officer)는 법인장 혹은 현장소장으로 면허 발급을 위해 반드시 고용해야 함 - 2년 이상 건설 관리·감독 경력 보유하고 PCAB이 주관하는 AMO 세미나(2일), 건설안전보건(COSH : Construction Safety and Health) 세미나(40시간) 참석, 시험과 인터뷰 통과 필수		
STE	STE(Sustaining Technical Employee)는 공사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로 등급별 최소 경력과 고용한 STE의 총 경력합계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예를 들어 AAA 등급은 최소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를 고용하여 경력합계가 60년을 넘어야 함		

○ AAAA 등급 취득 요건

- PCAB은 AAA의 상위 등급으로 AAAA를 추가하여 총 8등급을 운영할 계획임
- 최소납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취득요건은 AAA와 같음
- 수주 가능 공사가 제한됨

<AAA 등급 취득 요건과 수주 가능 공사 범위>

취득 요건	법인형태	필리핀에 등록된 100% 외국 지분으로 구성된 법인
	납입자본금	10억 페소 (약 2,089만3,553달러) -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최소납입자본금 송금 내역 확인서 필수
	AMO&STE	AAA 등급과 동일하게 AMO와 STE 고용
공사 범위	일반 토목 (General Engineering)	공사 규모 30억 페소(6,293만5,000달러) 이상
	일반 토목 (General Building)	공사 규모 50억 페소(1억489만1,701달러) 이상

□ 시사점 및 전망

○ 한국 건설 기업의 안전한 진출 방안 확보

- 그동안 한국 건설기업의 일반건설면허를 필요로 하는 민간 건설프로젝트 (민자 발전소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 40% 미만의 법인을 설립하여 일반 건설면허를 발급받은 후 참여하였음
- 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 미확보에 따른 이익배당, 기성금 수령 등에 불편한 점이 많았음
- 또한 상장사만이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기 때문에 실제 합작 대상 현지기업이 비상장사일 경우 재정상태 확인이 어려워 외국계 건설사들은 결국 현지 건설사와의 합작보다는 경영권 확보가 용이한 Dummy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가 빈번함

* Dummy : 외국기업이 전체 자본금을 투자하지만 실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필리핀인을 주주로 등록하여 60% 이상의 필리핀 지분을 설정, 필리핀 기업으로 등록하는 방식. 필리핀 정부는 Anti-Dummy 법에 의거 이를 처벌하고 있음

- 이에 기술력과 자본력을 보유한 한국기업이 AAA 등급 취득하여 단독으로 민간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안전하게 건설업을 영위할 방안이 확보되었음

○ 진출 가능한 건설 분야 확대

- 필리핀은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등 서비스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오피스 빌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개발 지역(민다나오 등)의 주택 및 쇼핑몰 등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음. 이에 대한 한국 건설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중소기업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

- 동 등급 취득을 위한 최소납입자본금과 수주 가능 공사의 한도액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 PCAB 관계자는 중소 규모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이미 많으므로 대형 외국건설기업 유치를 위해 동 등급을 시행한다고 밝힘



다. 필리핀 진출시 불이익은 옴부즈만 활용

□ 필리핀 옴부즈만 개요

○ 목적

- 감사원과 유사한 옴부즈만 오피스(Office of the Ombusman)는 2014년 6월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하는 투자 옴부즈만팀(IO : Investment Ombuseman Team)을 설립함

○ 지원내용

1) 대상 : 필리핀 공무원(공기업 종사자 포함)

2) 범위

- 사업체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정부 및 공공기관 행정서비스 지연 및 위법행위
- 면허·허가·증명서 발급, 선적 및 화물 출고, 수수료 등 사업 관련 비용업무와 관련 공무원의 부당한 요구
- 자격 미달 업체에 사업 관련 면허, 허가, 증명서 불법 발급
- IO의 권고 및 지시사항에 대한 공무원의 불이행 및 이행 지연

3) 처리방법

- 유선, 이해관계인 소환 및 회의 개최, 직접 방문 등 알맞은 방법으로 사안 파악 및 개선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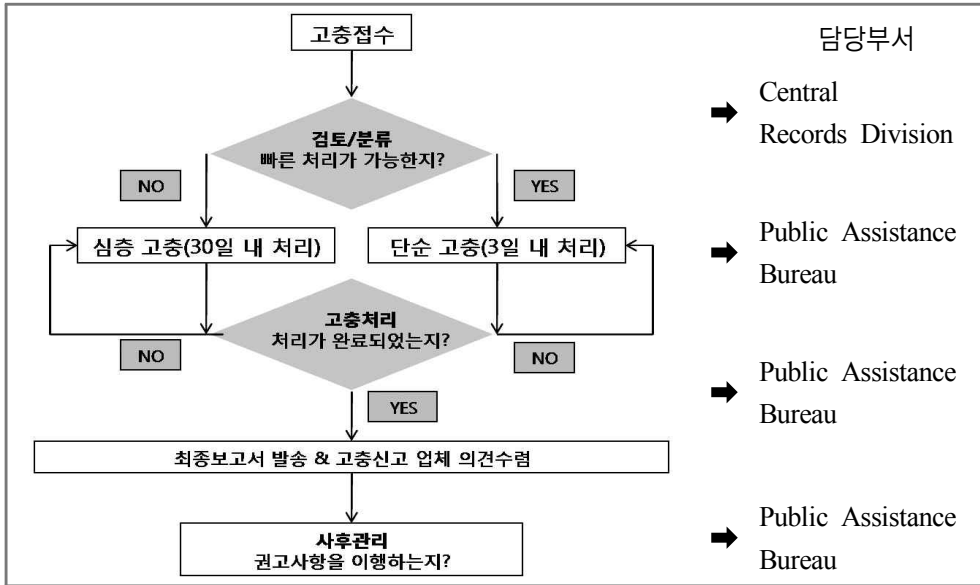
□ 서비스 및 절차

① 일반/심층 고충처리(RAS : Request for Assistance)

가. 범위

-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형사/행정 소송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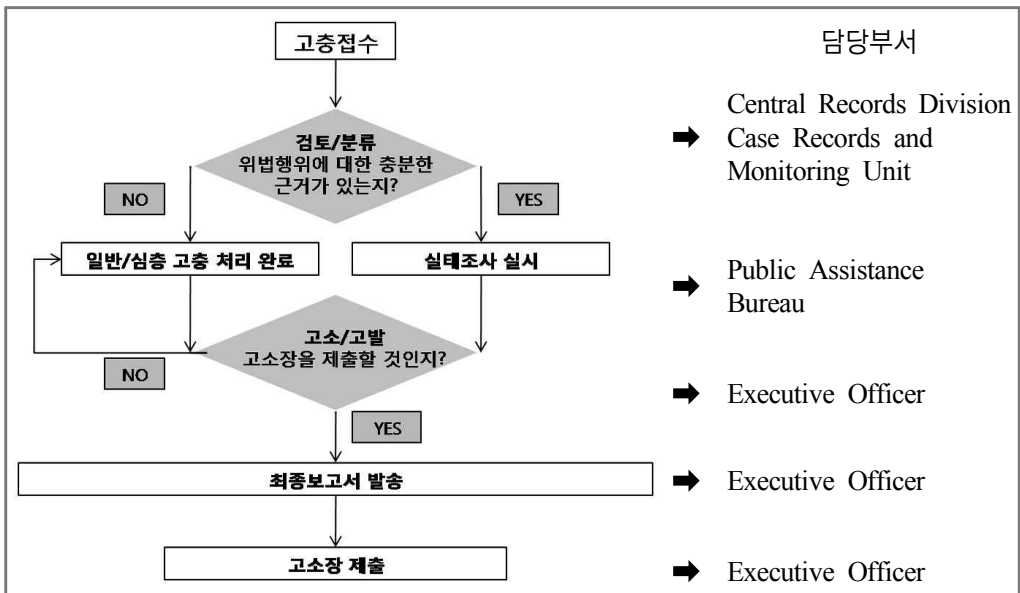


② 실태조사(Fact-Finding Investigation) 및 행정·형사·고소·고발

가. 범위

- 내사가 필요한 충분한 근거를 발견한 경우

나. 절차





□ 고충처리 사례

- 업체명 : Steel Asia Manufacturing Corporation (Steel Asia)
- 신고대상 : 환경자원부(DENR :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 고충사항 : ECC (Environment Compliance Certificate) 발급 지연
 - ECC :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는 ECC를 취득해야 함
- 세부내용
 - 이 회사는 불라칸(Bulacan)주 플라리델(Plaridel) 지역에 분쇄소(Steel rolling mill plant)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10월 DENR에 ECC 신청서 제출
 - 분쇄소 건설 예정 지역 교구의 주교는 대통령에게 이 시설이 앙앗-마심(Angat-Massim)강을 오염시켜 주변 논밭과 농가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고 청원함
 - 이에 DENR은 다른 지역으로 시설 이전을 요청했으나, Steel Asia는 친환경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 이미 용지를 구매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표명함
 - 이해당사자 간 분쟁으로 ECC 발급이 2년 동안 지연됨
- 처리사항
 - 옴부즈만 오피스는 DENR에 지연 사유를 문의하고 RA6713(Code of Conduct and Ethical Standard for Public Officials and Employee)에 의거한 발급기한 준수 촉구
 - * RA6713 : 공무원 윤리강령 법안
 - 2016년 1월, DENR 허가발급 책임자와 Steel Asia 소환 회의 주선
 - 2016년 5월, DENR의 ECC 승인 및 발급 완료 예정

□ 고충 접수방법 및 연락처

- 방법 : 문자, 전화, 이메일, 서신, 방문, 홈페이지
- 연락처
 - 홈페이지 : www.ombusman.gov.ph
 - 이메일 : IO@ombusman.gov.ph
 - 문자 : 63-926-699-4703
 - 본부 : 63-2-926-8720
 - Luzon 지역사무소 : 63-2-926-8794
 - Visayas 지역사무소 : 63-32-412-5341 / 63-32-416-6134
 - Mindanao 지역사무소 : 63-82-221-3938 / 63-927-549-6241 / 63-918-915-6279

□ 필리핀 진출기업 시사점

- 필리핀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와 비효율적 행정은 외국인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꾸준히 지적됐음에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외투기업의 고충처리 지원제도가 미비했으나,
 - 이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 ombudsman 서비스가 신설됐으므로 한국 투자 기업은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V. 부 록

1. 2016년 필리핀 투자환경 및 동향 / 174
 2. 한국 기업진출 현황 / 181
 3. 세관 현대화·관세법 개정 / 183
 4. 자산규제강화 규정 신설 / 185
5. 한국-필리핀 조세조약 전문 / 186
 6. Anti-Dummy Law 원문 / 207



1 2016년 필리핀 투자환경 및 동향

- 북유럽기업협의회(Nordic Business Council of the Philippines)가 작성한 2016년 필리핀 투자환경보고서 중 투자진출 유망분야 및 투자진출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음

□ 주재국 투자진출 유망 분야

1) IT-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

※ 동 보고서에서 BPM은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와 동일한 의미로 일부 단락에서는 BPO와 혼용.

- IT-BPM 산업은 2000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당지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으로 2014년 184억불의 매출을 기록함으로써(2013년 대비 18.7% 성장), 필리핀 경제총생산의 6%를 기록하였고 2016년에는 250억 달러 수입을 예상하고 있음.
- 필리핀의 음성(voice) BPO 산업(주로 콜센터)은 세계 1위, 비음성(non-voice) BPO 산업은 세계 2위를 기록함.
- 필리핀 정부는 마닐라뿐만 아니라 바기오, 다바오, 일로일로 등 다른 도시에 대한 동 산업 투자를 독려하고 있으며 직업교육기술개발청(TESDA)을 통해 동 산업에 인력 공급을 위한 예산과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2) 재생에너지 산업

- 지속적인 경제 성장 및 인구증가로 인해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처하는 것은 필리핀 정부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이며 2008년 재생에너지 법령(RA 9523)을 제정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국가재생에너지로드맵을 발표, 지열에너지와 수력에너지를 현 수준 대비 각각 75%, 160% 확대 공급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277MW 추가 증설하며, 필리핀 최초로 해양에너지 시설을 개발하기 위하여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할 계획

3) 건설 및 인프라 산업

- 동 산업은 민간 건설 및 정부의 PPP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16년 마닐라 내 300개 이상의 콘도 건설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5.11월 현재 11개의 대형 인프라 PPP 사업이 확정되었음.
 - LRT 1호선 연장(649억 페소), Cavite-Laguna 고속도로(555억 페소), Mactan-Cebu 국제공항(175억 페소) 등
- 2016년 대선으로 인해 동 산업이 일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나 에너지 및 공익산업 부문 등의 인프라 개발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2019년까지 연평균 7.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4) 의료 산업

- 필리핀 보건부와 과학기술부는 2014-2020 필리핀 e-Health 전략 프레임워크 및 계획을 발표, 의료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의료분야 ICT 인프라 구축, 국가지원 병원에 대한 의료장비 개선 및 국가 전자 공공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계획
- 또한, 민간 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하여 의료분야 3개 PPP산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계획의 일부인 의료관광 또한 외국 은퇴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정부는 동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특별 비자를 발급하고 있음.

5) 제조업

- 제조업은 필리핀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제조업 부문에서 부가가치 30%, 일자리 창출 15% 증대를 목표로 정부는 제조업 재도약 프로그램(Manufacturing Resurgence Program)을 마련하였고 이를 위해 150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
- 최근 외국기업들이 필리핀경제특구(PEZA)의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필리핀이 아세안의 제조 허브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에 더해 필리핀의 낮은 임금은 최근 임금이 급상승한 중국 등에 비해 경쟁력 있는 요인으로 평가됨

□ 투자진출시 고려사항

1) 경제 규제

- 1987년 제정된 필리핀 헌법은 광업, 농업, 임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 한도를 40%로 제한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다만, 16대 상하원에서 경제 자유화를 위한 헌법 개정 추진에 대한 발의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음.

2) 인프라

- 필리핀은 지난 10년간 인프라에 대한 저투자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제한 되어왔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최근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 따르면 인프라 부문에서 선진 아세안 6개국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

3) 관료주의

- 사업허가, 면허발급 및 승인 등에 중복적이고 복잡하며 서로 상반되는 규정들과 절차들은 투자가 지연되고 투자 의욕이 저해되는 주요 원인. 다만, 최근 국가경쟁력의회(NCC)는 투자옴부즈맨을 설립하여 절차 간소화를 추진.

4) 부패

- 부패가 여전히 만연하지만 옴부즈맨 사무소 및 사법부는 공무원에 대한 부패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투명성은 2011년 194위에서 2013년 94위로 대폭 상승하였음.

5) 낮은 외국인직접투자

- 필리핀은 헌법상 투자 제한 법규 등으로 인해 아세안 선진 6개국보다 뒤쳐진 외국인직접투자 성적을 기록해왔음. 다만, 2015년 필리핀 경쟁법 제정 등 최근 경제자유화를 위한 정책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2016년 상반기 필리핀 외국인 투자 동향

- 2016년 상반기 대필리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한 13억9000만 달러 기록함
 - 7대 투자유치 기관별 승인 투자규모는 필리핀 경제특구청(PEZA, 45.0%), 투자청(BOI, 44.9%), 수빅만관리청(SBMA, 6.4) 순임
 - 최대 투자를 유치한 PEZA는 전년 동기 대비 22.0% 감소한 6억2400만 달러 기록, 그러나 BOI는 전년 동기 대비 125.0% 증가한 6억22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5.0% 증가함

- 그 외 SBMA의 투자유치 규모도 전년 동기 대비 819.2% 증가함. 특히 투자유치 규모가 최근 몇 년 동안 미미했던 이슬람-민다나오투자청 (BOI-ARMM)이 투자유치에 성공했음

<2016년 상반기 필리핀 투자유치기관별 FDI 통계>

(단위 : 천 달러, %)

기 관	승인된 FDI		비 중	증 감 률
	2015년 상반기	2016년 상반기		
AFAB	2,143	3,216	0.2	50.1
BOI	276,804	622,814	44.9	125.0
BOI-ARMM	0.0	21,667	1.6	
CDC	111,600	25,710	1.9	-77.0
CEZA	9,036	2,153	0.2	-76.2
PEZA	799,666	624,026	45.0	-22.0
SBMA	9,640	88,612	6.4	819.2
합 계	1,208,890	1,388,199	100.0	14.8

주1 : 비중은 2016년 상반기 기준, 증감률은 2015년 상반기 대비

주2 : AFAB : 바타안(Bataan)자유무역청, CDC : 클락(Clark)개발공사, CEZA : 카가얀(Cagayan)경제특구청

□ 국별 대필리핀 투자동향

○ 독일, 대필리핀 투자 크게 증가함

- 독일은 최근 몇 년간 필리핀 투자액이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2015년 하반기부터 필리핀 투자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2016년 상반기 기준 6위로 순위가 급상승함

○ 네덜란드와 한국의 투자 감소

- 2014년까지 필리핀 투자 순위 10위권에 머물던 네덜란드의 투자가 2015년부터 증가하면서 1위를 기록했는데, 2016년 상반기에는 약간 감소했으나 꾸준히 필리핀에 투자가 늘고 있음

- 한국은 2015년 상반기 대비 17.6% 감소했는데, 2015년 필리핀 금융업이 외국인에게 개방되면서 우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증가해 일시적으로 투자가 급증한데 따른 기저효과가 그 원인으로 분석됨

<국별 대필리핀 투자 동향>

(단위 : 천 달러, %)

순위	국 가	2015년	2016년 상반기	비중	증감률
1	싱 가 포 르	350,358	262,874	18.9	26.3
2	네 델 란 드	1,723,471	245,614	17.7	-34.8
3	일 본	1,139,815	238,286	17.2	2.3
4	미 국	452,928	139,163	10.0	86.6
5	한 국	482,617	117,441	8.5	-17.6
6	독 일	63,847	65,009	4.7	14,224.8
7	버 진 아 일 란 드	117,201	61,793	4.5	11.0
8	영 국	86,025	54,796	3.9	72.1
9	태 국	9,352	48,384	3.5	-
10	케 이 먼 제 도	92,262	24,291	1.7	-
	기 타	683,046	154,840	11.2	80.4
	합 계	5,108,660	1,388,199	100.0	14.8

□ 업종별 투자

- 전기·가스 공급서비스, 건설, 행정·지원서비스, 운송·저장 투자 증가함
 - 2016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필리핀 행정부가 바뀌었는데, 전·현 정부 모두 인프라 확충을 최대 목표로 하여, 관련 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함
- 농·임·수산업, 부동산업, 정보통신업, 제조업 투자 감소함
 - 잦은 태풍의 영향으로 농·임·수산업의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동산업의 감소폭도 전년 동기 대비 44.3%로 감소폭이 큼.
 - 2012년 이후 광산업 신규 면허 발급이 중단되면서 2년 연속 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전무한 상황임

<산업별 대필리핀 투자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업종	2015년	2016년 상반기	비중	증감률
1	제조업	2,803,168	501,297	36.1	-22.2
2	행정·지원서비스	476,887	242,222	17.4	130.4
3	전기·가스공급서비스	968,517	218,082	15.7	1,373.6
4	건설	76,319	171,356	12.3	215.1
5	숙박·식당서비스	117,722	83,242	6.0	-10.3
6	부동산업	205,369	50,980	3.7	-44.3
7	농·임·수산업	177,247	50,833	3.7	-52.6
8	운송·저장	57,195	41,535	3.0	103.9
9	정보통신	65,489	17,269	1.2	-27.3
10	도소매	35,788	6,155	0.4	-4.0
	기타	150,870	10,698	0.8	-77.8
	합계	5,108,660	1,388,199	100.0	14.8

□ 시사점

○ 2014년 이후 대필리핀 FDI 증가하고 있음

- 전임 아퀴노 정부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해 오면서, 2014년 이후 대필리핀 FDI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전통적인 대필리핀 투자를 꾸준히 했던 한국, 미국, 일본 외에 독일, 네덜란드 등이 필리핀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2016년 하반기 이후 전망

- 신임 두테르테(Duterte) 정권이 부임하면서 오래 동안 유지됐던 친미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친중·친일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의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음.

* 2016년 11월 현재 하반기 동안 총 3억 달러 규모의 자본 유출됨

- 그러나 중국, 일본과 정상회담 이후 투자 지원을 약속 받아 중국·일본 투자가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우리 기업의 최적의 투자처는
 - 필리핀이 현재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 선결과제로 삼아, 2017년 인프라 예산을 증액하면서 관련 프로젝트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건설업, 전기, 숙박 등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자동차산업 부활프로그램(CARS)을 통해 자동차 제조 관련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제조업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2 한국 기업진출 현황

- 현재 필리핀에는 한진중공업, 현대자동차, 삼성전기, LG전자, 한화 등 한국의 주요기업들이 대부분 진출해있으며, 한진중공업은 보니파시오 지역에, 삼성전기생산법인은 라구나 지역에, 한화는 마카티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중에 있음
- 2014년 대상에서 현지기업인 RICOR와 합작으로 카가얀데오로(민다나오) 지역에 옥수수를 주원료로 한 전분당(물엿) 제조공장을 설립하였으며, 대상에서는 설비 및 기계장비에 총200억원을 투자하였음
- 최근 필리핀 소매업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미스터피자(MPK 그룹)는 2015년 9월 마닐라 마카티에 소재한 그린벨트 쇼핑몰에 1호점을 개점, 5월 로빈슨몰에 2호점, 11월세부에 3호점을 개점하여 매장을 확장하고 있음
- 건화는 올해 세부간선버스시스템(Bus Rapid Transit System) 프로젝트를 단독으로 수주하여 32개월동안 설계(8개월), 감리(24개월) 업무를World Bank를 재원으로 수행하고 있음

- 2014년 필리핀 은행법 개정으로 외국기업에 은행시장이 개방되면서 신한, 기업은행이 올해 마닐라에 지점을 설립하고 영업을 개시함
-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휴대폰, 보안장비 등의 소프트웨어개발사 (R&D), BPO, 소매업 등이 필리핀의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임금 및 영어 구사능력 등을 이유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음

<필리핀 진출 한국기업 리스트>

회 사 명	모 기 업	업 종	제 품 명	합작비율	종업원수	진출시기
대덕필리핀	대 덕 GDS	제조업	전자기기	외투법인	약 1,000명	1996
삼 성 전 자	삼 성 전 자	유통업	가전기기	외투법인	약 200명	1996
삼 성 전 기	삼 성 전 기	제조업	전자기기	외투법인	약 3,000명	1997
선진필리핀	선 진	제조업	동물사료	외투법인	약 70명	1997
대림필리핀	대 림	건설업	건 설	현지법인	약 100명	-
포 스 코	포 스 텔	제조업	철강제품	외투법인	약 200명	2008
외 환 은 행	외 환 은 행	금융업	금 융	외투법인	약 20명	1981
한 국 전 력	한 국 전 력	발전업	발 전	외투법인	약 300명	1995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조선업	조 선	외투법인	약 2만명	2006
한화마닐라	한 화	무역업	무 역	외투법인	약 10명	1983
CJ GLS	CJ GLS	물류업	물 류	외투법인	약 100명	2006
대 상 리 코	대 상	제조업	식 품	합작법인	약 50명	2013
파 고 다	PSD SCC	교육업	전화영어	합작법인	약 100명	2014

- 필리핀의 TOP 100 기업순위 중 한국기업은 5개 기업 포함됨 (13.12월 필리핀 TOP 1,000기업순위 기준)
 - 한진중공업(조선, 33위, 364억4,00만페소(약8억1,00만달러),
 - 삼성전자(생산, 37위, 338억4,00만페소(약7억5,000만달러),
 - 삼성전자(판매, 56위, 265억3000만페소(약5억9,000만달러),
 - 삼성전기(생산, 69위, 223억2,000만페소(약4억9,000만달러)
 - 롯데칠성이 투자한 Pepsi-Coal Products Philippines(제조, 195억6,000만페소 (약4억3,000만달러)

3 세관 현대화 · 관세법 개정

세관 현대화 · 관세법(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RA 10863) 개정

- 필리핀은 2016.5.30. 세관 현대화 · 관세법(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RA 10863) 개정안을 2016.5.30. 최종 승인하고, 2016.6.16. 발효함

□ 주요 개정사항

- 특정 소비 제품들의 약식 신고(informal entry clearance) 허가
 - 5만페소 이하의 본선인도(Free on Board) 또는 운송인인도조건(Free Carrier Arrangement)에 해당되는 상업성 제품(개정전 2천페소 또는 500볼로 제한)
 - 소량의 개인 소유 제품
- 세관신고 기간 변경
 - 관세청 통지 15일 이내에 세관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15일 추가 연장 가능(개정전 30일 지급)
 - 평가결과 고지 15일 이내에 관세 납부를 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 가능
 - 관세 지불 후 30일내 물품 수령 가능(개정전 15일내로 제한)
- 임시세관신고(provisional goods declaration)제도 도입
 - 수입자가 국경에서 납부해야하는 관세 관련,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45일내(45일 추가 연장가능) 제출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지불후 제품 선수령 가능
- 세관 모든 절차 자동화
 - 세관신고, 평가, 납세, 물품 인도 등 수입 및 수출의 모든 절차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
 - 자동화실시로 세관보세창고의 물품의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가능

-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AEO) 제도 도입
 - 저리스크 및 규율 준수 업체에 대해 “우수공인업체” 인가를 하고 동 업체들에 대해서는 빠른 절차(fast lane) 허용
- 압류품 또는 몰수품 상환 가능
 - 경고명령(Alert Order)이 발행 시에만 압류 또는 몰수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 완료 필수
 - 부패하기 쉬운 물품에 대한 각 절차 소요시간 단축
 - 수입자는 부패성 물품을 임치제도(escrow)를 이용하여 판매 가능
 - 수입자는 압류품 또는 몰수품에 대해 최종 단계전에 관세 지불 또는 상환 가능
- 국가재난사태 선포시, 구호물품 관세 및 세금 감면
 - 구호물품은 △임시 세관신고, △사전도착, △추가 비용 지불없이 운영 시간 이외의 통관신고, △특수 상황 이외 검사 미 실시 등 허용
- 관세 및 세금 납세 후 3년 이내에 사후감사 실시 및 수입자와 관련 기관들의 기록 검토 가능 권한 부여
- 통과(transit) 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법 명시
 - 소비용 물품은 도착 항구에서 관세 지불
 - 자유지역(free zone) 및 보관용 물품은 세금부과 지역 도착시 관세 지불
- 화물 검사 방법 투명성 확대
 - 검사시 화물 소유자 또는 대표자 동행 가능
 - 엑스레이 등 비해체(non-intrusive) 기술 도입
 - 물리적 검사는 특이사항이 있거나 요청 시에만 실시
- 관세청 근무자의 근무 조건 변화
 - 평가 담당 관세청 근무자는 최대 3년 이상 평가 업무 불가
 - 추가 수당은 관세청 이외 제3자로부터 수령 불가
 - 관세청 공무원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4 자산규제강화 규정 신설

자산규제 강화 규정 신설 (Revenue Memorandum Order No. 26-2016)

□ 2016.6.13일 필리핀 국세청은 자산규제 강화 관련 규정 신설함

- 필리핀 국세청(BIR)은 자산 거래 또는 이전시 당사자의 실제 재정 능력 등을 조사가 가능케 하는 규정을 제정함
- 당해 규정은 부동산 및 비상장 주식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특별원천징수세가 발생하는 거래가 적용 대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 및 해외이주노동자는 자산 거래시 연 임금을 기재하고 자산 취득에 대한 이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함
- 당해 규정에 따르면, 매매후 새로운 등기 및 세금 완료 신청시 국세청이 감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자산취득자에게 재정능력이 없다고 밝혀질 경우 신청자에게 조사권한서(letter of authority)가 통지되나, 국세청 회계 감사가 실시되어도 거래자체를 막을 수는 없음
-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세무협회(TMAP)는 위 조치가 세무당국에 과도한 재량권을 주고 있으며 납세자를 잠재적 사기범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차기 정부에 이번 규정을 폐지토록 건의하겠다고 필리핀일간지에 밝힘

5 한국 - 필리핀 조세조약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체결(1984년 2월 21일 서울에서 서명, 1986년 11월 9일 발효)

제 1 장 협약의 범위

제 1 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에게 적용된다.

제 2 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필리핀에 있어서는 필리핀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이하 “필리핀의 조세”라 한다)

2. 본 협약은 앞으로 현행 조세에 추가하여 또는 현행 조세에 대체하여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어떠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 세법에서 이루어진 실질적인 변화를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정 의

제 3 조 【일반적 정의】

1.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이라 함은 해저 및 하층토와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앞으로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토를 의미한다.

- 나. “필리핀”이라 함은 필리핀공화국을 의미하며,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필리핀공화국을 구성하는 영토를 의미한다.
-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필리핀을 의미한다.
- 라. “조세”라 함은 한국의 조세 또는 필리핀의 조세를 의미한다.
- 마. “인”이라 함은 개인, 유산재단, 신탁재단,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 아.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되, 동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제지점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 (1) 일방체약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모든 개인
 - (2) 필리핀에 관하여는 필리핀의 법에 의하여 창립, 조직 또는 설립된 모든 법인, 조합 또는 단체
 - (3) 한국에 관하여는 한국의 유효한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조합 또는 단체
-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 (1)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 (2) 필리핀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2. 일방체약국이 본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이 적용되고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에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가진다.

제 4 조 【거주자】

1. 본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서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경영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는 그가 일상적으로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다. 동 개인이 양 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국적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라. 동 개인이 양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동인은 동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제 5 조 【고정사업장】

1. 본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가. 경영장소
 - 나. 지점
 - 다. 사무소
 - 라. 공장
 - 마. 작업장
 - 바. 광산, 유전 또는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 사. 판매장으로 사용되는 구내, 및
 - 아. 타인을 위하여 저장시설을 제공하는 인과 관련된 창고

3. 가. 건축장소, 건설·설비 또는 조립공사 또는 이들과 관련된 감독 활동은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 나. 기업이 고용인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제공하는 고문용역을 포함한 용역 제공은 그러한 성질의 활동이 일방체약국내에서 12개월중에 합계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또는 제 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 다.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는 6개월이상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 전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가.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한 시설의 사용
 -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유지
 - 다. 타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유지
 - 라. 그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 마.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및 바. 가. 에서 마. 까지의 세항에서 언급된 활동의 복합된 활동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5.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대표하여 다음을 행하는 경우에는 일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 가. 그의 활동이 본조제4항의 규정에 제한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가 일방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고 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또는
 - 나.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그 기업을 대표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정기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일방체약국에서 상시 보유하는 경우

6. 일방체약국의 보험기업이 타방국에서 독립된 자격을 가진 대리인이 아닌 고용인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타방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며 타방국에 소재하는 피보험물을 보증한다면, 동 보험기업은 타방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단, 재보험은 예외로 한다.
7.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그들이 사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중개인, 일반 위탁 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의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기업은 동 체약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기업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대리인은 본 항에서 의미하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 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제 3 장 소득에 대한 과세

제 6 조 【부동산 소득】

1.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함)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유동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독립적 인적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한다.

제7 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인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그것이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이윤이 본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 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중 보다 적은 것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동 일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총수입금액의 1.5%
 - 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제3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동일류의 이윤에 부과되는 필리핀의 가장 낮은 세율

제 9 조 【특수관계기업】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경영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하여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항함으로써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중 보다 적은 것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동 일방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총수입금액의 1.5%
 - 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제3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동일류의 이윤에 부과되는 필리핀의 가장 낮은 세율

제 10 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
 - 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25% 본향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리핀 거주자로서 투자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필리핀의 투자촉진법상의 투자장려 분야에 종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부과될 세액은 총 배당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또는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이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 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동 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가. 공모 발행된 공채, 사채 또는 이와 유사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0%
 - 나. 기타의 경우에는 그 이자총액의 15%
3.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리핀 거주자이며 투자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필리핀의 투자촉진법상의 투자장려분야에 종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부과될 세액은 총이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이자는 그것이 다음에 관한 것일 때에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
 - 가. 타방국의 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채, 사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채무

나. 다음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되는 차관이나 여신

- (1)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 (2)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문서교환으로 지정·동의되는 기타 대부기관

5. 본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특히 정부증권, 공채 또는 사채 및 그러한 증권, 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과 상금등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그 연불판매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의한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 타방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사업소득)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가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7.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동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거주자인 경우에 그 이자는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그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동 고정 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한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본 협약의 기타 제반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수익적 소유자인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본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리핀의 거주자이며 투자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필리핀의 투자촉진법상 투자장려 분야에 종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의 거주자에게 지불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부과될 세액은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본조에서 사용된 “사용료”라 함은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하며 영화필름, 텔레비전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필름 또는 시청각 테이프상의 작품, 또는 라디오 방송에 사용되는 테이프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포함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내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사업소득) 또는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6.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한 사용료액이 그 사용료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

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조의 제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본 협약의 기타 제반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3조 【재산의 양도】

1. 제6조(부동산소득)에 규정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타방체약국내의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포함하여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동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기업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일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조합 또는 신탁에 있어서의 이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문 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동 일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소득은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가. 동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 타방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될 수 있다.
 - 나. 동 타방국에 1역년중 120일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체재할 때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법률가,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 등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활동 또는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이사의 보수),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제19조(정부용역), 제20조(학생 및 훈련생) 및 제21조(교수 및 교사)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급여,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체약국 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만약 그 고용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 가. 그 수취인이 당해 1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 나. 그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 다. 그 보수가 그 고용주의 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 전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정규 승무원 또는 선원으로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하여 취득되는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보수】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임원의 자격으로 취득되는 이사의 보수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인이 경영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일상적 임무의 수행에 대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보수는 제15조(종속적·인적용역)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독립적·인적용역) 및 제15조(종속적·인적용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전 출연자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 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에 의하여 그와 같은 자격으로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소득은 제7조(사업소득), 제14조(독립적·인적용역) 및 제15조(종속적·인적용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예인 또는 체육인에 의하여 일방체약국에서 그의 그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은 동 일방체약국에 대한 그의 방문이 동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4. 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그러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인이 타방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 당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경우이거나 또는 동인이 동 타방국의 비영리단체인 경우 그 소득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1. 제19조제2항(정부용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댓가로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사회보장기구에 의하여 지급된 사회 보장연금은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동 국가 또는 그 하부조직이나 그 당국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 나. 그러나 동 보수는 동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 (1)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 (2) 오직 동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 것이 아닌 자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그 국가 또는 그 하부조직이나 그 당국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 나. 그러나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국민이며 또한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3. 제15조(종속적·인적용역), 제16조(이사의 보수) 및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적용된다.
 4.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및 한국무역진흥공사
 - 나.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중앙은행
 - 다. 양 체약국의 경우
차후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문서교환으로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정부소유의 기관

제20조 【학생 및 훈련생】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동 일방체약국내의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의 자격으로서만 동 일방체약국에의 첫 도착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 방문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가. 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액, 및
 - 나. 그러한 목적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동 일방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2.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기술적, 전문적 또는 사업적 경험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생

으로서만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의 생계유지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액, 및
 나. 그의 첫 도착일로부터 총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의 훈련에
 관련되거나 또는 그러한 활동에 부수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3.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과학, 교육, 종교 또는 자선기관으로부터 또는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술 지원 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연구, 조사 또는 훈련의 목적만으로 동 일방체약국에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첫 도착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러한 보조금·수당 또는 장려금
 나. 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목적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모든 송금액
 다. 일방체약국에서 그의 연구, 조사, 훈련에 관련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부수되는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제21조 【교수 및 교직원】

1. 체약국 일방의 거주자이거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 또는 조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교수 또는 교사가 그러한
 활동에 대한 댓가로서 받는 보수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본조제1항의 목적상 "보수"라 함은 교수 및 교사가 제1항에서 규정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타방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송금된 송금액을 포함한다.

제22조 【기타소득】

1. 본 협약의 전 제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 항목은
 그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서 그
 타방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에 소재
 하는 고정시설에서 독립적·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제23조 【이중과세의 방지방법】

1.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한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 공제에 관한 한국의 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필리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필리핀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된다. 그러나 동 공제는 필리핀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 필리핀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필리핀의 조세에 대한 액 공제에 관한 필리핀 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필리핀의 조세로부터 공제된다. 그러나 동 공제는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필리핀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3. 본조제1항의 세액공제의 목적상, 제10조제2항가.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제11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제1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25퍼센트 그리고 제12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비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항상 간주된다.

제24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또는 부담하게 될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 타방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동 타방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일방체약국으로 하여금 그 일방체약국의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 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의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특수관계기업)제1항, 제11조(이자)제6항 및 제12조(사용료)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결정의 목적상 그들이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은 그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체약국의 일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동 일방체약국의 기타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하게 될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보다 더 과중한 조세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본조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느 일방체약국도 필요한 산업 또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들에 의하여 부여되는 조세 혜택의 향유를 자국민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6.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조의 규정은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 어떤 인이 체약국의 일방 또는 쌍방의 조치가 그에 대하여 본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그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 또는 만일 그의 문제가 제24조(무차별)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의 국적국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본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초래하게 한 처분의 최초 통지일로부터 2년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만족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권한있는 당국은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의 회피를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동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도 공동 협의할 수 있다.
4.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26조 【정보교환】

1.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국내법하의 과세가 본 협약과 일치하는 한,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본 협약 또는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고 특히 동 조세의 사기 또는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권한있는 당국은 협의를 통하여 조세회피에 관한 정보교환은 물론 동 정보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관한 적절한 조건, 방법 및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동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입수된 모든 정보는 동 일방국의 국내법하에서 취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및 강제집행 또는 소송이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동 관련자나 당국은 동 목적을 위하여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공공재판절차나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동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및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의 수행
 -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의 제공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발효】

1.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한 조속히 마닐라에서 교환된다.
2. 본 협약은 비준서교환일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그 규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가. 비준서가 교환된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비준서가 교환된 연도의 다음 역년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한 기타 조세

제29조 【종료】

1. 본 협약은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어느 일방체약국은 비준서 교환이후 5년의 기간이 만료한 후 도래하는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본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종료 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1월 1일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대기되는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조세, 및

나. 종료 통고가 행하여진 다음 역년의 1월 1일이후에 개시되는 과세년도에 대한 기타 조세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84년 2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의정서(1986.11.09)

[1986.11.09]

하기 서명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다음 규정이 상기 협약과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합의하였다.

1. 제1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다.
 - 가. 상기 제1조 및 본 협약상의 어느 것도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에 거주하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민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나. 그러나 가. 항에 따라서 타방국에 의하여 부과된 조세는 일방체약국에 의하여 세액 공제되지 아니한다.
2. 제2조제1항가.에 관하여 본 협약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한국의 방위세와 필리핀의 법인 개발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3. 제7조제3항에 관하여 동 규정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그 기업의 본점 또는 동 고정사업장의 다른 사업장에 지급되거나 부과(실제적인 비용 상환은 제외함)되는 다음의 금액에 대하여 한국과 필리핀의 국내법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 가. 특허권 기타 권리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또는 기타 유사한 지급액
 - 나. 제공된 특별용역 또는 경영에 대한 수수료
 - 다. 고정사업장에 대부된 금액에 대한 이자(단, 금융기관의 경우는 제외함)
4. 제8조제3항나.에 관하여 “필리핀 조세의 가장 낮은 세율”이라 함은 필리핀 조세로부터 면제 또는 영세율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5. 제10조에 관하여 동조는 어느 일방체약국이 지점에서 본점으로 송금되는 이윤에 대하여 법인소득세와는 별도로 송금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6. 제23조제3항에 관하여 25퍼센트의 세액공제는 원천지국의 국내법하에서 사용료에 부과되는 세율이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그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제25조제2항에 관하여 동조는 각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시효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본 의정서가 각 단어별로 본 협약에 삽입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타당성을 가지는 본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84년 2월 21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6 Anti-Dummy Law 원문

COMMONWEALTH ACT No. 108

AN ACT TO PUNISH ACTS OF EVASION OF THE LAWS ON THE NATIONALIZATION OF CERTAIN RIGHTS, FRANCHISES OR PRIVILEGES

Be it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Philippines

Section 1. Penalty — In all cases in which any constitutional or legal provisions requires Philippine or any other specific citizenship as a requisite for the exercise or enjoyment of a right, franchise or privilege, any citizen of the Philippines or of any other specific country who allows his name or citizenship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evading such provision, and any alien or foreigner profiting thereb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five nor more than fifteen years, and by a fine of not less than the value of the right franchise or privilege, which is enjoyed or acquired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hereof but in no case less than five thousand pesos.

The fact that the citizen of the Philippines or of any specific country charged with a violation of this Act had, at the time of the acquisition of his holdings in the corporations or associations referred to in section two of this Act, no real or personal property, credit or other assets the value of which shall at least be equivalent to said holdings, shall be evidence of a violation of this Act.1

Section 2. Simulation of minimum capital stock — In all cases in which a constitutional or legal provision requires that, in order that a corporation or association may exercise or enjoy a right, franchise or privilege, not less than a certain per centum of its capital must be owned by citizens of the Philippines or of any other specific country, it shall be unlawful to falsely simulate the existence of such minimum stock or capital as owned by such citizens, for the purpose of evading said provision. The president or managers and directors or trustees of corporations or associations convicted of a violation of this sec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f not less than five nor

more than fifteen years, and by a fine not less than the value of the right, franchise or privilege, enjoyed or acquired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hereof but in no case less than five thousand pesos.²

Section 2-A. Unlawful use, Exploitation or enjoyment – Any person, corporation, or association which, having in its name or under its control, a right, franchise, privilege, property or business, the exercise or enjoyment of which is expressly reserved by the Constitution or the laws to citizens of the Philippines or of any other specific country, or to corporations or associations at least sixty per centum of the capital of which is owned by such citizens, permits or allows the use, exploitation or enjoyment thereof by a person, corporation or association not possessing the requisites prescribed by a the Constitution or the laws of the Philippines; or leases, or in any other way, transfers or conveys said right, franchise, privilege, property or business to a person, corporation or association not otherwise qualified under the Constitution, or the provisions of the existing laws; or in any manner permits or allows any person, not possessing the qualifications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or existing laws to acquire, use, exploit or enjoy a right, franchise, privilege, property or business, the exercise and enjoyment of which are expressly reserved by the Constitution or existing laws to citizens of the Philippines or of any other specific country, to intervene in the management, operation, administration or control thereof, whether as an officer, employee or laborer therein with or without remuneration except technical personnel whose employment may be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Secretary of Justice, and any person who knowingly aids, assists or abets in the planning consummation or perpetration of any of the acts herein above enumerate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five nor more than fifteen years and by a fine of not less than the value of the right, franchise or privilege enjoyed or acquired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hereof but in no case less than five thousand pesos : Provided, however, That the president, managers or persons in charge of corporations, associations or partnerships violating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be criminally liable in lieu thereof : Provided, further, That any person, corporation or association shall, in addition to the penalty imposed herein, forfeit such right, franchise, privilege, and the property or business enjoyed or acquired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 And provided, finally, That the election of aliens as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governing body of corporations or associations engaging in partially nationalized activities shall be allowed in proportion to their allowable participation or share in the capital of such entities.³

Section 2-B. Any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by the spouse of any public official, if both live together, shall be cause for the dismissal of such public official.
4itc@lawphil

Section 2-C. The exercise, possession or control by a Filipino citizen having a common-law relationship with an alien of a right, privilege, property or business, the exercise or enjoyment of which is expressly reserved by the Constitution or the laws to citizens of the Philippines, shall constitute a prima facie evidence of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Section 2-A hereof.⁵

Section 3. Any corporation or association violating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shall, upon proper court proceedings, be dissolved.

Section 3-A. Reward to informer. — In case of convict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Act, twenty-five per centum of any fine imposed shall accrue to the benefit of the informer who furnishes to the Government original information leading to said conviction and who shall be ascertained and nam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If the informer is a dummy, who shall voluntarily take the initiative of reporting to the proper authorities any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assist in the prosecution, resulting in the conviction of any person or corporation profiting thereby or involved therein, he shall be entitled to the reward hereof in the sum equivalent to twenty-five per centum of the fine actually paid to or received by the Government, and shall be exempted from the penal liabilities provided for in this Act. ⁶

Section 4. This Act shall take effect upon its approval.

itc-alf

Approved, October 30, 1936.

Footnotes

* As amended by RA 421, RA 134, RA 6084, and PD 715.

1Words in bold in the text above are amendments introduced by RA 134, section 1, approved June 14, 1947.

Statutory History of section 1 :

Original text —

SEC. 1. In all cases in which any constitutional or legal provision requires Philippine or [United States] citizenship as requisite for the exercise or enjoyment of a right, franchise or privilege, any citizen of the Philippines or [the United States] who allows his name or citizenship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evading such provision, and any alien or foreigner profiting thereb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nor more than [ten] years, and by, fine of not less than [two thousand nor more than ten thousand pesos.]

The fact that the citizen of the Philippines or of [the United States] charged with, violation of this Act had, at the time of acquisition of his holdings in the corporations or association referred to in section two of this Act, no real or personal property, credit or other assets the value of which shall at least be equivalent to said holdings, shall be admissible as circumstantial evidence of, violation of this act. (Ed. Note : Words in brackets were deleted in RA 134, supra)

2Words in bold in the text above are amendments introduced by RA 134, section 1, approved June 14, 1947.

Statutory History of section 2 :

Original text

SEC. 2. In all cases in which a constitutional or legal provisions requires that, in order that a corporation or association may exercise or enjoy a right, franchise or privilege,

not less than a certain per centum of its capital must be owned by citizens of the Philippines or [the United States, or both.] It shall be unlawful to falsely simulate the existence of such minimum of stock or capital as owned by such citizens of the Philippines [or the United States or both,] for the purpose of evading said provision. The president or managers and directors or trustees of corporations or associations convicted of a violation of this secti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nor more than [ten] years, and by a fine of not less than [two thousand nor more than ten thousand pesos.] (Ed. Note : Words in brackets were deleted in RA 134, supra.)

3Words in bold in the text above are amendments introduced by PD 715, section 1, promulgated May 28, 1975.

Statutory History of section 2-A :

a) Original text – (inserted by CA 421)

SEC. 2-A. Any person, corporation or association which, having in its name or under its control, a right, franchise, privilege, property or business, the exercise or enjoyment of which is expressly reserved by the constitution or the laws [of the Philippines] to citizens of the Philippines or of [the United States,] or to corporations or associations at least sixty per centum of the capital of which is owned by such citizens, permits or allows the use, exploitation or enjoyment thereof by a person, corporation or association not possessing the requisite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or the laws of the Philippines; or leases, or in any other way transfers or conveys said right, franchise, privilege, property or business to a person, corporation or association not otherwise qualified under the Constitution, or the provisions of the existing [Acts,] any person who knowingly aids, assists, or abets in the planning, consummation or perpetuation of any of the acts herein above enumerate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nor more than [ten] years, and by a fine of not less than [two thousand nor more than ten thousand pesos :] Provided, however, That presidents, managers, or persons in charge of corporations, associations or partnerships violating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be criminally liable in lieu thereof. (Ed, Note : Words in brackets were deleted in RA 134, infra.)

b) Words in bold in the next immediately following are amendments introduced by RA 134, section 2, approved June 14, 1947.

SEC. 2-A. Any person, corporation, or association which, having in its name or under its control, a right franchise, privilege, property or business, the exercise or enjoyment of which is expressly reserved by the Constitution or the laws to citizens of the Philippines or of any other specific country, or to corporations or associations at least sixty per centum of the capital of which is owned by such citizens, permits or allows the use, exploitation or enjoyment thereof by a person, corporation or association not possessing the requisite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or the laws of the Philippines; or leases, or in any other way transfers or conveys said right, franchise, privilege, property or business to a person, corporation or association not otherwise qualified under the constitution, or the provisions of the existing laws; or in any manner permits or allows any person, not possessing the qualifications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or existing laws to acquire, use, exploit or enjoy a right, franchise, privilege, property or business, the exercise and enjoyment of which are expressly reserved by the constitution or existing laws to citizens of the Philippines or of any other specific country, to intervene in the management, operation, administration or control thereof, whether as an officer, employee or laborer therein, with or without remuneration except technical personnel whose employment may be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President of the Philippines upon recommendation of the Department Head concerned, if any,] and any person who knowingly aids, assists or abets in the planning, consummation or perpetration of any of the acts hereinabove enumerated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five nor more than fifteen years and by a fine of not less than the value of the right, franchise, or privilege enjoyed or acquired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hereof but in no case less than five thousand pesos : Provided, however, That the president, managers, or persons in charge of corporations, associations, or partnerships violating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be criminally liable in Lieu thereof : Provided further, That any person, corporation or association shall, in addition to the penalty imposed herein, forfeit such right, franchise, privilege, and the property or business enjoyed or acquired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Ed. Note : Words in brackets were deleted in PD 715, supra.)

4Inserted by CA 421, section 1, approved May 31, 1939.

5Inserted by RA 6084, section 1, approved August 4, 1969.

6. Inserted by RA 134, section 3, approved June 14, 1947.

□ 참고문헌

- BIR Chronicles, 필리핀 국세청 발간 책자 2016.02
-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2015.12
- 필리핀에서 사업하기, SGV / 한인상공회의소 2014.09
- Tax Reform Act of 1997
- Alert : Philippines issues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Ernst & Young 2013.01
- Philippines issues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Ernst & Young 2013.05
- Worldwide Transfer Pricing Reference Guide 2015-16, Ernst & Young 2016.02
- 2016 Tax and Corporate Updates Seminar course Outline, KPMG 2016.01
- Global Transfer Pricing Review, KPMG 2013.04
- Handling Tax Controversy in Philippines, Baker & McKenzie 2013
- Transfer Pricing Country Guide, PWC 2016.05
- Latest tax jurisprudence 13 January 2011, PWC 2011.01
- WTS Transfer Pricing Newsletter, WTS TAX LEGAL CONSULTING 2015.12
- Transfer Pricing Law and its Application, SGV 2014.01
- The Philippines : Tax Assessment, Appeal and Dispute Resolution, ASEAN Tax System Seminar 2010.09
- Philippines Tax Guide 2015/16, PKF
- Asia Transfer Pricing 2015, Quantera Global

【참고 사이트】

- 필리핀 국세청 : <http://www.bir.gov.ph/>
- 필리핀 조세심판원 : <http://cta.judiciary.gov.ph/ctamain>
- 필리핀 조세연구원 : <http://www.ntrc.gov.ph/>
- 코트라 : <http://www.kotra.or.kr/>
- 세계법제정보센터 : <http://world.moleg.go.kr/>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http://www.kipf.re.kr/>
- 필리핀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bir.gov.ph>

【도움을 주신 곳】

- KPMG 회계법인, 삼일 회계법인, 한진중공업 등

해외세정연구 경진대회 연구보고서
(필리핀편 3rd edition)

국세청

필리핀 해외세정연구팀

전화 : 044 - 204 - 2828

팩스 : 044 - 216 - 6066

원고 작성 및 편집

국세조사관 조 용 택

국세조사관 이 호 상

국세조사관 서 준 영

국세조사관 김 혜 경

국세조사관 남 수 빈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044-204-2828)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